

월·간

재정포럼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현안분석

- 국채시장 및 국채관련제도 개선 : 추진현황 및 향후과제
- OECD의 유해조세제도 판정기준과 우리나라의 관련제도

특집

- 1999 세법개정안을 보고

정책토론포트

- 사회적 비용 감축과 WTO 주세판정 이행을 위한 주세율체계 개편방향
- 조세범처벌법 개정(안)

주요국의 조세제도

대만의 조세(Ⅱ)

정책흐름

1999 정기국회 제출 세제개편(안)

C · O · N · T · E · N · T · S

권두칼럼	2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세제개편시스템이 정착되어야 / 李章熙
현안분석	6 27	국채시장 및 국채관련제도 개선 : 추진현황 및 향후과제 / 李相燮 OECD의 유해조세제도 판정기준과 우리나라의 관련제도 / 韓道淑
특 집		1999 세법개정안을 보고
	45	종합평가 / 安鍾錫
	48	소득과세제도 / 安鍾錫
	56	소비과세제도 / 成明宰
	64	상속·증여세제 / 韓相國
	69	관세제도 / 張權鎬
	76	세징개혁 / 玄鎭權
정책토론포럼	82 103	사회적 비용 감축과 WTO 주세판정 이행을 위한 주세율체계 개편방향 조세범처벌법 개정(안)
주요국의 조세제도	119	대만의 조세(Ⅱ) / 韓相國
경제단상	124 126	납세가 존경의 가치기준이 되는 사회 / 金甲容 나를 넘어서기 위한 경쟁 / 金根暎
문화기행	128	서원을 찾아서: 난신 윤원형을 제거하고 태평성대를 이끈 박손 선생을 배향한 옥·병·서·원 / 李 濬
정책흐름	133	1999 정기국회 제출 세제개편(안)
재정통계	164	연도별·지방자치단체별 세입결산 순계분석(총괄)
이런 의견 저런 생각	170	주세체계 전면 개편해야 외
명언산책	175	과세와 시행착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세제개편시스템이 정착되어야

李章熙 / 충북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21 세기를 앞둔 우리의 경제는 IMF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한 국민과 정부 모두의 노력으로 장밋빛 희망이 보이고 있다고 한다.

그렇지만 공장가동률과 생산이 증가한다고 해도 소비나 투자지표는 그리 높지 않고, IMF관리체제를 초래했던 근본 원인에 대한 해결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근본적인 체질개선이나 구조조정이 미흡한 상태에서 이러한 판단은 다소 성급한 것이 아닌가 싶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부의 형태와 종류에 따라 소득 변화가 이루어져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20% 정도 감소하면서 사회구조상 중산층의 왜해 내지 축소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소득 분배의 불균형이 심화되는 동시에 세제구조상 소득세 비중은 줄어들지만 가구수에 의한 소비세 비중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세제개혁을 통한 소득분배 개선이라는 정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시기이고 현실적으로도 공평과세의 원칙과 경제적 형평이 강요되고 있으므로 이번에 발표된 1999년 세제개편안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금융종합과세 재실시, 부가가치세 특례과세제도 개선, 호화사치주택 과세제도 개선, 상속·증여세 과세 강화, 특별소비세 면제의 확대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중산층의 대부분이 봉급생활자인 까닭에 이러한 정책은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 강화 및 탈루세액 징수, 중산서민층의 세부담 경감과 서민층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라는 대안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IMF관리체제 이후 재정확보의 원천은 소득이 확실히 드러나는 중산층 봉급생활자의 몫이 되었고 결과적으로 중산

층 지위를 상대적으로 박탈하는 현상을 초래한 것이다. 대다수 중산층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키며 마련되는 공적 자금은 금융구조조정과 공공근로사업, 부실기업정리 등에 거의 모두 사용되고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경감이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사업 등에는 많은 투자를 할 수 없었다. 중산층의 붕괴, 소득분배구조의 악화, 소비구조의 왜곡 등 최근의 현상을 바라보는 국민의 심정은 착잡하기만 하다. 따라서 미래에 대한 비전 제시가 가능한 정부정책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정책은 비단 사회의 균형 발전을 위한 세제개편 뿐만 아니라 국가 장래를 결정짓는 의료보험과 연금제도, 각종 제도의 개선과 구조조정, 재벌정책 등이 일관성 있고 합리적이어야 하고 예측가능한 미래의 대안으로서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실시나 집행과정에서도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IMF관리체제 이후, 우리나라 회계제도나 정부정책에서 투명성이나 목적 적합성이 거론된 이유도 같은 의미일 것이다.

정부정책은 비단 사회의 균형 발전을 위한 세제개편뿐만 아니라 국가 정리를 꾀정하는 의료보험과 연금제도, 각종 제도의 개선과 구조조정, 제별정책 등이 일관성 있고 합리적이여야 하고 더욱가능한 미래의 대안으로서 제시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산업의 중추역할을 하는 근로소득자들의 생산의욕과 활동력을 배가시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후기 산업사회를 벗어나 21세기 지식산업사회에서 중요시되는 것은 인적자원과 무형자산이다. 특히나 기술력, 영업력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인적자원에 중점을 두어야만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즉,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식기반 산업에 의한 산업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고학력에 대한 노동 수요가 미국, 독일, 영국, 캐나다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 벤처산업 등으로 흡수해야 하지만 이 또한 금융, 세제, 자본 측면에서 취약한 경영환경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인적자원 가치를 개발하고 확대시키기 위한 관련 조세제도 또한 장기적 안목에서 체계화되어야 한다. 인적자원을 축적한다는 국가적 대명제하에서 정부의 재정, 금융 및 세제지원이 있어야 하며, 세계 각국이 정책적 지원방향이나 대책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고부가가치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소득자에게 세제상의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 예로 소득세율의 인상(인하) 결정시 인적자원 가치의 감소(증가)를 고려해야 한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는 인상(인하) 결정시 소득과세가 증가하면서부터는 실물자본과 노동생산성의 하락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지식기반이 미약하고 선진국에 비해 노동시장에서의 인적가치인 임금수준이 낮으므로 소득근로자에 대한 세제상의 대우를 일정기간 동안 높게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IMF관리체제로 인해 소득계층간, 소득종류간 조세부담 형평을 추구하려는 의도로 세부담 경감효과가 중산층과 서민층에 몰리도록 한 것은 세수 손실을 최소화하고 균형을 갖고 일상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금번 근로소득자의 세금 경감은 근로소득공제 한도 확대, 신용카드사용금액 소득공제 신설, 의료비·보험료 등 특별공제한도 인상, 근로자우대저축 가입대상 확대 등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국민연금 확대실시와 의료보험 통합 등에 따른 급여생활자의 상대적 불이익을 보전하려는 발상이 아니기를 기대한다.

현실적으로 선진국의 의료보험이나 연금제도, 투명한 징수제도 및 조세환경 등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진국형의 소득세 과세 강화는 무리가 따르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무한정 소득세율을 고정시키거나 경감제도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없는 것도 우리의 현실이다. 장기적인 인적자원가치 개발을 위한 소득세율 결정 시스템을 서둘러 개발하여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고 소득세율의 누적적 상향조정이 불가피할 때를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노동자의 개념이 아닌 지식산업사회의 인적자원에 대한 부과 개념으로의 마인드 전환이 필수적이므로 이러한 마인드나 정책기조를 바탕으로 중산층이 대부분인 근로소득자의 소득세율을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때그때의 관행으로 총세수 규모를 조정하는 세제개편안을 짜는 것은 이제 지양해야 하며 자본사회적 구조의 양극화 현상을 치유하기 위한 정부의 중장기적이고도 종합적인 정책이 일관되게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향후 계속될 세제개혁안이 현상에만 집착하지 말고 본질을 중시하고, 중산층의 재구축을 위한 가시적이고 핵심적인 제도적 기반으로 정착되어야만 보유 중과세나 거래 중과세나 등등의 해묵은 논쟁이 재연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각종 조세 종류별 연관관계를 고려하여 21세기 지식산업사회를 대비하여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세율 결정기법을 도입해야 하고, 사회의 균형발전과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장기적 비전이 어우러진 세제발전방향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KIP**

현안분석

1. 국채시장 및 국채관련제도 개선 : 추진현황 및 향후과제

李相燮/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2. OECD의 유해조세제도 판정기준과 우리나라의 관련제도

韓道淑/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국채시장 및 국채관련제도 개선: 추진현황 및 향후과제



李 相 燮 /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우리나라

국채시장 활성화의

가장 큰 장애요인 중의

하나였던 발행규모의

영세성이 해소됨에 따라

국채시장의 개발을

위한 기본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1. 서론

IMF 금융위기는 우리 경제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특히 금융·자본시장에 폭넓은 구조적·제도적 개혁을 초래하였다. 금융·자본시장의 한 부분으로서 국채시장도 금융위기를 계기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 경제는 세입내 세출의 원칙하에 건전재정을 유지해온 결과 국채 발행규모가 영세하여 국채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였으며 국채금리는 지표금리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1997년 말 발생한 금융위기의 여파로 경기가 급속히 침체되고 이와 아울러 부실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위한 재정지원으로 인하여 재정적자가 증가함에 따라 국채 발행이 급속히 확대되었다.

역설적이지만 적자재정의 보전을 위한 대규모의 국채 발행은 우리나라 국채시장의 발전에 중요한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짧은 기간에 막대한 양의 국채를 무리 없이 소화하기 위해선 국채시장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다. 국채 발행소요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국채시장 개선의 중요성 및 시급성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고 우리나라 국채시장 활성화의 가장 큰 장애요인 중의 하나였던 발행규모의 영세성이 해소됨에 따라 국채시장의 개발을 위한 기본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국채시장의 개발을 위한 기초여건이 조성됨에 따라 정부는 기존 국채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 적극 시행하여 국채시장의 활성화를 추진함으로써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국채의 원활한 소화와 발행비용의 절감을 꾀하고 금융시장 발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세계은행의 후원하에 1998년 채권시장 제도 개선을 위한 대책반을 구성하였다. 정부관계자, 채권업계의 실무자, 그리고 채권전문가로 구성된 국채시장제도 개선 대책반은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의 개선을 위한 장·단기 정책방안을 개략적으로 제시하였으며 정부는 그 후속조치로 현재 IBRD 기술지원 차관 등을 이용하여 제시된 개선방안의 구체적 시행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중에 있다. 본 원고에서는 국채시장의 중요성과 우리나라 국채시장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국채시장 개혁의 추진현황과 향후과제를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경기변동시 세율의 변동을 통하여 재정수지의 균형을 추구하는 것보다 국채발행의 조절을 통하여 세율을 안정화하고 경기변동을 완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II. 국채시장 개발의 중요성

국채시장은 거시·금융적 측면에서 여러가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첫째, 국채시장은 국가가 지급을 보증하는 무위험채권의 수급이 이루어지는 시장으로서 지표종목 중심의 대량매매에 의해 결정되는 국채금리는 기업, 금융기관, 가계, 정부 등 여러 경제주체의 소비, 저축 및 투자와 관련된 의사결정의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유도한다.

또한 무위험채권의 금리인 국채금리는 회사채 등 기타 위험채권 금리 결정의 지표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금리 관련 파생상품의 근거금리를 제공하는 등 금융시장 지표금리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금융시장의 발전에 기여하며 이 밖에도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수행시 목표금리 및 예상 인플레이션에 대한 지표의 역할도 수행한다. 반면에 신용위험이 있는 일반채권은 경제적 기본요인의 변화 없이 발행자의 신용도가 변할 때도 금리가 변동하므로 지표금리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부적절하다.

국채시장은 효율적인 정부의 자금조달수단을 제공하고 신속적인 재정운영을 가능케 한다. 경기의 변동에 따른 세율의 변동은 높은 조세행정비용을 유발하고 소득의 불확실성을 높여 의사결정을 어렵게 하는 등 높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 따라서 경기변동시 세율의 변동을 통하여 재정수지의 균형을 추구하는 것보다 국채 발행의 조절을 통하여 세율을 안정화(tax smoothing)하고 경기변동을 완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재정여건과 국채 발행 및 유통시장의 취약한 구조로 국채시장(유통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국채수익률이 지표금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여 왔다.

재정적자의 여타 보전방법으로서 중앙은행의 통화창출, 실세금리 이하의 강제인수, 외채발행에 의한 보전 등은 일시적으로 재정부담을 덜어줄 수 있으나 물가의 상승, 국채시장 유동성의 저하, 위협에의 노출 증가 등으로 장기적으로 정부의 자금조달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거시경제적 문제점과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초래한다. 이와는 달리 국채시장에서 실세금리에 의한 재정적자의 보전은 적자재정의 올바른 기회비용을 반영함으로써 재정의 지나친 확장을 억제하는 규율장치(discipline mechanism)의 역할을 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국채시장의 활성화를 통하여 국채 발행금리를 저하시켜 정부의 자금조달비용을 절감한다는 점에서 가장 바람직한 적자보전 수단이라 할 수 있겠다. 이 밖에도 국채시장은 간접통화관리정책의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중앙은행의 보다 효율적인 통화정책의 수행을 가능케 하고 연·기금, 보험 등 기관투자자 및 일반투자자에게 안정적인 (장기) 투자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저축을 증대시키는 기능도 수행한다.

III. 우리나라 국채시장의 문제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재정여건과 국채 발행 및 유통시장의 취약한 구조로 국채시장(유통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국채수익률이 지표금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여 왔다. 우리나라 국채시장의 문제점은 크게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에서의 문제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발행시장의 문제점

가. 발행규모의 영세성

우리나라 국채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로서 국채 발행규모의 영세성을 들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그동안 세입내 세출의 원칙하에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해온 결과 국채 발행소요가 크지 못했으며 시장소화를 통하여 적은 기금 여유자금으로부터의 차입으로 국채 발행물량이 부족하였다¹⁾.

1) 공자기금의 공공기금으로부터 누적차입액은 1998년 약 31조원(1998년 계획 포함)에 달하고 있으며 국민연금기금의 1998년 12월 말 공공기금 투자액은 23조 9천억 원에 이르고 있다.

〈표 1〉과 〈표 2〉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국채시장의 규모는 1999년 6월 말 현재 약 52조원으로²⁾ GDP 대비 비율이 10%를 약간 상회하고 있으며 국채의 총채권 대비 비중도 15% 내외로서 국채시장이 발달한 선진국의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종목당 발행규모도 1998년 이전에는 3~4천억원에 불과하여 유동성이 없고 따라서 국채가 지표채권의 기능을 못하고 금리의 만기구조가 형성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국채 발행물량의 증가로 국채시장의 개발을 위한 기초여건이 조성되고 있다³⁾.

**우리나라
국채시장의 문제점은
크게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에서의
문제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나. 발행종목의 표준화 미흡

발행시장의 또 다른 주요 문제점으로 발행종목의 표준화 미흡을 들 수 있다. 〈표 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우리나라의 국채는 국고채, 외평채, 양곡증권, 재정증권, 국민주택채권 등 발행주체와 부담주체의 다원화, 다양한 이자지급방식으로 발행종목의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국채시장을 분산화시켜 유통시장의 발달을 저해하고 국채의 유동성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 되어 왔다. 또한 적자보존용 국채와 통화관리용 국채의 상존으로 인하여 시장이 분할될 뿐만 아니라 위험도가 동일한 두 국채가 비슷한 만기에서 서로 경쟁함으로써 발행금리를 상승시킬 소지가 있다.

다. 시가발행 부진

국채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실세금리에 의한 국채의 발행이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국채가 실세금리 이하의 낮은 금리 수준에서 강제인수 또는 첨가 소화됨에 따라 국채의 상품성이 떨어지고 국채 발행비용의 일부가 인수기관에 전가되어 국채의 유통을 저해하여 왔다. 전술한 바와 같이 강제인수 등에 의한 실세금리 이하의 발행으로 일시적인 재정수지의 개선효과는 가져올 수 있으나 이는 국채시장의 발전을 저해하여 장기적으로 오히려 정부의 자금조달 비용을 증가시키고 금융시장의 자금 및 자원배분기능을 왜곡시키며 저축을 감소시켜 성장을 저해하는 등 여러 폐단을 가져올 수 있다. 실세금리 이하의 강제인수에 의한 국채 발행은 과거에 비하여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고 최근에는 금융위기 이후의 고금리와 투자자들의 위협에 대한 인식증가로 국채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국채가 대부분 시가로 발행되어 왔으나 아직까지도 내정금리의 존재로 인하여 국

2) 이 수치는 외화표시국채 (달러표시국채: 41억 770만달러, 엔화표시국채: 26억 5천만엔)를 제외한 수치이다.

3) 최근에 발행되는 국고채 발행종목당 물량은 1조~1조 6천억원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
채권발행시장의
문제점으로는
발행규모의 영세성,
발행종목의 표준화 미흡,
시기발행 부진,
비정례적 발행일정,
장단기국채의 부재 등을
들 수 있다.

〈표 1〉 주요 국채 발행 현황

(단위: 억원)

		국고채권 ^{a)}		출자재정	국민투자	국민주택	국민주택	국민주택	공공용지	양공증권	재정증권	농어촌	농지채권	기금채권 ^{b)}	국채계
		증권	채권	채권(1종)	채권(2종)	기금채권	보상채권	발행채권				외국환평형			
1990	발행	-	-	64	8,760	2,790	-	-	26,420	25,000	2,539	1,000	30,000	96,573	
	상환	-	-	3,858	2,912	-	3,000	-	16,000	25,000	1,250	-	14,000	66,038 ^{c)}	
	잔액	-	113	4,812	26,519	7,368	-	603	37,420	25,000	4,689	1,500	30,000	137,421 ^{d)}	
1991	발행	-	-	10	10,060	6,451	1,200	-	28,500	22,072	1,728	1,277	14,833	86,131	
	상환	-	-	3,832	2,868	24	-	-	21,000	25,000	-	-	-	52,722	
	잔액	-	113	990	33,713	13,795	1,200	-	44,920	22,072	6,417	2,777	44,833	170,830	
1992	발행	-	-	-	11,684	6,566	1,200	-	34,093	15,797	4,040	2,100	10,000	85,480	
	상환	-	-	916	3,763	78	-	-	28,500	22,072	1,000	500	-	56,829	
	잔액	-	113	74	41,634	20,283	2,400	-	50,513	15,797	9,457	4,377	54,833	199,481	
1993	발행	-	-	-	14,312	3,093	1,500	83	50,585	6,301	5,482	2,150	20,000	103,506	
	상환	-	-	64	5,035	57	-	-	39,093	15,797	2,317	1,000	30,000	94,735 ^{e)}	
	잔액	-	113	10	50,911	23,319	3,900	83	62,005	6,301	11,250	5,527	44,833	208,252	
1994	발행	11,255	-	-	16,908	2,192	-	326	49,785	1,000	-	-	12,000	93,466	
	상환	-	-	-	6,164	22	-	-	51,585	6,301	1,728	1,277	14,833	81,920 ^{f)}	
	잔액	11,255	113	-	61,655	25,489	3,900	409	60,205	1,000	9,522	4,250	42,000	219,798	
1995	발행	18,332	-	-	19,564	1,872	-	140	37,705	-	-	-	10,000	87,613	
	상환	-	-	-	8,108	11	-	-	49,205	-	4,040	2,100	10,000	74,464 ^{g)}	
	잔액	29,587	113	-	73,111	27,350	3,900	549	48,705	-	5,482	2,150	42,000	232,947	
1996	발행	19,100	-	-	22,808	1,486	-	134	25,200	-	-	-	20,000	88,728	
	상환	-	-	-	10,984	5	1,200	80	25,200	-	5,482	-	20,000	65,102 ^{h)}	
	잔액	48,687	113	-	84,935	28,830	2,700	603	48,705	-	-	-	42,000	256,573	
1997	발행	20,770	-	-	24,162	3,644	-	2	13,200	-	-	-	6,500	68,278	
	상환	6,255	-	-	11,822	12	1,200	319	13,200	-	-	-	6,500	39,308	
	잔액	63,202	113	-	97,275	32,462	1,500	286	48,705	-	-	-	42,000	285,543	
1998	발행	124,630	-	-	24,906	219	-	-	20,085	-	-	-	50	169,890	
	상환	-	-	-	14,587	225	1,500	140	20,085	-	-	-	3,050	39,587	
	잔액	187,832	113	-	107,595	32,456	-	146	48,705	-	-	-	39,000	415,847	
1999	발행	97,000	-	-	7,784 ⁱ⁾	-	-	-	23,517	5,500	133,801				
	(1~6월 실적) 상환	1,500	-	-	7,812	57 ^{j)}	-	31	23,517	1,000	33,917				
1999	잔액	283,332	113	-	107,567	32,397	-	115	48,705	43,500	515,731				
1999	발행계획	226,013		28,000	2,000		1,700	29,517		8,500	295,730				
1999	상환계획	32,000		16,743	-		132	29,517		8,500	86,892				
1999	잔액	381,845		118,852	34,456		1,714	48,705		39,000	624,685				

주 : 1) 1999년 1~3월 실적임.
 2) 상환액에 약간의 통계적 불일치가 존재함.
 3) 외화표시 채권 (41.3억달러; 달러표시 41억 770만달러, 엔화표시 26.5억엔)은 제외됨.
 4) 1998년 10월까지의 국채관리기금채권의 수치임.
 자료 : 재정경제부, 『재정금융통계』, 1999년 1/4분기, 국고과 내부자료.

채의 경쟁입찰이 완전 소화되지 않는 등 완전한 시장금리에 의한 발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라. 비정례적 발행일정

마지막으로 국채 발행시장의 문제점으로 비정례적 발행일정을 들 수 있다. 금

〈표 2〉 채권별 GDP 비율

(단위 : 억원, %)

	국채	공채			회사채	총 채권	GDP
		통안채	기타 ³⁾	합계			
1997	발행	68,278	62,236	264,297	326,533	343,221	738,032
	상환	39,308	69,098	160,265	229,363	-	268,671
	잔액	285,543	234,709	492,269	726,978	901,019	1,913,540
총채권	발행	9.25	8.43	35.81	44.24	46.50	100.00
	비율	잔액	14.92	12.27	25.73	37.99	47.09
GDP	발행	1.62	1.48	6.28	7.76	8.15	17.53
	비율	잔액	6.78	5.58	11.69	17.27	21.40
1998	발행	169,890	3,643,043	323,020	3,966,063	503,468 ¹⁾	4,639,421
	상환	39,587	3,421,019	208,740	3,629,759	-	3,669,346
	잔액	415,847	456,733	606,549	1,063,282	1,211,506 ²⁾	2,690,635
총채권	발행	3.66	78.52	6.96	85.49	10.85	100.0
	비율	잔액	15.46	16.97	22.54	39.52	45.03
GDP	발행	3.78	81.04	7.19	88.23	11.20	103.21
	비율	잔액	9.25	10.16	13.49	23.65	26.95

주 : 1) GDP 1998년 수치는 잠정치임.

2) 1998년 11월까지의 잔액과 발행액임.

3) 기타에는 중소기업채권, 전력채권, 토지개발채권, 산업금융채권, 주택공사채권, 기술개발채권, 장기신용채권이 포함됨.

자료 : 재정경제부, 『재정금융통계』, 1998 4/4분기.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1999. 2월.

금융위기 이후
국채 발행소요의 증대로
인하여 국채 발행이 보다
정례화되고 있으나
아직도 안정적이고
투명한 국채 발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기 이전에는 국채 발행소요가 작고 그나마의 국채 발행도 회계나 기금의 자금소요시기에 맞추어 비정기적으로 발행되어 투자자의 투자계획을 어렵게 하고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투자자의 거래유인을 저해하여 왔다. 금융위기 이후 국채 발행소요의 증대로 인하여 국채 발행이 보다 정례화되고 있으나 아직도 자금소요 예측 및 계획 역량이 미흡하여 예상치 못한 세수의 변동시 예정공표된 입찰이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등 안정적이고 투명한 국채 발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마. 장단기국채의 부재

우리나라의 국채 발행은 3년 만기 국고채를 중심으로 5년 이하의 중기 국채를 발행하고 있어 장·단기에 걸친 균형적인 지표금리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장기국채의 부재로 인한 가격평가의 어려움으로 장기채 시장이 형성·발달되지 못하여 기업의 장기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많으며 또한 연금, 보험과 같이 안정적인

우리나라의
국채 유통시장은
덜러기능의 부재,
취약한 하부구조,
투명성의 결여 등으로
인하여 원활한
국채거래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왔다.

〈표 3〉 국채의 종류 및 발행조건

	발행주체	사무관리	상환주체	만기	발행조건		발행목적
					이자율	이자지급	
재정증권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국고여유자금조정 계정	1년	실세금리	상환시 일시지급 (연단위 후급)	정부회계의 일시적으로 부족한 자금조달 및 통화관리
외국환평형 기금채권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외국환평형기금	3개월 5, 10년	실세금리	상환시 일시지급 (연단위 복리후급 또는 매3월 지급)	외화자금매입및 해외부문통화관리
양국증권	농림부	농협	양국증권정리기금	1, 3, 5년	실세금리	상환시 일시지급 (연단위 복리후급)	양국증권상환자금
국고채권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국채관리기금	1, 3, 5, 7, 10년	실세금리	매3월 지급	각 회계, 기금에 예탁
국민주택 채권(1종)	건설교통부	주택은행	국민주택기금	5년	5%	상환시 일시지급 (연단위 복리후급)	국민주택건설 촉진을 위한 재원조달
국민주택 채권(2종)	건설교통부	주택은행	국민주택기금	20년	3%	상환시 일시지급 (연단위 복리후급)	"
공공용지 보상채권 철도청	건설교통부	주택은행	교통시설특별회계 (도로계정, 철도계정)	3년	실세금리	상환시 일시지급 (연단위 복리후급)	용지보상비 대신 채권교부
출자재정 증권	재정경제부	한국은행	일반회계	무기한	-	-	

자료 : 재정경제부, 『재정금융통계』, 1998. 4/4.

고 장기적인 투자상품을 원하는 기관투자자의 수요를 충족시켜주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또한 1년 미만의 단기국채의 부재로 일시적인 국고자금의 부족을 단기국채가 아닌 중기국채의 발행으로 보전하는 등 자금의 관리가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2. 유통시장의 문제점

우리나라의 국채 유통시장은 덜러기능의 부재, 취약한 하부구조, 투명성의 결여 등으로 인하여 원활한 국채거래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왔다.

4) 시장조성자 (market maker)는 항상 매도·매수를 제시하고 그에 따르는 위험을 매도·매수의 호가차익을 통하여 상쇄하는 반면 proprietary trader는 자본이득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가. 국채 덜러기능 및 유통시장 하부구조의 부재

국채시장의 유통성 확보를 위해서는 일정한 재고를 보유하고 지속적인 매도·매수호가를 제시함으로써 거래의 즉시성(immediacy)을 제공하여 시장을 조성하는 (market making) 덜러의 역할과 존재가 중요하다. 그러나 국채의 덜러업무

가 가능한 국내 증권회사들의 자본금 및 자기자본 규모는 1998년 말 현재 각각 평균 1,500억원, 2,900억원 수준으로 그 규모가 작고 채권공매의 불허⁵⁾, RP 시장의 부재⁶⁾, 채권 대차거래제도의 비활성화로 자금조달 및 채권조달 수단이 여의치 않아 시장조성자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해 왔다. 또한 금리선물 등 딜링업무에 따르는 금리위험을 헤지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과 딜러간 거래증개를 통하여 효율적인 재고관리를 가능케 하는 Inter Dealer Broker (IDB)의 부재도 국채딜러의 딜러기능 수행을 저해하는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채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결제체제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나. 거래정보 및 시장의 투명성 결핍

우리나라 국채 유통시장은 장외시장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다. 그러나 채권의 소유 및 거래가 은행 등 소수의 기관투자자에 집중되어 채권수요 기반이 빈약하고 또한 취약한 거래증개제도와 통합적인 시장정보제공시스템 부재로 투자자의 정보획득이 어려웠다. 그 결과 거래 및 정보의 집중을 통한 경쟁적 매매시장의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신뢰할 수 있는 기준금리의 설정이 어려워 선물시장, 회사채 시장 등 여타 국채 연계시장의 개발과 일반투자자의 시장참가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다. 시가평가의 부재

우리나라의 채권시장은 은행, 투자신탁 등 기관투자가 중심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지금까지 기관투자가 보유채권의 시가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관투자자의 채권매매 유인이 없었고 이는 국채 유통시장의 유동성을 제약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라. 동시결제(Delivery Versus Payment; DVP)체제의 미비

국채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결제체제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채권양도와 현금인수의 동시 체결을 가능케 해주는 DVP체제의 구축은 채권거래에 있어서 결제위험을 제거시켜 직접적인 채권거래의 활성화 뿐만이 아니라 RP거래의 활성화를 통하여 국채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한다. 그러나 현재 국채거래의 결제는 자금결제와 증권결제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거래당사자들이 결제위험에 노출되게 되고 이는 국채거래를 신용도가 높은 소수

5) 최근까지 장외채권시장에서 채권거래의 결제는 당일결제 (T+0) 이며 거래소시장에서의 거래결제는 T+0 결제와 T+2 결제가 모두 가능하나 실제로는 모든 거래가 당일결제가 된다. 한편 공매도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의 부재로 시장참여자들은 이를 금지사항으로 간주해 왔다.

6) 우리나라의 RP시장은 통화관리를 위한 한국은행과 금융기관간의 RP거래, 단기투자금융상품으로서 금융기관의 대고객 RP거래, 그리고 기관간 RP 거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국채딜러에게 중요한 기관간 RP 거래는 표준약관 및 관계법령의 미비, 세제상의 문제, 거래에 따르는 결제위험의 존속, 담보채권의 시가평가 등의 제문제로 인하여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1980년대 초부터
주요 OECD 국가들은
국채시장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정부의
자금조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의 기관에 국한시켜 거래 활성화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IV. 주요국가 국채시장의 최근 추이

정부의 자금조달소요 및 국채 발행물량의 증가 추세와 세계적인 금융자유화 추세 (global financial deregulation)로 인하여 1980년대 초부터 주요 OECD 국가들은 국채시장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정부의 자금조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1980년대와 1990년대에 걸쳐 OECD국가들의 국채시장에서는 구조적, 조직적, 그리고 규제적인 제 측면에서 많은 변화와 개혁이 이루어져 왔다.

1. 정부의 자본조달소요와 국채 발행의 추세 변화

과거 30여년간 OECD 국가들의 재정여건은 다양한 양상과 추세를 보여왔다. 1970년대는 두 차례에 걸친 석유파동 이후 경기침체로 인한 세입의 감소, 경기부양을 위한 세출의 증가와 함께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으로 재정적자와 이의 보전을 위한 정부의 자금소요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OECD 국가들의 국채 발행이 전반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국가간 경제여건이 보다 다양화됨에 따라 국채 발행 및 국채시장 여건도 국가간에 상이한 추세를 보였다. 일부의 국가들은 지속적인 재정적자와 1970년대에 발행된 국채의 차환발행으로 인하여 계속해서 많은 양의 국채를 발행하는가 하면, 일시적인 재정흑자로 인하여 국채 잔액이 감소하는 국가도 있었으나 대부분 국가들의 국채 잔액은 횡보하는 수준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초에 접어들면서 경기가 전반적으로 후퇴함에 따라 다시 국채 발행이 급격히 증가하여 1994년도 OECD 국가 일반정부의 평균 부채/GDP 비율은 70% 수준까지 이르게 되었다. 1990년도 후반에 접어들면서 경기의 호전과 지출감축 등 재정수지 개선을 위한 각국 정부의 노력으로 대부분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평균 재정수지는 1993년의 -5%에서 1997년의 -1.5%로 크게 호전되었으며 미국을 비롯한 몇몇 국가에서 최근 재정수지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재정여건의 악화로 국채 발행소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결과 이에 대한 이자

〈표 4〉 일반정부 총부채의 GDP 대비 비율

(단위 : %)

	1978	1981	1985	1990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미국	39.2	36.2	49.5	55.5	63.3	62.5	63.1	63.1	61.5	60.3	59.7
일본	41.9	54.2	65.3	62.6	64.8	70.7	77.8	82.7	87.1	96.5	99.5
독일	30.1	35.0	42.8	45.5	51.9	51.5	62.2	64.9	65.0	64.5	64.2
프랑스	31.0	30.1	38.6	40.2	52.7	56.1	60.1	63.0	64.6	65.7	66.4
이탈리아	62.4	60.3	82.3	104.5	118.9	125.1	124.2	123.7	121.7	118.5	116.1
영국	58.6	54.5	58.9	39.3	56.6	54.2	59.7	61.2	60.3	59.1	57.5
캐나다	46.6	44.1	63.1	71.5	92.8	95.6	97.6	97.5	93.8	89.2	84.2
스웨덴	34.5	52.1	66.7	44.3	76.3	81.2	79.8	77.5	77.1	74.8	71.4

많은 국가들이 효율적인 발행 및 거래제도의 확립, 세계개편 등 적극적인 국제시장의 개혁을 통하여 외국투자가 및 기관투자자를 국제시장에 적극 유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다.

주 : 1. 1978년 수치와 그 이후의 수치는 통계적으로 약간의 불일치가 있음.

2. 위 통계는 SNA에 기준을 둔 수치임.

자료 : OECD, OECD Economic Outlook, No. 55, 1994. 6.

OECD, OECD Economic Outlook, No. 63, 1998. 6.

〈표 4〉 중앙정부 총부채의 GDP 대비 비율

(단위 : %)

	1980	1985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미국	27.2	39.6	46.1	49.7	52.0	51.7	51.0	50.7	49.9	47.4
독일	16.0	21.9	24.7	25.8	28.7	28.6	30.2	37.3	38.8	39.0
프랑스	14.9	22.7	27.5	26.6	29.6	34.2	38.7	41.9	44.5	46.0
이탈리아	54.9	81.1	98.8	101.9	108.6	113.9	117.9	117.0	117.8	115.3
스웨덴	30.2	55.5	37.5	36.8	42.2	57.3	71.8	70.9	70.5	69.5

자료 :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1999. 3.

비용이 현실적으로 재정의 커다란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또한 인구의 노령화 등으로 인해 향후 예견되는 미래의 재정부담과 국채 발행소요의 증가를 맞아 보다 효율적이고 비용 경제적인 자금조달방안의 강구가 주요 정책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효율적인 발행 및 거래제도의 확립, 세계개편 등 적극적인 국제시장의 개혁을 통하여 국제시장의 유동성 및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외국투자가 및 기관투자자를 국제시장에 적극 유치하여 국채 소화기반을 확충하고 국채 발행비용의 절감을 꾀하고자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다. 이러한 국채 소

국채수요 기반의 확대와
발행비용의 절감을 위한
OECD 국가들의
국채시장 개혁사례는
국채시장의 유동성 및
투명성의 제고에
그 초점이 맞추어졌다.

화기반의 확충을 위한 국채시장의 개혁은 EURO의 등장으로 국제간의 대체성이 증가함에 따라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국채시장의 개혁과 더불어 국제 발행비용의 절감과 위험관리를 위한 국제 관리 및 계획기능의 강화도 국제시장의 활성화에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2. 국채시장 및 관련제도의 개혁

기관투자자들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시장의 유동성이다. 한편 정부의 투명한 국채 발행 및 관리정책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투자자의 시장참여를 촉진한다. 국채 수요기반의 확대와 발행비용의 절감을 위한 OECD 국가들의 국채시장 개혁사례는 국제시장의 유동성 및 투명성의 제고에 그 초점이 맞추어졌다.

가. 발행시장의 개혁

국채 발행의 투명성 및 예측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많은 국가들이 정기적인 국채 발행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정기적인 국채 발행프로그램의 개발과 발행계획의 사전공시는 투자자의 투자계획 수립에 도움을 주고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투자자의 국채시장 참여를 독려하고 국채 발행금리를 낮출 수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정형화된 국채 발행계획은 국제관리의 융통성을 제거하여 장기적으로 정부의 자금조달비용을 증가시킬 소지도 있으므로 정례적인 발행계획을 수립하되 경제상황과 시장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신축성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국채 종목의 유동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발행물량이다. 일반적으로 종목당 발행물량이 클수록 국채 종목의 유동성은 증가하고 유동적인 국채 종목은 유동성 프리미엄을 가지므로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에 발행되게 된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많은 국가들이 국채 발행물량을 소수의 지표종목(benchmark issue)에 집중시킴으로써 종목당 발행물량을 증가시켜 유동성을 제고하고 발행금리를 절감시키고 있으며 지표종목의 육성을 통하여 효율적인 지표금리의 기간구조를 형성시키고 있다. 또한 표면금리 등 이미 발행된 국채 종목과 동일한 조건을 가진 국채를 추가적으로 발행(fungible issue 또는 reeoping)함으로써 지표종목의 종목당 발행물량을 증가시키고 유동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 밖에도 국채 발행방법을 경쟁입찰로 전환하고 입찰자의 조건을 개방함으로써

써 발행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STRIPS(Separated Trading of Registered Interest and Principal of Securities)의 개발, 물가지수연동국채의 개발 등 각기 다른 투자계층의 구미에 맞는 국채상품의 개발을 통하여 수요기반을 확대함으로써 국채 발행비용의 절감을 꾀하고 있다.

나. 유통시장의 개선

1980년대 이후 많은 국가들이 국채 유통시장 개선책의 일환으로 국채전문딜러제도(Primary Dealer System)를 도입하였다. 국채전문딜러제이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국채시장의 주요 참가자(딜러)를 국채전문딜러로 선정하여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일정한 의무 부과와 함께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또한 제공함으로써 국채시장의 인위적인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제도이며 미국을 필두로 캐나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독일과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이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국채전문딜러제도는 유통시장의 조성을 통한 유동성 제고 외에도 국채소화 기반의 안정적 확보, 통화당국 공개시장조작의 대상 등 그 도입의 주요 목적이 국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도입 목적에 따라 부과되는 의무의 성격과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지속적인 매도·매수 호가의 제시를 통한 유통시장 조성, 발행시장에의 적극적인 참여, 국채관리자 및 중앙은행에 정보제공 등이 일반적인 의무사항으로 주어지고 있으며 많은 국가에서 국채전문딜러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국채시장의 유동성이 대폭 제고되었다.

국채전문딜러제도의 도입과 함께 RP 및 선물시장의 개발을 통한 국채 인수자금조달 및 금리 헤지수단(position financing)의 개발 또한 유통시장의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국채시장의 유동성 제고를 위해서는 항상 일정한 양의 국채를 보유하고 매도/매수호가를 제시함으로써 시장을 조성하는 딜러의 역할이 중요하나 시장조성자로서 딜러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금 및 국채의 공급처로서 RP시장의 개발과 금리선물 등 시장조성에 따르는 금리위험의 헤지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 RP시장의 개발과 선물시장의 도입은 선진 국가들의 국채시장 활성화와 국채전문딜러제도의 성공적 도입에 견인차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이밖에도 DVP 시스템의 구축, 국내 결제시스템과 국외 결제시스템의 연결, Netting System의 개발 등 효율적인 결제시스템의 확립과 외국인 투자자의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의 폐지 또는 세율 인하도 국채시장의 활

**RP시장의 개발과
선물시장의 도입은
선진 국가들의
국채시장 활성화와
국채전문딜러제도의
성공적 도입에 견인차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EURO의 등장,
금융·외환시장의 개방 및
자유화 등으로
국제 금융자본시장이
점차 통합됨에 따라
각국 국채간 대체성이
증가하고 있다.

〈표 5〉 각국의 국채전문딜러제도 개요

(단위 : %)

구분	미 국	영 국	프랑스
회사수	○ 37개사(1998.2말)	○ 16개사(1999)	○ 19개사(1999)
명 칭	○ Primary Dealer	○ GEMMs (Gilt-Edged Market Maker)	○ SVTs (Specialiste en Valeurs du Tresor)
자격 부여	○ 뉴욕연준이 선정 - 자본금 5천만달러 이상, 국채입찰 지속 참여, 우수한 인적자원 보유, Position 및 관리 시스템 보유	○ 영국국채관리국 (DMO)의 허가 - 국채보유잔고, 거래량, 자본내역, 재무제표등 고려하여 허가	○ 재무부의 지정 - 5억프랑 최소자본금 ; 파리에 지정설치; - 영업기반, 금융, 인적· 지적자원 보유 - 일정기간 거쳐 지위 획득
권 한	○ 입찰금액 예약면제 ○ 연방은행의 공개시장 조작시 거래대상 ○ 국채정보 사전취득	○ 전화입찰가능 ○ DMO (과거에는 영란은 행) 유통시장 거래의 독점적 대상 ○ IDB에의 독점적 접근 ○ 국채스트립 독점권	○ 비경쟁입찰 독점참여 ○ 재무성 RP거래 독점적 대상 ○ 재무성 Buy Back 거래의 독점적 대상
의 무	○ FRB와 충실한 거래 ○ 국채입찰에 충실히 참여 ○ 통화정책에 유효한 시장정보 제공 ○ 연준에 채권보유, 자금조달방법 보고	○ 고객요구시 매수/매도 호가제시하고 거래 ○ 국채입찰에 충실히 참여 ○ 국채시장 정보제공 ○ 거래소에 매매결과 보고 ○ DMO에 채권보유현황 및 거래현황보고	○ 고객요구시 매수/매도 호가를 제시하고 거래 (국채 및 RP) ○ 단·중·장기국채각 그룹별로 발행시장에서 연간발행물량 2% 이상 인수 ○ 연간 RP거래물량 2% 이상 거래 ○ 국채 홍보 및 판매에 노력 ○ 상시적 국채시장정보 및 주기적 국채거래 및 보유현황 보고

성화에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한편 EURO의 등장, 금융·외환시장의 개방 및 자유화 등으로 국제 금융자본 시장이 점차 통합됨에 따라 각국 국채간 대체성이 증가하고 국채의 수요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각국간의 경쟁이 고조되고 있으며 각국의 정부는 투자자의 확보를 위하여 Screen Based Electronic Trading System의 도입, 새로운 상품의 개발 등 국채시장의 유동성·투명성·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

주하고 있다.

다. 국채 관리조직의 개편

급증하는 국채의 발행과 나날이 복잡해져 가는 정보기술 (Information Technology)과 금융기법 (Financial Technology)의 변화로 국채 관리의 전문화가 요구됨에 따라 스웨덴, 뉴질랜드, 아일랜드를 시작으로 오스트리아, 그리스, 네덜란드, 헝가리, 영국 등 많은 국가들이 재무부나 중앙은행으로부터 분리된 국채 관리기관의 설립을 통하여 국채 관리운영의 전문화를 추구하고 정책결정의 책임성 (accountability) 및 효율성을 제고시켜 국채 발행비용의 절감을 꾀하고 있다. 분리된 기관에 의한 국채관리는 국채 관리에 있어서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고 국채 관리정책과 재정·통화정책을 명확히 구분해 줌으로써 정책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또한 분리된 국채 관리기관은 공무원의 급여수준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전문인력의 충원뿐만 아니라 국채 관리에 필요한 여러 특수기능들을 조직 내에서 개발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

발행규모의 영세성이 해소되고 국채시장의 개발을 위한 기초여건이 조성됨에 따라 정부는 기존 국채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국채시장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 적극 시행하고 있다.

V. 국채시장 및 관련제도 개편: 추진현황 및 향후과제

금융위기 이후 발행물량의 확대로 우리나라 국채시장 활성화의 가장 큰 장애요소 중의 하나였던 발행규모의 영세성이 해소되고 국채시장의 개발을 위한 기초여건이 조성됨에 따라 정부는 Task Force의 구성, IBRD 기술지원차관 등을 이용하여 기존 국채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국채시장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적극 시행하고 있다. 본장에서는 국채시장 및 관련제도 개선의 추진현황과 향후과제를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1. 발행시장의 정비

앞서 지적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국채는 다양한 종목의 발행으로 국채 발행의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국채시장이 분산되고 유통시장의 발달이 저해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여 정부는 2000년부터 양곡증권의 발행⁷⁾을 중단하고 현재의 국고채권에 통합할 예정으로 있으며 장기적으로 국민주택채권의 폐지, 통

7) 현재 양곡증권은 차환목적으로만 발행이 되고 있다.

장기적으로
국민주택채권의 폐지,
통안증권과 국고채권의
통합으로 국채발행을
표준화함으로써
국채의 유동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표 7〉 1999년도 세부 국채발행일정

월	첫째주	둘째주	셋째주	넷째주
1	국고(3년)	양곡(1년)	국고(5년)	양곡(3년)
2	국고(3년)	국고(1년)	—	양곡(3년)
3	국고(3년)	외평(3월물)	국고(5년)	—
4	국고(3년)	국고(1년)	—	—
5	국고(3년)	양곡(3년)	국고(5년) 연기	양곡(3년)
6	국고(3년) 연기	외평(3월물) 국고(1년) 연기	외평(5년)	—
7	국고(3년)	—	국고(5년)	—
8	국고(3년)	국고(1년)	—	—
9	국고(3년)	외평(3월물)	국고(5년)	—
10	국고(3년)	국고(1년)	—	—
11	국고(3년)	외평(5년)	국고(5년)	—
12	—	외평(3월물)	양곡(5년)	—

주 : 위 일정은 1999년 6월 30일까지 조정된 내역임.
자료 : 재정경제부 내부자료.

안증권과 국고채권의 통합으로 국채 발행을 표준화함으로써 국채의 유동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공자기금을 통한 국민연금으로부터의 증서차입을 2001년부터 폐지하고 각종 공공 연기금으로부터의 차입을 국채 발행으로 전환함으로써 국채 발행물량의 증가와 유통시장의 활성화를 꾀할 계획이다.

국고채 3년 만기는 매월 발행, 1년, 5년 만기는 격월 발행 등 국채 발행의 정례화가 점차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기적인 국채 발행프로그램의 개발과 함께 발행계획의 사전공시를 통하여 시장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다. 또한 1999년부터 3년 만기 국채 발행 비중을 전체 국채 발행물량의 50% 이상을 유지하여 지표종목으로 육성함으로써 지표금리의 형성하고 발행비용의 절감을 추구하고 있으며 향후 지표종목의 확대를 통하여 지표금리의 장단기 기간구조를 형성시킬 방침이다. 국채의 시가발행은 상당히 정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아직까지 내정금리가 존재하여 시장상황에 따라 부분 유찰의 개연성이 존재하지만 1999년 8월 이후 내정금리제도를 전면 폐지할 방침이다.

〈표 8〉 1999년도 국채반기별 발행일정

(단위 : 억원)

	1년	3년	5년
양곡증권	7,500	16,017	6,000
국고채권	38,000	140,713	47,300
외평채권	3,000 ¹⁾	-	5,500

주 : 1) 3개월물임.

자료 : 재정경제부, 국고과 내부자료.

국채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최근에 취해진 일련의 제도개선 조치 중 가장 주목할 만한 사항은 국채전문딜러제도의 도입이다.

2. 유통시장의 활성화

국채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최근에 취해진 일련의 제도개선 조치 중 가장 주목할 만한 사항은 국채전문딜러제도(Primary Dealer System)의 도입이다. 정부는 일정한 자격조건을 갖춘 국채전문딜러를 선정하여 지속적인 매도·매수 호가의 제시와 일정규모 이상의 국채거래 등 유통시장 조성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국채시장의 유동성을 제고하고자 국채전문딜러제도의 도입을 결정하였다. 국채전문딜러제도의 도입을 위한 선행단계로서 자본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 국채의 70% 이상을 인수하는 은행들에게 제한적으로 국채딜링업무를 인가하여 국채전문딜러의 자격조건을 부여하였으며 국채전문딜러 후보자의 실적평가와 향후 시장조성의 장으로서 스크린에서의 매수/매도호가 공시를 통한 전자거래시스템이 거래소에 의하여 구축되었다. 국채전문딜러의 선정을 위해서 정부는 국채인수단 참가기관 중 국채 딜링업무를 인가받은 기관(은행, 증권, 증금사)을 대상으로 의향서를 접수하여 후보기관을 선정하고 4개월간에 걸친 시험기간 동안 이들 후보기관들의 국채 인수 실적, 시장조성 실적, 재무 건전성, 적절한 업무역량, 사업계획 등의 평가를 바탕으로 24개의 국채전문딜러를 1999년 7월에 선정하였다.

국채전문딜러의 주요 의무로는

- 거래소 경쟁매매시장과 장외시장에서 지표종목에 대한 매도·매수호가의 지속적 제시
- 매6개월간반기별 국채발행물량의 2% 이상 인수
- 매6개월 딜러간 거래실적 및 대고객 거래실적이 총거래량의 2% 이상 유지
- 유통시장 거래의 일정부분을 거래소 경쟁매매 시장을 통해 거래

국채전문딜러제도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RP시장의 개발, 금리헤지수단의 개발, DVP 시스템의 구축 등 딜링업무의 수행에 있어서 필수적인 하부구조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 국채관리자에게 거래실적 및 시장정보를 정기적으로 제출
 ○ 고객에게 적절한 시장정보 및 시장분석의 보급을 통하여 투자자의 시장참여 독려 등을 들 수 있다.

국채전문딜러의 선정에 따르는 신인도의 제고 외에 이러한 의무부과에 대한 반대급부로 경쟁입찰에서의 부분적 독점 참여권, 비경쟁입찰에의 참여권⁸⁾, 정부 유통시장 거래의 배타적 거래대상, 국채인수 자금지원, 국채시장 전반에 걸친 정책 의사 결정에 적극적인 의견제시 및 반영 등의 특혜가 부여된다.

국채전문딜러의 선정을 위한 시험기관 중 국채 유통시장의 거래실적은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폭 증가하였다. 물론 실적을 올리기 위한 가성적인 거래 (artificial trading)도 상당수 존재하나 국채전문딜러의 도입으로 인한 거래규모의 증가는 부인할 수 없으며 국채전문딜러의 시장조성으로 인하여 향후 국채 거래는 상당히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채전문딜러제도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RP시장의 개발, 금리헤지수단의 개발, DVP 시스템의 구축 등 딜링업무의 수행에 있어서 필수적인 하부구조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표 9> 연도별 국채거래 실적

(단위 : 조원, %)

구분	1995	1996	1997	1998.1~8	1998.9~12	1999.1~4
총채권거래량	112.4	104.8	143.3	219.3	333.3	304.9
국채거래량	5.5	5.3	9.0	4.6	25.4	110.8
국채거래 비중	5.5	5.3	6.3	2.1	7.6	36.3

거래 하부구조에 있어서 국채전문딜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RP시장의 개발 등을 통한 채권 및 자금조달수단의 확보와 국채 채고의 보유에 따르는 금리 변동의 위험을 헤지할 수 있는 수단의 개발이다. 정부는 RP 표준약관의 도입, 법적 근거의 확립, 세제상의 문제 등 RP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중에 있으며, 신탁재산의 채권대차 허용, 수수료의 경쟁 인하, 이행보증 제도 폐지, 담보비율의 하향 조정, 담보의 시가평가 등 일련의 조치를 통하여 채권대차제도의 활성화를 추구할 계획이다. 또한 채권자기매매업을 허가받은 증권 회사 및 증권업 겸영 금융기관에게는 보통결제 (T+2)를 허용하여 채권공매

8) 비경쟁입찰이란 발행물량의 일정부분을 경쟁입찰에서의 (가중)평균낙찰금리에 판매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short sale)를 인정함으로써 국채전문딜러들의 시장조성의 부담을 경감시킬 방침이다.

국채전문딜러의 시장조성에 따르는 위험을 헤지할 수 있는 주요 수단으로서 국채선물이 1999년 9월에 도입될 예정에 있으며 한은의 자금결제망과 예탁원의 증권결제망을 연결한 DVP 시스템이 1999년 11월에 구축되어 가동될 예정에 있다. 이밖의 주요개선 사항으로서 새로운 펀드에 대한 시가평가제의 적용이 이미 실시되고 있고 2000년 7월부터는 모든 펀드에 대한 시가평가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국채전문딜러제도의 도입과 아울러 거래소 경쟁매매시장의 거래실적이 스크린 서비스 매체를 통하여 공시됨으로써 지표금리의 실시간 공시가 가능하게 되었다.

국채전문딜러의
시장조성에 따르는
위험을 헤지할 수 있는
주요 수단으로서
국채선물이
1999년 9월에
도입될 예정에 있다.

3. 향후 추진과제

국채전문딜러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과거 1년여에 걸쳐 국채시장에서는 많은 변화와 개선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선진 국채시장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국채시장은 아직도 발행물량 및 시장규모가 영세하고 수요기반이 폭넓지 못하며 시장의 투명성과 유동성이 결여되어 있어 이의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특히 안정적인 유동성의 확보와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발행물량의 확보와 발행종목의 통합·단일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특히 시장의 규모가 영세한 우리의 상황에서 재정수지의 호전으로 인한 국채 발행규모의 급격한 감소와 이에 따른 국채시장 유동성의 저하 가능성은 국채전문딜러와 같은 장기적인 시장참가자에게 커다란 우려사항이 아닐 수 없으며 투자자의 유치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된다. 물론 홍콩의 경우와 같이 국채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재정여건에 관계없이 국채를 발행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국채와 동일하게 인식되고 있는 통안증권을 국채로 전환함으로써 발행물량 및 시

〈표 10〉 통안증권 만기구조(1999년 4월말 잔액기준)

(단위 : 조원)

만기	28일	63일	91일	182일	364일	371일	392일	546일	2년	계
잔액	0.2	0.2	1.0	0.2	28.6	0.05	0.2	—	20.0	50.4

**국채발행비용의
절감을 위한
보다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국채발행 및
관리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의 규모에 대한 제약을 상당히 해소할 수 있다. 물론 통안증권과 국채의 단일화를 위해서는 통합에 따른 이자지급과 발행일정의 조정 등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많으나 통안증권과 국채의 단일화는 국채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그리고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다.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국채 발행 및 관리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그 동안 건전재정의 유지와 미미한 국채 발행으로 인하여 국채 관리정책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부각되지 못하여 왔다. 그러나 국채 발행 및 잔액이 급증하고 정부의 이자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금리변동에 따른 재정의 위험부담이 커지게 되고 따라서 위험을 적절한 수준에서 관리하는 동시에 정부의 국채 발행소요를 비용 경제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효율적인 국채 발행 전략수립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효율적인 국채 발행 및 관리는 국채시장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장기적인 국채 발행비용의 절감을 또한 유도한다.

중기재정 및 국채 발행소요의 추정과 함께 중기국채 발행계획을 수립하고 장기적이고 일관된 정책수행을 통하여 국채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추가발행제도(reopening; fungible issue)의 도입,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발행계획의 수립, 위험관리체계의 구축, 국고여유자금 관리체계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국채 발행비용의 절감을 위한 보다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국채 발행 및 관리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끝으로 효율적인 국채 발행 및 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한 국채 관리조직체계의 구축과 역량의 강화가 무엇보다도 시급하며 국채관련 법률 및 조세체계의 정비도 향후 고려되어야 할 주요 과제들이다.

V. 맺음말

국채시장은 국가가 지급을 보증하는 무위험채권의 수급이 이루어지는 시장으로서 지표종목 중심의 대량매매에 의해 결정되는 국채금리는 기업, 금융기관, 가계, 정부 등 여러 경제주체의 소비, 저축 및 투자와 관련된 의사결정의 기준을 제공하고 금융시장의 지표금리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금융시장의 발전을 도모한다. 또한 국채시장은 효율적인 정부의 자금조달수단을 제공하고 신축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및 통화정책의 운영을 가능케 하고 연기금, 보험 등 기관투자자 및 일반 투자자에게 안정적인 (장기) 투자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저축을 증대하는 기능 등


거시경제의 운용 및 금융시장의 발전에 중요한 여러 역할을 수행한다.

우리나라의 국채시장은 지금까지 재정여건과 국채 발행 및 유통시장의 취약한 구조로 인해 국채시장(유통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국채수익률이 지표금리로서의 기능을 못하여 왔다. 그러나 1997년 말 발생한 금융위기 이후 재정적자의 증가로 인한 발행물량의 확대로 국채시장 개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우리나라 국채시장 활성화의 가장 큰 장애요소 중의 하나였던 발행규모의 영세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국채시장의 개발을 위한 기초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Task Force의 구성, IBRD 기술지원차관 등을 이용하여 기존 국채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국채시장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 적극 시행하고 있다. 그 결과 국채전문딜러제도의 도입을 비롯하여 국채선물시장의 도입, RP 및 국채대차거래의 개선, DVP의 도입, 등 국채시장 하부구조의 개선을 위한 작업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으며 많은 변화와 개선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선진 국채시장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국채시장은 아직도 발행물량 및 시장규모가 영세하고 수요기반이 폭넓지 못하며 시장의 투명성과 유동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이의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특히 안정적인 유동성의 확보와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채와 통안증권의 통합·단일화를 위한 지속적인 발행물량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와 더불어 국채시장의 발전을 촉진하고 장기적인 국채 발행비용의 절감을 유도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국채 발행 및 관리전략의 수립과 이를 위한 국채 관리조직체계의 구축 및 역량의 강화가 향후 추진되어야 할 주요 과제들이다.

안정적인 유동성의 확보와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채와 통안증권의 통합·단일화를 위한 지속적인 발행물량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참고문헌

- 박경서 · 연강흠 · 오창석 · 우영호 · 이광수, 『국채시장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연구원, 1997.
- 오창석 · 이상섭 · Simon T.Gray, 『국채전문딜러제도 도입방안』, World Bank FCRA Project, 재정경제부, 1999. 5.
- 채권시장제도 개선 연구반, 『채권시장제도 개선방안』, 1998. 11.
- Broker, Gunther, *Government Securities and Debt Management in the 1990s*, OECD, 1993.
- Fry, Maxwell, *Emancipating the Banking System and Developing Markets for Government Debt*, Routledge, 1997.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nternational Capital Markets: Developments, Prospects, and Policy Issues*, September 1994.
- OECD, *Room Documents for The Ninth Workshop on Government Securities Markets and Public Debt Management in Emerging Markets*, June 1999. 

OECD의 유해조세제도 판정기준과 우리나라의 관련제도



韓道淑 /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1. 서론

최근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와 자본 자유화 및 통신의 발달에 의해 투자의 효율성이 그 어느 때보다 증진되는 등 세계경제에 긍정적인 환경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이동이 자유로운 자본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가간의 조세경쟁 또한 그 어느 때보다 심화되고 있다.

이동이 자유로운 자본 및 금융서비스에 대한 국가간의 투자유치 경쟁은 무역과 투자의 왜곡과 더불어 조세회피를 조장하며 경쟁국들의 세수와 과세기반을 침식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유해한 조세경쟁은 투자자의 거주국의 징세능력을 저하시켜 징세비용을 증대시키며 더 나아가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생산요소로 세 부담을 전가시키는 등 왜곡을 가져오는 것이다.

이동이 자유로운 자본과 금융자산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조세피난처와 저세율국들은 조세와 비조세적인 특혜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다른 국가들도 경쟁적으로 조세우대제도를 제공함으로써 이들 지역에 유입되는 투자의 규모는 날로 급증하고 있다. OECD 보고서¹⁾에 의하면 커리비안과 남태평양 섬들, 즉 조세피난처를 포함한 저세율지역에 대한 G7국가들로부터의 외국인투자는 1985년부터 1994년 사이에 약 5배가 증가하였으며 규모면에서는 2천억달러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해한 조세경쟁은
투자자의 거주국의
징세능력을 저하시켜
징세비용을 증대시키며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생산요소로 세 부담을
전가시키는 등 왜곡을
가져온다.

1) Harmful Tax Competition:
An Emerging Global
Issue, OECD, 1998.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
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OECD에서는 이동이 자유로운 자본과 금융서비스 부문에 대한 유해한 조세경쟁에 대한 권고안과 지침을 마련하고 포럼을 결성하는 등 유해한 조세경쟁의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OECD에서는 이동이 자유로운 자본과 금융서비스 부문에 대한 유해한 조세경쟁에 대한 권고안과 지침을 마련하고 포럼을 결성하는 등 유해한 조세경쟁의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OECD의 유해한 조세경쟁 포럼(Harmful Tax Competition Forum)은 1996년 5월 G7 장관들의 공동성명에서 투자와 자금조달 결정에 왜곡을 초래하고 각국의 세수기반에 위협을 주는 유해한 조세경쟁에 대한 대응전략을 강구할 것을 OECD에 요구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1996년 리옹 정상회담(Lyon Summit)에서는 OECD 재정위원회로 하여금 1998년까지 유해한 조세경쟁에 대한 보고서의 작성을 촉구하였으며 1998년 1월에 이를 완료하였다.

OECD는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조세피난처(tax haven)와 유해조세제도(harmful preferential tax regime)의 지침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판정기준을 제시하였으며 포럼의 결성을 통해 유해한 조세경쟁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 즉, 포럼에서는 조세피난처 리스트의 작성을 통해 조세피난처의 확산을 막고 유해한 조세경쟁 활동의 억제에 도모하는 동시에 회원국과 비회원국들의 유해조세제도에 대한 자체조사와 상호조사(cross country examination)를 통해 유해조세제도를 지적하고 이를 제거해 나가도록 촉구하고 있다.

II. 유해조세제도에 대한 판정기준

유해한 조세경쟁 포럼에서는 OECD에서 제시하는 유해조세제도(harmful preferential tax regime) 기준에 의해 회원국의 유해조세제도에 대한 자체 조사의 제출을 의무화(1999년 9월 1일까지)하고 있으며 또한 회원국간의 상호조사(cross country examination:CCE)를 의장국인 미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진행 중에 있다.

1. 유해조세제도의 종류

OECD에서 논의되고 있는 유해조세제도에는 역외제도(offshore regime)와 사업 및 자본 소유제도(business and portfolio)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며 역외제도는 다시 금융서비스 부문과 비금융서비스 부문으로 나누어진다.

역외제도의 금융서비스부문은 역외금융제도, 그룹금융제도, 그룹소유 및 재보험제도로 다시 세분되며 각 제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역외금융제도(offshore banking regime)는 역외금융의 유치를 목적으로 비거주자에게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와 역외금융업으로부터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하는 제도이다.
- ② 그룹금융제도(group financing regime)는 다국적기업이 금융회사를 설립하여 그룹내 특정지역의 자회사 지원을 위한 금융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세적 혜택을 부여하는 특혜제도이다.
- ③ 그룹소유 및 재보험제도(captive insurance and re-insurance regime)는 다국적기업 소유의 보험 또는 재보험회사가 계열회사에 대한 위험을 보증하는 데 대해 조세혜택을 부여하는 특혜제도이다.

역외제도의 비금융서비스 부문에는 지역본부제도와 분배센터제도가 포함되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지역본부제도(headquarter regime)는 다국적기업의 자회사를 위해 광고와 회계, 법률자문, 통계, 정보 및 연구개발 등 경영관리를 하는 자회사에 조세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 ② 분배센터제도(distribution center regime)는 다국적기업의 자회사로부터 상품 등을 구입하여 저장 및 재포장하여 이를 계열에 재판매하거나 배달하는 회사에게 조세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사업 및 지분 소유제도에는 지주회사제도와 펀드관리제도가 포함되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지주회사제도(holding company regime)는 자회사의 지분 및 주식을 소유하여 경영권을 행사하고 배당 및 이자, 로열티와 수수료 등을 수취하고 자회사에게 자금을 조달하는 지주회사에 대해 조세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 ② 펀드관리제도(fund management regime)는 역외자금(offshore fund)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이다.

2. 유해제도의 판정기준

위의 유해제도의 종류 가운데 우리나라가 해당 가능한 제도는 역외제도 중 금

OECD에서 논의되고 있는 유해조세제도에는 역외제도와 사업 및 지분 소유제도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며 역외제도는 다시 금융서비스 부문과 비금융서비스 부문으로 나누어진다.

OECD에서
 유해조세제도를 규정짓는
 주요 기준은
 첫째, 저세율 또는
 영세율의 실효세율
 둘째, 외국인과 자국인에
 대한 제도의 차별화
 셋째, 제도 또는
 행정상의 불투명성
 넷째, 효율적인 정보교환
 기준의 미달이다.

음부문의 역외금융제도부문이며 OECD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유해제도의 4가지 주요 판정기준에 따른 세심한 검토에 따라 유해성 여부를 논의할 수 있다. 비회원국에 대한 OECD의 유해조세제도 조사는 의장국인 일본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비회원국의 활발한 참여를 위해 비회원국의 고위급 초청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유해한 조세경쟁의 논의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OECD에서 유해조세제도를 규정짓는 주요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요소를 기초로 하여 유해성 여부를 판정한다:

- ① 저세율 또는 영세율의 실효세율(no or low effective tax rates): 실효세율이 영세율이거나 극히 낮은 수준인 경우는 유해조세제도로 규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유해조세제도를 규정하는 다음의 3가지 주요 요소가 적용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유해조세제도로 판정된다.
- ② 외국인과 자국인에 대한 제도의 차별화('ring-fencing' of regimes): 조세지원제도가 외국인과 내국인간에 차별화됨에 따라 조세지원정책이 국내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시장으로부터 격리(ring-fencing)되며 이 같은 차별제도는 2가지로 구분된다. 즉, 외국인과는 달리 국내인 또는 국내법인은 조세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함으로써 특정 조세제도의 범주 외에 있거나 또는 외국기업의 국내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아 특혜제도가 국내경제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를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이외에도 외국인이 국내통화로 거래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조세지원제도의 제공으로 인해 국내통화제도에 혼돈을 가져오는 것을 최소화하고 있다.
- ③ 불투명성(lack of transparency): 투자 유치국의 제도상 또는 제도의 실행시 행정상에 불투명성이 존재할 경우 투자자의 거주국이 유해한 조세경쟁에 대응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게 된다. 이러한 제도의 불투명성은 제도의 도입 취지, 즉 제도 자체가 유해한 경우와 제도 실행시 행정관행에 의해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따라 제도의 실행시 행정관행에 의해 세율협상이 이루어지거나 엄격하지 않은 회계감사의 도입 등으로 인해 의도적인 왜곡이 제도 실행시 일어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불투명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실행 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유해조세제도에서 제외된다.
- ④ 효율적인 정보교환기준의 미달(lack of effective exchange of

information): 특정 조세지원제도의 혜택을 받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납세관련 정보를 납세자의 거주국에 쉽게 제공하지 않는 등 정보제공에 대해 비협조적일 경우 투자유치국이 유해한 조세경쟁에 가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유해한 조세경쟁을 초래하는 유해조세제도를 규정짓는 주요 기준이 되고 있는 위의 4가지 요소 이외에도 세원이 인위적으로 정의되거나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이전가격제도를 이행하지 않고 광범위한 조세협상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절세수단으로 특정제도를 홍보하는 경우는 유해한 조세제도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역외금융시장의
고유한 의미는
국내시장으로부터
분리되어 비거주자들에게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며
일반적으로 특별회계단위
혹은 계정 형태로
설치되어 운영되는
금융시장을 가리킨다.**

III. 역외금융제도의 현황

위에서 논의한 유해제도의 종류 가운데 우리나라가 해당 가능한 제도는 역외제도 중 금융부문의 역외금융제도이며 본절에서는 이러한 역외금융제도의 정의와 현황 및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역외금융제도와와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역외금융제도의 유해성에 대해 논의한다.

1. 역외금융의 정의 및 현황

한 나라의 금융부문은 거래자의 거주지와 거래통화에 따라 국내부문(domestic sector), 외국부문(foreign sector), 역외부문(offshore sector)으로 나눌 수 있다. 국내부문은 국내 거주자간의 거래로 국내금융기관에 의해 중개되는 부문으로 자국통화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외국부문은 자국에 있는 외국은행들이 국내 거주자들간의 금융거래를 중개하는 부문으로 자국통화가 주요 거래대상 통화이다. 끝으로 역외부문은 비거주자들간의 거래가 국내 또는 외국 금융기관들에 의해 중개되는 부문으로 외국통화가 주요 거래대상 통화가 되고 있다.

역외금융시장은 금융기관의 국제화와 경쟁의 심화에 따라 급속도로 팽창하였으며 해외 금융시장에서 새로운 이윤의 창출을 위해 국내금융 중심이던 곳들이 효율적인 세계적인 시장으로 통합되면서 역외금융시장(offshore financial center: OFC)으로 발전해 나갔다. 역외금융시장의 고유한 의미는 국내시장으로

**일반적으로
역외금융시장에는
조세의 경감, 외환 및
금융규제의 완화 등
보다 자유로운
금융중개활동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부터 분리되어 비거주자들에게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며 일반적으로 특별회계단 위 혹은 계정 형태로 설치되어 운영되는 금융시장을 가리킨다. OFC에서 활동하려는 금융기관은 감독기관으로부터 허가를 취득해야 하며 비거주자들의 자산과 부채에 대해 별도의 계정을 관리하는 부서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러한 역외금융시장에는 전통적인 금융 중심지로부터 조세피난처까지 다양한 종류의 역외금융을 하는 지역이 포함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역외금융시장에는 조세의 경감, 외환 및 금융규제의 완화 등 보다 자유로운 금융중개활동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유럽과 북미주의 역외금융시장은 전통적인 금융 중심지로 발달된 산업수준의 자본수출국으로서의 경제력과 수요에 의해 세계적인 OFCs로 성장한 반면에 커리비안과 남태평양섬들에 위치한 OFCs는 절세와 외환 및 금융규제로부터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고 기장센터 역할을 제공하며 성장하였다.

OFCs는 실질적인 금융거래가 이루어지고 대규모의 국제적인 종합금융센터로서 고도의 결제방식과 지역시장에 유동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기능센터인 일차적 센터와 지역 내에서 자금의 중개역할을 하는 이차적인 역외금융센터와 지역의 자금중개 역할보다는 다른 지역에서의 거래에 대한 기장센터로만 이용되는 조세피난처로 세분할 수 있다. 일차적 센터는 실제 금융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곳으로서 전통적인 금융센터들로부터 최종적인 차입자들에게 자금을 유통시켜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러한 일차적인 OFCs에는 영국, 미국, 일본 등의 역외금융센터가 포함된다. 이차적인 지역센터로는 지역의 자금 유동성과 적자 혹은 흑자에 따라 지역으로의 자금유입과 유출을 중개하는 역할을 하며 이러한 OFCs로는 아시아의 홍콩과 싱가포르, 중동의 바레인과 레바논, 그리고 중남미의 파나마, 유럽의 룩셈부르크 등을 지역센터로 들 수 있다. 기장센터는 실제 금융거래가 현지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고 기장을 위한 장소로 이용되는 곳으로 자본공급국이나 자본수요국에 인접한 조세피난처 또는 저세율 지역 등이 이에 포함되며, 대표적인 기장센터로는 커리비안의 OFCs 등을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조세피난처를 제외한 진정한 의미의 OFCs는 다음과 같은 3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외국 금융기관들을 유치하려는 당해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반영하는 조세 및 규제제도를 갖추고 있으며, 둘째, 자금의 중개지 역할을 하며 예외적으로만 국내 거주자에게 직접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리고 현지국의 경제규모가 금융 거래규모에 비해 상당한 크기를 유지함으로써 세계의 실물경

〈표 1〉 역외금융센터 유치지역

아프리카	아시아/남태평양	유럽	중동	서반구
D				
jibouti	Australia	Austria	Bahrain	Antigua
Liberia	Cook Islands	Andorra	Dubai	Anguilla
Mauritius	Gyam	Campione	Israel	Aruba
Seychelles	Hong Kong	Cyprus	Kuwait	Bahamas
Tangier	Japan ¹⁾	Gibraltar	Lebanon	Barbados
	Macau	Guernsey	Oman	Belize
	Malaysia ²⁾	Hungary		Bermuda
	Marianas	Ireland ³⁾		British Virgin Islands
	Marshall Islands	Sark & Isle of Man		Cayman Islands
	Micronesia	Jersey		Costa Rica
	Niue	Liechtenstein		Dominica
	Philippines	Luxembourg		Grenada
	Singapore ³⁾	Malta		Montserrat
	Thailand ⁴⁾	Madeira		Netherlands Antilles
	Vanuatu	Monaco		St. Kitts and Nevis
	Western Samoa	Netherlands		St. Lucia
		Russia		Panama
		Switzerland		Puerto Rico
		U.K. ⁶⁾		St. Vincent & the Grenadines
				Turks & Caicos Islands
				United States ⁷⁾
				Uruguay

일반적으로
역외금융거래는
외화통화 대부 및 예수,
외화채권의 인수
그리고 위험운용과
투기목적의 선물거래 등
3가지 종류의
업무가 주를 이루고 있다.

주 : 1) Japanese Offshore Market(JOM)

2) Labuan

3) Asian Currency Units(ACUs)

4) Bangkok International Banking Facilities(BINFs)

5) Dublin

6) London

7) US international Banking Facilities(IBFs): New York, Miami, Houston, Chicago and Los Angeles-San Francisco

자료 : Bank of International Settlements, IMF Staff, Shosh and Ortiz(1994), Far Eastern Economic Review March 1992, and U. N. Office for Drug Control Crime Prevention, 1998.

제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한다.

전세계적으로 69곳의 OFCs에서 역외금융이 이루어지고 있다(〈표 1〉참조).

역외자산의 구성은
예치금, 대출금,
외화증권과 본지점의
역외자산 등으로
이 가운데 대출금이
주를 이루며 다음으로
외화증권, 본지점의
자산 및 예치금 순이다.

〈표 2〉 역외금융센터(OFCs)의 국제자산 규모¹⁾

(단위: 십억달러, %)

모든 국가		역외금융센터(OFCs)			
		OFCs합계	영국	커리비안	아시아
1992. 12	6,293(100.0)	3,525(94.3)	2,410(38.3)	589(9.4)	1,087(17.3)
1993. 12	6,272(100.0)	4,036(64.3)	2,384(38.0)	560(8.9)	1,092(17.4)
1994. 12	7,135(100.0)	6,676(93.6)	2,699(37.8)	633(8.9)	1,231(17.3)
1995. 12	7,828(100.0)	7,118(90.9)	2,838(36.3)	638(8.2)	1,340(17.1)
1996. 12	8,076(100.0)	7,245(89.7)	2,845(35.2)	652(8.1)	1,316(16.3)
1997. 12	8,841(100.0)	7,816(88.4)	3,020(34.2)	739(8.4)	1,344(15.2)
% 증가					
1992~1997 평균	7.0	6.4	4.6	4.7	4.3
1992~1997	40.5	36.1	25.3	25.6	23.7

주 : 1) OFC가 BIS에 보고한 자료임.

2) Bahamas, Bahrain, Cayman Islands, Hong Kong, IBFs, JOM, Luxembourg, Singapore, The UK 포함.

3) () 안은 비중임.

자료 : L. Errico and A. Musalem, "Offshore Banking: An Analysis of Micro-and Macro-Prudential Issues", IMF Staff Paper, Jan. 1999.

1992년부터 1997년까지 OFCs의 자산규모는 3조 5천억달러에서 7조 8천억달러로 증가하였으며 연간 평균 6.4%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표 2〉참조). 1997년 말 OFCs의 자산이 전세계의 역외금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8.4%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차적인 기능센터 역할을 하는 영국 OFC의 자산이 OFCs에서 차지하는 비중(1997년 말 기준)은 38.6%를 기록하고 있으며 지역센터인 아시아의 OFCs는 17.2%, 기장센터인 커리비안은 9.5%로 각각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역외금융거래는 외화통화 대부 및 예수, 외화채권의 인수 그리고 위험운용과 투기목적의 선물거래 등 3가지 종류의 업무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외화통화 거래 중 유로화 거래가 역외금융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2. 우리나라의 역외금융제도

가. 우리나라 역외금융의 현황

우리나라의 역외금융은 국내 외국환은행들이 해외에서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

금을 조달하여 비거주자인 차입자에게 자금을 전달해 주는 금융거래로서 자금의 운용은 대출과 외화증권에 대한 투자가 주를 이루고 있다. 우리나라의 역외금융의 도입은 일시적으로 경상수지가 흑자를 기록했던 1977년부터 거론되기 시작했으나 실제로는 외환규제의 제한이 완화되기 시작한 1979년부터라고 볼 수 있으며 제도의 도입은 1988년에 이루어졌다. 우리나라의 역외금융업무는 주로 외자의 효율적 조달을 위주로 하며 역외금융시장의 육성이라고 보기 어렵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외자조달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1998년 말 현재 역외금융 운용기관은 총 98개로 예금은행(26개), 개발기관(3개), 증권사(15개), 외국은행 지점(54개) 등이 역외금융기관에 포함된다. 우리나라 역외금융의 자산은 1998년 말 기준 182억 3천만달러로 총대외자산 620억 4천만달러의 약 29.4%를 차지한다. 우리나라 역외자산은 외환사태 이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역외자산이 대외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6년 말 40.6%에서 1997년 말에는 34.2%, 1998년 말에는 29.4%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역외자산의 구성은 예치금, 대출금, 외화증권과 본지점의 역외자산 등으로(표 3)참조) 이 가운데 대출금이 주를 이루며 다음으로 외화증권, 본지점의 자산 및 예치금 순이다.

역외자산의 총 부채규모(1998년 말 현재)는 177억 5천만달러로 예수금, 차입금, 외화증권 및 본지점에 대한 부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외화증권이 66억 2천만달러로 가장 크며 다음으로 차입금, 본지점에 대한 부채, 예수금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나. 현행 제도

우리나라에서 역외금융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은 재정경제부에 외국환은행으로 등록하면 역외금융업 수행이 가능하다. 역외금융은 외국환은행이 비거주자 또는 다른 역외계정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비거주자 또는 다른 역외계정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것이다.

역외금융제도에 대한 조세지원으로는 외국환은행이 비거주자에게 지급하거나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역외계정의 설치·운영은 일반계정과 구분하여 계리하고 양 계정간 자금이체는 재경부 장관의 허가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단, 일반계정으로부터 역외계정

역외금융제도에 대한 조세지원으로는 외국환은행이 비거주자에게 지급하거나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역외금융계정의 자금조달은 비거주자 또는 다른 역외계정으로부터의 차입 예수, 외국에서의 외화증권 발행 및 비거주자에 대한 외화채권 매각으로 제한한다.

〈표 3〉 역외금융 현황(1998. 12월말 현재)

(단위 : 백만달러)

	합계	예금은행	개발기관	종금사	외은지점
역외부채	17,748	5,940	5,920	2,064	3,824
○ 예수금	147	101	30	-	-
○ 차입금	5,917	2,042	2,330	1,492	53
○ 외화증권	6,620	2,701	3,498	421	-
○ 본지점	4,820	1,027	28	-	3,765
역외자산	18,232	6,081	6,103	2,228	3,820
○ 예치금	1,836	653	1,037	130	16
○ 대출금	11,273	3,758	3,410	739	3,366
(해외은행)	1,758	919	422	181	236
(현지법인)	5,053	1,948	851	223	2,031
(외국기업)	3,164	872	1,032	335	925
○ 외화증권	3,304	873	416	1,334	411
○ 본지점	1,998	791	1,187	-	20

자료 : 재경부 내부자료, 1999.

으로의 자금이체로서 직전 회계연도중 역외 외화자산 평잔의 5% 범위 내에서의 자금이체는 허가 없이 가능하다. 또한 역외계정에의 예치목적으로 5천만달러를 초과하는 외화증권을 상환기간 1년 초과로 조건으로 발행하고자 할 때는 재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역외금융계정의 자금조달은 비거주자 또는 다른 역외계정으로부터의 차입 예수, 외국에서의 외화증권 발행 및 비거주자에 대한 외화채권 매각으로 제한하며 역외금융계정의 운용방법도 비거주자 또는 다른 역외계정에 대한 대출과 예치 및 비거주자가 발행한 외화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역외금융기관의 자금조달처(이자수익자)에 대한 신원확인을 의무화하고 있다. 즉, 이자수익자, 이자금액 및 지급시기에 대한 정보보유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외화증권의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는 신원확인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역외금융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은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외화자산과 부채 비율 등의 건전성에 대해 감독을 하고 있으며, 외국환은행장은 역외자산 및 부채상황을

매월 한국은행 및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고 한국은행은 분기별로 이를 재정경제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주요국의 역외금융제도와 우리나라 제도의 비교

가. 규정

원칙적으로 미국(International Banking Facilities: BIFS), 싱가포르(Asian Currency Units: ACUs), 일본(Japanese Offshore Market: JOM) 및 우리나라 모두 역외금융거래는 국내외환은행, 외국은행의 지점 및 인가된 기관 등에 설치된 역외계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역외금융은 일반은행, 개발기관, 증권사와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에서 역외계정의 설치 및 운용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즉, 공통적으로 4개국의 역외금융계정은 모두 국내은행계정과 분리되어 운용되고 있으나 런던과 홍콩의 경우는 역외계정업무와 국내계정업무가 분리되지 않고 통합되어 있다(표 4)참조).

위의 4개국의 경우 모두 역외계정의 거래대상자를 비거주 개인 또는 법인과 외국정부 및 관련기관으로 정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역외계정과 일반국내계정간의 이체는 허용되지 않고 있으나 실무상의 애로사항을 감안하여 예외적으로 자산의 일정규모 내(일본: 10%, 우리나라: 5%)에서는 이체가 허용되고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는 수출 및 무역관련 자금조달과 관련해서는 역외계정으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며 제한된 금액내에서는 국내 거주자와 법인 및 연기금의 역외계정예금을 허용하고 있다.

위의 4개국의 공통적인 역외금융제도에 대한 주요 업무는 외국의 비거주자, 기업 및 은행, 외국정부 및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외화예금 및 대출업무를 통해 외화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이다. 이외에도 거래대상자로부터의 외화증권의 발행 및 인수와 채권의 매각 등이 포함된다.

나. 조세혜택

미국의 경우는 역외금융으로부터의 이자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가 면제되고 있으나 역외금융소득은 거주지국과세 또는 전세계소득에 대한 과세(worldwide income taxation)원칙에 의해 역외계정을 설치한 은행 또는 기관의 소득에 합산

역외금융제도에 대한 주요 업무는 외국의 비거주자, 기업 및 은행, 외국정부 및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외화예금 및 대출업무를 통해 외화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이다.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공통적으로 법인세를
면제해주고 있으며
원천징수 또한 면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역외금융의
이자소득에 대해 0.5%의
교육세가 부과되고 있다.

되어 통상적으로 법인세가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주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경우는 지방세에 대해 상당한 조세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뉴욕의 경우).

싱가포르의 경우는 모든 역외금융소득에 대해 법인세에 10%의 저율과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인지세를 포함한 원천징수는 면제하고 더 나아가 특정계정에 대해서는 유산상속세 또한 면제된다.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공통적으로 법인세를 면제해주고 있으며 원천징수 또한 면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역외금융의 이자소득에 대해 0.5%의 교육세가 부과되고 있다.

다. 주요국과 우리나라제도와와의 차이점

우리나라의 역외금융제도와 위의 주요 3국의 역외금융제도와는 기본적인 제도상의 차이점을 찾기 어려우며 특히 일본의 JOM과 우리나라의 역외금융제도는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취지상 미국의 IBFs의 경우는 대부분의 실질거래가 뉴욕에서 이루어지고 기장만 역외계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OECD에서 논의하는 유해제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미국의 IBFs의 경우는 거래의 상당부분이 외화 조달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커리비안의 기장 센터를 대신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국내기업의 현지법인들의 외화조달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OECD에서 우려하는 경우와는 거리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최근의 외환사태 이후 외화조달을 위한 위화표시채권의 발행 등으로 역외금융을 이용하고 있는 등 실질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일본 및 조세피난처를 제외한 모든 역외금융제도를 설치하고 있는 국가들은 역외금융거래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다.

IV. 우리나라의 조세제도에 대한 유해성 검토

1. 우리나라의 유해성 검토대상 제도

우리나라의 제도 중 OECD에서 논의되고 있는 유해조세제도의 판정기준에 저

〈표 4〉 주요국의 역외금융제도(Offshore Banking Regime)

우리나라의 경우는 국내기업의 현지법인들의 외화조달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OECD에서 우려하는 경우와는 거리가 있다.

유형	국가	설립연도	시장규모 (억달러)	참가금융기관 (개)	조세제도 원천세	법인세	지급 준비율
내외분리형	한국	1988년 역외계정 설치	182 (1998년 12월말)	국내:29 외:54 종금:15 (1998년 12월)	0.5% (교육세)	면제	없음
	미국	1981년 IBF계정 설치	3,177 (1990년 9월말)	국내:144 외:328 기타:47 (1990년 9월)	없음	연방최고세율 34% (지방세는 뉴욕주의 경우 면제)	없음
	일본	1986년 JOM계정 설치	7,061 (1994년 12월말)	국내:144 외:86 (1994년 12월)	없음	면제	없음
	싱가 포르	1968년 ACU계정 설치	4,811 (1995년 7월말)	국내:9 외:114 머천트뱅크:70 (1995년 7월)	없음	10%	없음
	태국	1992년 BIBF계정 설치	436 (1995년 9월말)	국내:15 외:13 BIBF전담:20 (1995년 9월)	없음	10%	없음
내외일체형	런던	1950년대말 자연발생	10,527 (1993년12월말)	국내:206 외:328 (1993년 12월)	없음	과세 (세율 35%)	외화에는 적용
	홍콩 자연발생	1972~73년	5,120 (1993년 12월말)	국내:30 외:133 (1991년 3월)	없음	국내수익: 17.5% 해외수익:0%	없음
조세회피형	바하마	1965년	1,623 (1993년 12월말)	외:350 (1991년8월)	없음	없음	없음
	케이만	1966년	3,946 (1993년 12월말)	외:403 (1986년 12월)	없음	없음	없음

주 : 내외일체형은 모든 금융거래가 역내외의 구분 없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국제금융시장. 내외분리형은 역내계정과 분리된 별도의 역외계정을 통하여만 거래를 할 수 있는 제도. 조세회피형은 실제거래는 주요 국제금융시장에서 이루어지고 거래장만을 처리하는 형태.

자료 : 한국은행, 「현행 역외금융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996. 1.

참고 : 대만의 역외금융은 1999년 5월말 현재 389억 7천만달러이며, 운영기관은 71개임(국내은행 38개, 외은 33개) (Estern TAIPEI 보도, 1999. 6. 26)

축될 가능성이 있는 제도로는 「국제이자소득에 대한 감면제도」, 「역외금융 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와 법인세 면제제도」,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지원제도」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유해성의 판단 여부는 해당 제도가 타정부의 세수와 세원을 위협하려는 우리 정부의 의지가 있는지도 중요하게 작용한다.

**국제이자소득과
역외금융소득에 대한
감면제도 및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제도의
유해성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이 제도들을
OECD가 제시하고 있는
유해조세제도의
주요 판정기준에 따라
검토·심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국제이자소득에 대한 감면제도는(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② 외국환은행 등이 외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한 이자 등으로부터의 소득을 지급받는 자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면제해 주는 것이다. 단, 거주자와 내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는 자본자유화로 외화표시채권의 취득이 자유로워짐에 따라 원화표시채권과 형평성 유지를 위해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면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역외금융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와 법인세 면제제도는(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국내의 외국환은행 및 외국은행의 지점 또는 기관의 역외금융영업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비거주자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지원제도(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는 외국인투자자의 국내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인세, 소득세, 관세,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의 국세와 취득세, 재산세, 종토세, 등록세 등의 지방세의 감면을 허용하고 외국인투자지역내의 투자에 대해 조세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감면대상사업으로는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 수출자유지역을 포함한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 등이 포함되며 감면율은 소득세와 법인세(배당포함) 등의 직접세는 감면대상사업에 대해 7년간 100% 면제와 그 이후 50%를 각각 감면해주며 관세,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은 대상사업에 대해 전액 면제된다. 또한 기술도입 대가에 따른 조세는 5년간 면제되고 취득세, 재산세, 종토세와 등록세 등의 지방세는 고도기술수반사업의 경우는 처음 5년간 100% 면제되며 이후 3년간은 50%가 감면된다(단, 지자체의 조례로 8~1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우리나라 관련제도의 유해성 여부

국제이자소득과 역외금융소득에 대한 감면제도 및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제도의 유해성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위의 제도들을 OECD가 제시하고 있는 유해조세제도의 주요 판정기준에 따라 검토·심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제이자소득 또는 역외금융제도의 이자소득에 대한 감면제도의 경우는 OECD에서 별도로 논의되고 있는 Hybrid Approach에 해당되는 제도이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해제도의 논의대상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고 있다.

또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제도의 경우도 OECD의 유해한 조세경쟁 포럼에서 다루고 있는 이동이 자유로운 금융이나 서비스제도가 아닌 제조업에 국한되어 있으므로 유해제도의 논의 대상의 범주에서 벗어나고 있으나 기존의 연구들에 의하면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실효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조세지원이 외국인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의문시된다. 현재 OECD에서의 유해한 조세경쟁 포럼에서는 유해조세제도를 금융 및 서비스 부문에 국한하고 있으나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혜택 논의를 향후 제조업분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의견의 수렴을 보고 있다. 그러므로 향후 국제사회에서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과도한 외국인투자 지원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향후 국제사회에서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과도한 외국인투자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재 OECD의 유해한 조세경쟁포럼에서 논의되고 있는 유해제도에 대한 우리나라 제도의 논의대상은 역외금융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제도로 국한되며 역외금융제도의 유해성을 다음과 같은 OECD의 판정기준에 따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역외금융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해 주고 있으므로 영세율의 판정기준에 저촉되나 이 기준에 저촉된다고 해서 유해제도로 자동 판정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의 다른 3가지 판정기준에 의해 제도의 유해성이 결정된다. 즉 법인세의 면제 자체가 유해조세제도의 필요조건은 될 수 있으나 충분조건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역외금융제도는 이동성이 높은 자금거래의 기장을 목적으로 하는 장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며 우리나라의 현지법인에게 외화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실질적인 금융거래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이다. 최근에는 외환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외화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서 실질적인 자금조달의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며 외국의 세수 또는 세원에 대해 악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또한 역외금융소득에 대해 인지세와 교육세(0.5%)가 부과되고 있어 절세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외국투자자를 유인하기 위한 제도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역외금융제도가 우리나라 기업의 현지법인들에 대한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는 데 비중을 둔다면 인지세와 교육세 등의 원천세도 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며 이로부터 발생할 세수감소효과도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역외금융업무로부터의 소득이 은행업으로부터의 소득의 극

역외금융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행정상의
조정이나 세율협상의
여지도 존재하지 않고 있어
제도 또는 관행상
투명성 결여로 인한
유해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히 일부를 차지하며 나머지 소득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법인세가 부과되고 있다. 역외금융의 자산은 (1998년 12월 기준) 대외자산의 29.4% 정도를 차지하나 총자산에 대해서는 14%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외국환은행의 소득의 극히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역외금융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가 국제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역외금융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즉, 역외금융의 이자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함으로써 국내 외국환은행의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역외금융거래에 대한 과세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일본과 우리나라 및 조세피난처를 제외한 모든 역외금융제도를 운영하는 국가에서는 역외금융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다(〈표 4〉 참조).

외국인과 자국인에 대한 제도의 차별기준인 'ring-fencing'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의 역외금융거래는 역외계정의 설치에 의해 이루어지며 영업대상 기관은 국내의 외국환은행, 개발기관, 증권사 및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을 포함하는 등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대해 차별화하고 있지 않다. 즉, 역외금융 소득을 위한 영업대상 기관의 국내시장 진입과 관련해서는 OECD의 유해조세제도 판정기준인 'ring-fencing' 기준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역외금융의 거래대상자를 비거주 개인 및 기업과 외국정부 및 관련기관으로 국한하고 있어 유해성 논란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역외금융제도는 외국에서 외국화폐로 이루어지는 거래와 동일하므로 국내의 통화정책에 혼돈을 주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역외금융은 해외의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기능적인 역할을 하며 절세 혹은 조세회피를 통한 유해한 조세경쟁을 조장하는 취지가 존재하지 않는다.

역외금융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행정상의 조정이나 세율협상의 여지도 존재하지 않고 있어 제도 또는 관행상 투명성 결여로 인한 유해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역외금융제도는 해당금융기관이 자금조달처(이자수익자)에 대한 신원확인 및 이자액 및 지급시기에 대한 정보보유를 의무화하고 있어 정보교환 관련 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절세 또는 자본도피를 위한 정보의 보호나 비밀유지 서비스는 제공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외화증권의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는 신원확인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3. 유해성 검토의 결론

위에서와 같이 OECD에서 제시하고 있는 유해성 판단기준에 따라 우리나라의 역외금융제도를 살펴본 결과 유해성이 존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역외금융제도에 대한 조세혜택의 경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우리나라의 역외금융제도는 기장을 목적으로 하는 장소를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실질적이며 효율적인 금융거래를 통해 외화자금의 조달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또한 국내외은행이 모두 국내업무와 역외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등 역외금융과 국내금융활동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해 내·외국 은행 및 기관에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제도 자체도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비거주자에게 절세 또는 조세회피 유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으며 타국의 세원이나 세수에 유해한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 끝으로 정보교환면에서도 우리나라는 1995에 제정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정보교환제도를 포함시키는 등 국가간의 조세협력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역외금융거래로부터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인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동시에 이로 인해 역외금융부문에 대한 국내은행들의 경쟁력 감소 등의 부정적인 영향과 제도의 실효성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우리나라의 역외금융거래에 대한 조세제도가 OECD에서 유해조세제도로 판정될 경우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제적인 규모의 역외시장(미국, 영국, 홍콩, 싱가포르 등)에서는 역외금융거래에 대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다(〈표 4〉 참조). 이에 따라 중장기적으로는 국제적인 흐름에 따라 역외금융거래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KDI

중장기적으로는 국제적인 흐름에 따라 역외금융거래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세
법
지
남

1999

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32333
33738394041424344454647484950515253545556575859606162636
56768697071727374757677787980818283848586878889909192939
5979899100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
83132333435363738394041424344454647484950515253545556575
86162636465666768697071727374757677787980818283848586878
919293949596979899100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
12526272829303132333435363738394041424344454647484950515
15556575859606162636465666768697071727374757677787980818
18586878889909192939495969798991001234567891011121314151
31920212223242526272829303132333435363738394041424344454
34950515253545556575859606162636465666768697071727374757
37980818283848586878889909192939495969798991001234567891
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32333435363738394
24344454647484950515253545556575859606162636465666768697
27374757677787980818283848586878889909192939495969798991

세법개정안을 보고

소득분배구조 개선과 재정개혁, 세계의 합리화·국제화를 위한 금년도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었다. 『재정포럼』에서는 세법개정안의 주요내용과 평가를 세목별로 살펴보는 특집을 마련하였으며, <정책흐름>에는 1999 세법개정(안)의 전문을 게재하였다.

(편집자 주)

1999년

- 종합평가 安 鍾 錫/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 소득과세제도 安 鍾 錫/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 소비과세제도 成 明 宰/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 상속·증여세제 韓 相 國/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 관세제도 張 槿 鎬/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세정개혁 玄 鎭 權/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종합 평가

安鍾錫 /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1.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정부가 금년도 세제개편안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분야는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동안 우리 경제정책은 고도성장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며, 조세정책에 있어서도 소득재분배 기능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여 왔다. 그러나 1997년 이후 경제위기를 경험하면서 소득분배가 크게 악화되었고,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김대중 대통령이 광복절 기념 경축사에서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를 위한 세제개편을 언급하게 되었고 뒤이어 정부의 개편안이 발표되었다.

제시된 개편안은 소득세와 상속·증여세 세율 체계의 누진도를 강화하고 그 동안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세원에 대한 과세 포착률을 제고하는 방안을 포괄하고 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부활과 상속·증여세 세율체계 개편이 전자에 속하며, 부가가치세제 개편 및 신용카드사용 확대를 통한 과표양성화를 제고와 상속세 증여의제제도 강화, 양도소득세 과표현실화를 제고 등이 후자에 속한다. 또한 중·저소득층이 많이 사용하는 재화

에 대한 특별소비세 폐지안도 제시되었다.

이와 같은 세제개편안은 대체로 다른 부작용을 크게 유발하지 않으며, 장기적인 세제개편방안에 부합하는 방안들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부활과 부가가치세제 개편은 한국 조세연구원과 관련 학계, 민간단체 등에서 오래 전부터 요구하여 온 것으로 늦은 감은 있지만 더 늦기 전에 개편안을 확정지으려는 정부의 시도는 바람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각각의 개편방안들이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먼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체계 개편을 의미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경우,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 제도의 부활로 인해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인원은 3만명 수준으로 과세인원의 2% 정도에 불과하다. 최고 소득층 2%에 대해 누진세율 체계를 적용한다고 하여 소득재분배가 얼마나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두 번째 문제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문제이다.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세율체계의 누진도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금년도 세제개편안에서
 중점을 둔 분야는
 소득재분배 기능의 강화,
 세정개혁 뒷받침을 위한 제도 개선,
 세제의 합리화·국제화이다.**

보다 큰 의미를 갖는 것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소득을 포착하여 과세하는 일일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부가가치세제 개편 및 신용카드 사용 촉진을 통한 사업소득 과표양성화를 제고, 양도소득세 과표현실화를 제고, 상속세 증여의제제도 강화 등 금년도 세제 개편안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고소득층의 소득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추측되지만 아직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이 있는데 주식양도차익이 바로 그것이다. 자금시장에 아직도 불안요소가 존재하므로 지금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더라도 장기적으로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를 위해서, 그리고 조세의 수평적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현재 대주주 등 일부에 국한되고 있는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을 확대하여 모든 주주의 주식거래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변칙적 상속·증여를 근절한다는 관점에서도 주식양도차익 과세는 필수적이다. 주식양도차익 등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를 통해 상속·증여세 포탈에 대한 동기를 약화시키지 않고 상속·증여세만 강화하여 변칙 상속·증여를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

II. 세정개혁 뒷받침 위한 제도 개선

금년도 세법개정안에서 또 하나 크게 두드러지는 분야는 세정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다. 신정부 출범 이후 엄정한 세정 집행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년도 세제개편안에서 몇가지 근본적인 제도 개편안이 제시되었는데 과세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특례법과 국세공무원법 제정안, 그리고 조세범처벌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이 그것이다.

과세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특례법은 각종 과세자료를 국세청 통합 전산망에 집중시켜 과세정보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법률은 공공기관의 각종 과세자료가 국세청에 집중되어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공평과세 및 세정의 과학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세공무원법은 국세공무원을 다른 공무원과 분리하여 별도의 인사관리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세공무원에게 특별히 요구되는 전문성, 청렴성 등을 고려할 때 국세공무원법의 제정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다만 한가지 바라는 것은 우수한 전문인력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인센티브가 제공되어야 하는바, 수당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정시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기 바란다. 특히 5급 신규 채용을 위한 국세행정고시의 경우 재경직 등 행정고시의 다른 분야에 비해 다양한 직무경험을 제한


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우수한 인력 유치를 위해 특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III. 세제의 합리화 · 국제화

이와 같은 두 가지 중점분야 외에 세제의 합리화 및 국제화를 위해 다양한 세제개편안이 제시되었다.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이다. 그 동안 조세감면에 대해서 과거 5년간의 직접세 · 간접세 감면실적을 의원 요구시에 총액규모만 국회에 제출해 왔었다. 그러나 금년에는 제1단계로 1998년 직접세의 조세지출 보고서를 정기국회에 세입예산안의 참고자료로 제출할 계획이며, 점차 제출자료를 확대하여 2001년부터는 차기연도 조세지출 예측치를 제시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조세지출예산제도는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연계운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조세지출 내역을 대외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조세특례의 만성화를 억제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세율 체계 개편 또한 금년도 세제개편에서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WTO의 판정에 따라 금년 내에 개편안을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주의 세율인상에 대한 찬 · 반론이 엇갈려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WTO의 판정에 따른 주세율 체계 개편은 증류주에 국한되며, 개편방향은 모든 증류주에 대한 주세율 및 교육세율을 일치시키는 것이다. 한편

대내적으로 볼 때 음주와 관련한 외부불경제가 매우 심각한 데 비해 우리나라 주세율 체계는 소비억제적 조세로서 외부불경제를 축소하는 기능이 약하므로 증류주에 대한 주세율을 상향 평준화하고, 맥주에 대한 주세율을 장기적으로 증류주 수준 또는 그 이하로 조정하여 외부불경제 축소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음에서는 금년도 세제개편안을 소득과세, 소비과세, 상속 · 증여세, 관세제도, 그리고 세정개혁으로 구분하여 개편안의 내용을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고 평가한다. 

소득과세제도

安鍾錫 /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1. 개편안의 내용

1. 소득세제

정부가 1999년 세제개편안을 마련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분야 중의 하나가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997년 이후 경제위기 과정에서 임금하락, 중소기업 도산 증가, 실업 증가 등으로 인하여 저소득층의 소득이 감소되는 반면 이자율 상승으로 인하여 고소득층의 소득은 오히려 증가되어 소득분배가 많이 악화되었다. 이에 정부는 저소득층 최저생계보호 등 재정지출정책과 함께 조세정책에 있어서도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저소득층의 세부담을 경감시켜주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 방안 중의 하나로 봉급생활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여 이미 실시하고 있으며, 1999년 세제개편안에도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의 부활이라고 할 수 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는 금융실명제와 함께 도입되어 1996년과 1997년에 실시되었으나

1997년 말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국회는 이 두 제도가 자금시장의 경색을 초래한 원인 중의 하나였다는 이유로 이 제도들을 유보하였다. 그런데 최근 금융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고, 소득분배의 악화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자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를 위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를 부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었으며, 정부와 여당은 이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기업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며, 금융시장의 불안요소도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다는 판단하에 부활 시기는 2001년으로 결정하였다. 2001년부터 실시될 안을 금년도 정기국회에 상정하는 이유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부활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의 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2001년부터 실시하게 될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내용을 보면 말 그대로 '부활'로서 유보되기 이전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연간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합과세 대상이 되며, 이자·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종전과 같이 15%로 낮아진다. 다만 경과규정으로서는

〈표 1〉 소득세제 개편안

	현행 제도	개편방안
금융소득 종합과세	- 이자·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 22%	- 금융소득 종합과세 2001년부터 실시 - 이자·배당 원천징수세율 2000년 20%, 2001년 15%
세금우대저축 장비	- 10% 저율과세 저축상품 10종 - 2000년 가입분까지만 세금우대 적용	- 2000년 이후 총액한도 관리(주택청약저축 제외) - 대상: 1년 이상 저축 - 총액한도 · 1인당 4,000만원 · 노인, 장애인: 6,000만원 · 미성년자: 1,500만원
배당세액공제제도 개선	- 실제 법인세 부담액 공제 -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은 법인세 감면 소득에 대해서도 배당세액공제 허용	- 법인세율 16%를 기준으로 배당세액공제 -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은 소득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양도소득세 과세제도 보완	- 정부가 세액결정 - 세액결정 기준 · 원칙: 기준시가 · 예외: 실거래 가액(투자거래 등) 또는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건물) -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 미달신고 및 미달납부세액의 10% - 비거주자가 비상장 국내기업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 납세자가 과세신고 - 고급주택 및 골프회원권은 실거래가액에 의해 세액결정 - 상업용 건물, 단독주택은 기준시가에 의해 세액산정 - 신고불성실 가산세: 미달신고 세액의 20% - 납부불성실 가산세: 미달납부 경과일수에 대한 이자상당액(1일 0.05%, 연간 18.25%) - 나스닥 등 외국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국내기업 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 면제

2000년에는 현재 22%인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20%로 인하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실시와 함께 정부가 소득세의 재분배 기능 강화를 위해 중점을 둔 분야가 양도소득세의 강화이다. 양도소득세를 정부가 세액을 결정하는 제도에서 신고납부제도로 전환하면서 고가 자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양도소득세 강화는 과표현실화를 제고를 통해서 이

루어지는데, 개편안에 의하면 현재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표준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고급주택과 골프회원권의 경우 실거래가액에 의해 과표가 결정된다. 고급주택은 전용면적 50평 이상이며 양도가액이 6억원을 넘는 아파트와 건평 80평 또는 대지 150평 이상이며 양도가액이 6억원을 넘는 단독주택을 의미한다. 국세청 기준시가가 실거래 가액의 70% 수준인 것에 비추어 볼 때 이들 고가 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세부

**개정안에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를
부합하고 양도소득세를
정부가 세액을 결정하는 제도에서
신고납부제도로 전환하면서 고가 자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담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현재 과세가표준액에 의해 평가되는 상업용 건물과 단독주택도 기준시가에 의해 평가하도록 하였다. 과세가표준액의 과표현실화율은 평균 30% 수준이다. 양도소득세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두 배로 강화된다.

이상의 개편안 이외에 정부는 조세제도의 간소화 및 합리화를 목표로 세금우대저축 정비방안, 배당세액공제 제도 정비방안 등 몇 가지 개편안을 제시하였다.

10%의 저율로 과세되는 세금우대 저축은 총 10가지로 각각 가입자격과 한도가 별도로 정해져 있어 제도가 매우 복잡하다. 따라서 저소득층이 그 혜택을 완전히 누리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적용시한도 2000년 가입분까지로 제한되어 있다. 정부안에 의하면 이와 같이 복잡한 세금우대저축이 2000년 이후 통합되어 총액한도관리제도로 전환된다. 즉, 어느 저축상품이든지 1인당 저축 총액이 4,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세금우대가 적용되며, 노인과 장애인은 6,000만원, 미성년자는 1,500만원의 한도가 적용된다. 단, 세금우대는 1

년 이상의 저축상품에만 적용된다.

배당세액공제제도는 동일한 소득에 대한 배당액에 대해 법인단계와 주주단계에서 모두 과세되는 경제적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주주단계에서 과세할 때 주주가 배분받은 배당액에 대해 법인이 납부한 법인세액을 주주의 배당세액에서 공제하여 주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종합과세 대상자에 한하여 법인세 실제 납부세액을 공제하여 주고 있는데, 이번 개편안에 의하면 법인세율이 최저세율인 16%라는 가정하에서 공제액을 산출하게 된다. 이는 소액주주들은 분리과세되어 배당세액공제가 허용되지 않는 데 비해 대주주들은 종합과세 대상으로서 공제가 허용되므로 소액주주들에 비해 대주주들의 배당세액이 적어지게 되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감면 등으로 인하여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 소득의 경우에도 현재는 16%의 세율이 적용된 것으로 간주하여 배당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는데, 개편안에서는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는 배당세액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그 외에 양도소득세 납부불성실에 대해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미납부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미달납부세액에 대한 이자상당액(1일 0.05%, 연간 18.5%)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비거주자가 비상장 국내기업 주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나스닥 등 외국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국내기업 주식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기로 하였다. 이는 국내 기업에

〈표 2〉 기업과세제도 개편안

	현행 제도	개편방안
수도권 공장, 본사의 지방이전 촉진	-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3년 거치 3년 분할 납부	- 5년간 법인세 100%, 그 후 5년간 50% 감면, 특별부가세 50% 감면조항 신설
지주회사에 대한 조세지원	- 지주회사에 대한 자회사의 배당금 익금산입 - 현물출자하여 법인 설립시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 비상장 법인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취득세 과세	- 자회사 배당액의 60~90% 익금불산입 - 계열회사가 공동 현물출자로 지주회사 설립시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 지주회사의 경우 적용 배제
현물출자를 통한 신설법인 설립에 대한 과세제도 보완	- 법인세 과세이연 등 조세지원 - 적용시한: 1999. 12. 31	- 적용시한을 폐지하고 대상법인 범위를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한정
법정관리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과세특례	- 차입금 원금과 상환금액의 차액 면제시 면제액을 금융기관 손금산입, 채무면제받은 법인 익금불산입 - 적용시한 1999. 12. 31	-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면제액을 금융기관 손금산입, 채무면제받은 법인 3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 적용시한 폐지
위탁업체의 주주가 수탁업체에게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의 과세특례	<신설>	- 수탁업체의 자산수증익을 3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 적용시한 2000. 12. 31 - 정리법인이 중소기업에 증여시 적용
자산유동화 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 특별부가세 50% 감면, 취득세 등록세 면제 등	- 배당가능 이익의 90% 이상 배당시 배당액 소득공제 조항 신설 - 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도 유동화 전문회사에 준하여 지원
기업구조조정조합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
금융기관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기간 연장	- 특례 대상: 금융감독규정에 의하여 적합한 대손충당금 - 적용시한: 1999. 12. 31	- 특례 적용시한 1년간 연장
법인세 원천징수세율 인하	-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22%	- 세율 20%로 인하
기술개발 준비금제도 개선	- 손금산입한도: 매출액의 3% - 단, 자본재산업, 기술집약산업의 경우 매출액의 5%	- 매출액의 3%로 통일
투자촉진을 위한 지원의 일몰시한 연장	- 중고설비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10%) 및 과잉생산 설비 폐기에 대한 세액공제(3%) 1999년 말 종료	- 2000. 6. 30까지 6개월 연장

대한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2. 법인세제

금년도 기업과세제도 개편안은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지원과 기업 구조조정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조세지원은 수도권 기능의 지방분산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에 목표를 둔 것으로 수도권내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사 또는 공장을 5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사업을 영위한 법인으로서 본사 또는 공장을 2002년 이전에 수도권 생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 적용된다. 이전 후 5년간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며, 그후 5년간 50%가 감면되고,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가 50% 감면된다. 단,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는 현행과 같이 3년 거치 3년 분할 과세된다.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조세지원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지주회사 및 자산유동화회사에 대한 조세지원이다. 배당이 주수입인 지주회사의 경우 배당소득의 60%(자회사 지분소유비율 80% 이하) 또는 90%(자회사 지분소유비율 80% 초과)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중과세를 완화하며, 지주회사가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 또한 계열회사가 공동으로 현물을 출자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이 현물 출자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금년도 기업과세제도 개편안은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지원과
기업 구조조정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조세지원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지주회사 및
자산유동화회사에 대한 조세지원이다.**

로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를 이연한다.

유동화 전문회사의 경우 단순한 도관(conduit)이라는 점을 인정하여 배당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할 경우 배당액의 소득공제를 허용하여 경제적 이중과세를 배제하고, 1998년 12월에 신설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저당채권 유동화 회사의 경우에도 유동화 전문회사와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된다.

그 외에 그 동안 기업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몇 가지 조세상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안들이 개편안에 포함되었으며, 기업구조조정 조합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과 같은 수준의 조세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기술개발준비금은 현재 자본재 산업 및 기술집약산업의 경우 매출액의 5%, 기타 산업의 경우 매출액의 3%로 되어 있는데 이를 일괄적으로 3%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이는 산업별 차등이 WTO 규정에 위배되기 때문에 취한 조치이다. 중고설비 투자에 대한 투자액의 10%에 해당하는 투자세액공제와 과잉설비 폐기에 대한 자산가액

의 3%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시한도 금년 말에서 2000년 6월 말로 6개월 연장하였다.

II. 평가 및 향후 보완방향

이상에서 살펴본 소득과세 개편방안은 크게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조세지원 보완, 기타 조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개편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최근에 소득분배가 크게 악화되었다는 점, 아직 기업구조조정이 진행중이며 이를 조속히 완료하여 건설한 경제성장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점 등 우리 경제의 가장 중요한 현안 이슈들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정책 방향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그 수단에 있어서도 대체로 다른 부작용을 크게 유발하지 않으며, 장기적인 조세체계 발전과정에 부합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경우 한국조세연구원을 비롯하여 관련 학계와 민간단체에서 조속한 부활을 주장하던 것으로 늦게나마 재실시를 결정한 것은 다행한 일이다. 부분적으로나마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과표현실화율을 제고한 것도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실제소득에 대해 과세한다는 관점에서 아직 양도자산 가치 평가액이 실거래 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자산을 장기적으로 모두 실거래 가액으로 가치를 평가하는 방향으로 전환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단지, 이행과정에서 현재 고급주택을 보유한 자가 그 재산을 양도할 때 양도가액을 실거래 가액으로 평가하

면 구입가격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등 기술적인 문제에 주의를 기울여 부당하게 과도한 세부담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세금우대저축의 정비 역시 조세체계의 간소화 및 조세특례의 실효성 제고라는 관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판단된다.

지주회사의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와 유동화 전문회사 및 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의 배당액 소득공제제도는 이들 회사를 통한 투자자의 세부담 경감을 통해서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데 일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금년도 소득과세제도 개편방안은 대체로 주어진 경제적 여건하에서 제시된 목표들을 달성하는 수단으로서 타당성을 갖고 있는 정책제안들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이 개편안에 제시된 정책수단들만 가지고 주어진 정책목표들을 달성하는 데 충분한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의 부활 외에도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의 폐지, 신용카드 사용의 촉진, 중·저소득층이 많이 사용하는 재화에 대한 특별소비세 폐지, 상속·증여세제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이 모든 방안들이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방안임을 부인할 수 없다.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세율체계의 누진성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발생된 소득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정한 소득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조세상의 이득을 얻기 위한 자원배분의 왜곡이 발생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경제의 효율성을 저해한다.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에 비해 고소득층이 복잡한 조세체계의 허점을 잘 이용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으므로 특정한 소득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소득재분배의 관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그 특정소득이 주로 고소득층에 집중된 소득일 경우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부가가치세제의 개편, 상속·증여세제의 강화, 양도소득세의 과표현실화를 제고 등 금년도 세제개편안에 제시된 개편방안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 특히 고소득층의 소득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아직도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이 있는데 주식양도차익이 바로 그것이다. 주식양도차익이 포함되지 않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 또한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하지 않을 경우 상속·증여세제의 강화를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의 강화도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 현재의 금융시장 여건상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대상을 대폭 확대하기 어렵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재 대주주, 비상장주식 등에 국한되는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모든 주식거래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소득과세의 재분배 기능 강화를 위해 개선하여야 할 과제는 종합과세 대상의 확대이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세율체계의 누진성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발생된
소득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다. 종합과세가 실시된 1997년의 경우 130만명이 넘는 소득세 과세인원 중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에 의해 종합과세 대상이 된 납세자가 3만명 정도에 불과하였다. 소득재분배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판단은 판단하는 사람의 주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납세자의 2% 정도에 불과한 최고 소득자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만으로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크게 강화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종합과세대상을 대폭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단, 조세로 인한 자원배분의 왜곡을 최소화하고 고액자산가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종합과세 대상의 확대와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확대를 병행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또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경제적 이중과세 배제 문제이다. 기업의 배당에 대해서는 법인단계에서 법인세가 과세되고 주주단계에서 다시 배당소득세가 과세된다. 이와 같은 이중과세는 투자자의 자원배분을 왜곡시키므로 이를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를 유

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가 미국이다. 미국은 이중과세제도를 고수하면서 이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조세특례제도를 두고 있다. 파트너십, S 법인 등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고, 증권투자신탁회사·부동산투자신탁회사 등의 경우 배당액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하는 제도들이 이에 속한다. 금년도 세계개편안을 보면 우리나라도 배당세액공제와 관련하여 미국의 제도를 따라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개인의 배당세액공제를 다소 축소하는 내용과 작년에 도입된 투자신탁회사에 대한 법인단계 과세배제 조항, 금년의 개편안에 포함된 지주회사 및 자산유동화 전문회사에 대한 배당세액 이중과세 조정방안은 모두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이중과세를 배제하는 특례제도이다. 그러나 이중과세는 특정한 경우에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문제이므로 이 문제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든 주식투자자에게 해당되는 문제를 특정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특례제도로써 해결하려다 보면 또 다른 왜곡이 유발되고, 제도가 복잡해지며, 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하게 된다. 종합과세 대상 개인에게 실제 법인세액에 해당하는 만큼 배당세액공제를 허용하는 제도를 실시한지 몇 년만에 법인세율 16%를 기준으로 공제하는 과거의 제도로 환원하는 방안이 제도의 일관성을 상실한 대표적인 예이다. 이와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모든 주식 배당에 대해 실제 법인세 납부세액 공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

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제도가 시행될 경우 미국과 같은 다양한 특례제도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언급하자면 이번 세계개편안에 포함된 것은 아니지만 지난 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어 시행되고 있는 봉급생활자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는 현재 납세인원 중 60%를 넘는 과세미달자의 비중을 더욱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국민개세주의라는 입장에서 볼 때 국민의 절반 이상이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급박한 현실하에서 부득이 봉급생활자의 소득공제를 확대할 수밖에 없었다고 할지라도 장기적으로 과세미달자를 축소하여 납세인원비율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소비과세제도

成明宰 /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1. 기본방향

금년도 소비세제 개편안은 부가가치세의 정상과세 기반을 확립하고 경제위기 이후 악화된 분배구조를 개선하며, 외부불경제 축소를 위한 개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부가가치세의 특례과세제도가 고소득 자영업자의 조세회피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중산·서민층이 주로 소비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특별소비세를 폐지하며, WTO 주세판정의 이행과 음주에 따른 외부불경제 축소를 위한 주세율체계 개편이 핵심적인 내용이다.

부가가치세 특례과세제도는 영세사업자에 대한 납세의 편의를 증진시켜 준다는 본래의 취지와 달리 마치 세경감 장치로 잘못 인식되어 과표의 은폐·축소 등을 통한 탈세·절세가 만연하면서 특례과세제도에 대한 대폭적인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금번 세제개편안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과세특례제도와 간이과세제도로 대표되는 특례과세제도를 원천적으로 대폭 개편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1997년 외환 및 금융위기로 비롯된 경제위기로

인해 대량실업과 임금삭감, 부도 및 도산이 급증하는 등 경제전반에 걸친 분배구조가 급속히 악화되었다. 실업이 대폭 증가하면서 중산층 및 서민의 소득수준이 급격히 하락한 반면에, 경제위기 동안 이자율이 급속히 상승하면서 고액금융자산가의 소득은 오히려 확대되는 등 분배구조가 크게 악화되었다.

이에 따라 지난 임시국회에서는 분배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근로소득공제 확대 및 신용카드 소득공제,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공제 등의 확대를 통한 근로소득세 경감조치가 단행되어 중산층 및 서민층의 세부담 경감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근로소득세의 경우 면세자가 절반 정도에 이르는 상황을 감안해 볼 때 근로소득세 면세자에게는 세경감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예상되었다. 따라서 금번 개편안에서는 이에 보완적으로 저소득층까지 부담하고 있는 생활필수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경감을 통해 중산층 및 서민의 세부담을 경감시키는 세제개편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주세의 경우에는 지난 2월 WTO 주세분쟁이 종결되면서 소주와 위스키에 대한 주세율을 일치시

출액 5억원 미만자에서 모든 개인사업자로 확대하였다.

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복권제도 도입

신용카드 사용 확대를 유도하여 자영업자의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기 위해 신용카드로 결제한 매출전표를 대상으로 복권제도를 도입하여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현행	개정안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상금 지급 대상 - 국내에서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 매출전표(직불카드영수증 포함)를 교부받은 자 - 다음의 것은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대금업(카드깡) 및 위장 가맹점 거래분 ·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카드 사용분 ○ 소멸시효 -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그 지급일로부터 3개월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당해 보상금은 국가에 귀속) ○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별법」의 적용 배제 ○ 지급시기, 보상금액, 지급방법등 구체적인 사항은 국세청장에게 위임

다. 납세편의를 위한 제도 개선

1) 예정고지 대상의 확대

연4회 부가가치세 신고로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 및 징세기관의 행정업무량이 과다하고, 국세청의 기능별 조직전환에 의한 세원관리부서 종사직원의 감소에 따라 관련 업무의 축소가 필요하여 2000년 1월 1일 이후 최초 결정·징수분부터 예

정고지 대상을 확대하도록 하였다.

2) 공급시기 이후 발행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허용

공급시기 이후 교부된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동일 과세기간내에 교부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하도록 하여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다만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확립차원에서 지연교부 및 수취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하도록 하였다.

3) 연체이자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세금계산서 교부 및 소득세 원천징수 등에 따른 불편 해소 차원에서 200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연체이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4)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 공제요건 완화

사업개시 전에 등록한 사업자의 등록전 매입세액에 대해서도 200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사업자등록일 이전 20일 이내의 매입세액에 대해 공제를 허용해줄도록 하였다.

5) 상속세 등 물납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물납에 대하여 국가로부터의 부가세 거래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납세자의 불편을 초래하므로 2000년 1월 1일 이후 물납분부터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3. 특별소비세 품목 조정

가. 과세대상 조정

1)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품목 조정

중산·서민층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식음료품, 가전제품, 생활용품, 대중스포츠 및 관련물품 등 소비가 대중화된 물품에 대한 특소세를 2000년 1월 1일부터 폐지하도록 하였다. 다만 고가 또는 에너지 다소비 품목의 경우에는 계속 과세하도록 하였다.

2) 경륜장 신규과세

최근 경륜인구가 연 200만명 수준으로 성장 단계에 있고 경마장과의 과세 형평 등을 위해 신규로 2000년 1월 1일부터 1인 1회 경륜장 입장에 대해 200원씩 과세하도록 하였다.

4. 주세제도 개선

가. 주세율 조정

WTO 주세분쟁에 따른 증류주의 세율을 일치시키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세율개편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나. 주류행정 관련 규제완화

1) 주류의 신규 제조면허 수급제한 폐지

주류제조자간 경쟁 촉진을 통한 다양한 주류개발 및 주류산업 발전을 위하여 주류(제조)분야의 자유로운 진입을 허용하기 위해 2000년 1월 1일부터 주류 제조시설기준만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중산·서민층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식음료품, 가전제품, 생활용품, 대중스포츠 및
관련물품 등 소비가 대중화된 물품에 대한
특소세를 2000년 1월 1일부터
폐지하도록 하였다.

제조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2) 주류 판매면허 제한사유 객관화

주류「판매」면허 제한사유를 객관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00년 1월 1일 이후 판매면허 신청분부터 무자료 거래가 성행하는 지역, 판매업면허가 밀집된 지역에 대하여는 판매업면허를 제한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였다.

3) 주류판매장 이전시 허가제를 사전신고제로 전환

사업자의 자율적 판단에 의해 판매장 입지 선정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2000년 1월 1일 판매장 이전 신고분부터 허가제를 사전신고제로 전환하도록 하였다.

4) 주조사 의무고용제도 폐지

규제완화 등을 통해 주류제조업계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00년 1월 1일부터 주조사 의무고용제도를 폐지하도록 하였다.

5) 주세 납부기한 연장

주류제조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 2000년부터 익월 20일까지에서 익월 말일로 연장하며, 2001년부터는 익익월 말일로 연장하도록 하였다.

6) 주류업단체의 설립·가입제한 폐지

2000년 1월 1일 이후 설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적용 주류업단체의 설립 및 가입 제한을 철폐하여 자유화하도록 하였다.

7) 세액공제·환급대상인 환입주류 범위 확대

주류제조업계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2000년 1월 1일 이후 환입분부터 변질·품질불량,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주류의 유통과정중 도난, 파손 또는 자연재해 등을 추가하여 세액공제·환급대상인 환입주류 범위 확대하도록 하였다.

8) 희석식소주 제조방법 다양화

증류식소주 또는 곡물주정을 이용한 다양한 희석식소주 개발을 통한 소비자의 선택폭을 확대하기 위해 2000년 1월 1일 이후 출고분부터 증류식소주의 첨가비율을 50%까지로 확대하도록 하였다.

다. 무자료 거래 및 신고 불성실에 대한 과세강화

1) 주류 제조·판매업자의 무자료거래에 따른 처벌 강화

주류에 대한 납세관리 강화를 위해 2000년 1월 1일 이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금액 발생분부터 교부위반금액이 20% 이상인 경우에서 5~10%로 주류 제조·판매업자의 무자료거래에 따른 처벌기준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2) 가산세율 조정

성실납부 유도 및 조기 납부자와의 과세형평도 모하기 위해 2000년 1월 1일 이후 출고·신고분부터 가산세율을 현재의 10%에서 1일당

5/10,000(연 18.25%)로 조정하도록 하였다.

III. 평가 및 결론

1.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의 개편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특례과세제도의 정비이다. 특례과세제도는 소규모 영세사업자에 대한 납세편의를 위해 도입·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나 상당수의 특례과세자들은 이 제도를 세경감 제도로 인식하는 등 과표의 은폐·축소 등을 통해 세부담을 회피함으로써 탈세의 온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따라 그동안 각계에서 특례과세의 축소·폐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었으며 금번에 세법개정 정부안으로 확정됨으로써 근거과세 기반 확립을 통한 부가가치세 과세의 정상화에 일조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부가가치세 근거과세의 핵심적인 요소는 과세근거자료가 활성화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신용카드 매출전표 복권제도 등을 도입하도록 한 것은 과세자료가 생성되는 신용카드 거래의 비중을 확대하는 데 일조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신용카드 거래액에 대해 근로소득세의 소득공제 항목으로 추가한 것과 함께 복권제도를 도입한 것은 근거과세 기반 확립에 중요한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복권제도 시행상 상당한 정도의 행정력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은 단점으로 지적된다.

납세편의 도모를 목적으로 예정고지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징세기관의 과중한 업무를 경감하고 국세청 조직 및 기능 조정을 통해 과표양성화를 위한 인력을 보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타 공급시기 이후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그동안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해주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는데 금번 개편안에서 문제점을 시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매입세액 공제의 요건으로서 동일 과세기간내에 교부된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다소 어렵다. 물론 그러한 것은 징세비용이 지나치게 크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좀더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 특별소비세

특별소비세의 개편안은 중산·서민층 보호를 위해 대중물품 및 생활필수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폐지가 핵심이다. 1977년 7월 특별소비세가 도입될 당시에는 현재의 특소세 과세대상 대부분이 사치품이거나 보급률이 상당히 낮은 품목, 또는 거의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이 많아 이들 품목에 대해 특별소비세를 과세함으로써 세부담의 형평성 제고와 수입대체 등을 통한 국제수지 개선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경제가 성장하면서 특별소비세를 통한 국제수지 개선효과가 상대적으로 미미해지고, 소득이

**납세편의 도모를 목적으로
예정고지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징세기관의 과중한 업무를 경감하고
국세청 조직 및 기능 조정을 통해
과표양성화를 위한 인력을 보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증가하고 소비패턴이 고도화되면서 TV·냉장고 등이 대중화되면서 사치품에 대한 특소세 과세를 통한 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효과가 퇴색하였다.

이에 따라 각계에서 식음료품과 가전제품 가운데 생활필수품화된 품목에 대해 특별소비세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는데, 비록 다소 때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다행스럽게도 금번 개편에서는 이러한 의견이 대폭 수용되었다. 따라서 대다수의 식음료품과 일정 금액 이하의 가전제품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폐지됨으로써 저소득층에 까지 세경감 혜택이 골고루 배분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특별소비세 폐지에 따른 세경감 효과가 세부담의 형평 제고 및 분배구조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세경감분이 얼마만큼 가격에 반영되어 소비자 부담이 경감되느냐에 달려 있다.

가전제품 가운데 에너지 다소비 품목과 고가제품은 비과세에서 제외되었다. 전자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소비억제를 통한 에너지 절약을 도모하기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상당수의 가전제품은 비록 동일 품목이라고 하더라도 가격에 따라 소비자가 구

분되어 있다. 즉, 중저가 제품의 경우에는 거의 모든 계층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나 고가제품의 경우에는 고소득층에서 주로 소비되고 있다. TV를 일례로 들면 수십만원대의 일반 TV는 모든 계층이 소비하지만 수백만원대의 TV는 고소득층이 대부분 소비한다. 따라서 같은 TV라고 하더라도 가격대에 따라 소비자층이 구분된다. 그러므로 중저가 제품에 대해 특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세부담 분포가 역진적으로 나타날 것이지만 고가제품의 경우에는 세부담이 누진적이다.

금번 특별소비세 개편안에서 중저가 제품에 대해서는 특별소비세를 폐지하는 대신 고가제품에 대해서는 특별소비세를 지속적으로 과세한다는 점에서 중저소득층의 세부담 경감에 초점을 맞추고 담세능력이 높은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특별소비세를 지속적으로 과세한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아 숙단하기는 어려우나, 일정 가격수준을 기준으로 중저가 제품과 고가제품간에 특별소비세 과세를 차등화할 경우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확일적으로 과세대상·비과세대상을 구분하기 보다는 초과금액 과세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자원배분의 왜곡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경료장 과세문제 및 선외내연기관 비과세 문제 등 기타의 특별소비세 개편은 비중은 크지 않으나 과세의 형평 및 특별소비세 과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음주와 관련한 외부불경제가
매우 심각해지고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의 주세율 체계는 소비억제적
조세로서 외부불경제 축소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

3. 주세

주세의 경우에는 WTO 주세판정 이행 및 무분별한 주류소비 억제를 위한 주세율 체계 개편이 핵심적인 내용이다. 그러나 증류주에 대한 주세율의 상향평준화에 대한 국민들의 조세저항이 매우 커 개편안 마련에 진통을 겪고 있으며 아직 구체적인 개편안이 확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주세율 체계 개편방안에 대해서는 평가하기 곤란하지만 바람직한 주세율 체계 개편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우선 대외적 측면에서 볼 때 WTO 주세판정에 따른 주세율 체계 개편의 범위는 증류주에 국한되며 개편방향은 증류주내의 모든 주류에 대한 주세율 및 교육세율을 일치시키는 것이다. 종가세와 종량세간의 선택 문제나 세율수준과 관련하여서는 GATT의 내국민대우 및 비차별적 시장접근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우리가 자율적으로 개편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대내적인 주세율 체계의 개편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자. 우리나라의 주세율 체계는

세부담의 형평성에 초점을 맞추어 대체로 고급·고가주에 고세율, 저급·저가주에 저세율을 적용하는 체계로 되어 있으나, 맥주 등 일부 주종의 경우에는 고도화된 소비패턴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하지 않게 되어 있다.


음주와 관련한 외부불경제가 매우 심각해지고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의 주세율 체계는 소비억제적 조세로서 외부불경제 축소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 즉, 고알콜주에 고세율, 저알콜주에 저세율 체계에서 벗어나 있으며 소주 등 일부 고알콜주에 대해서는 세율도 낮아 과세의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경우도 있다. 최근의 한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14조원에 육박하는 반면 소비자가 직접 부담하는 금전적 비용은 4조원에 불과하여 나머지 10조원에 육박하는 간접비용의 상당 부분이 일반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청소년 음주문제도 매우 심각해지고 있는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음주문화 개선의 필요성이 크다.

국제적으로도 우리나라의 증류주 소비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러시아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일례로 1995년 현재 알콜도수 100%로 환산한 15세 이상 국민 1인당 연간 증류주 소비량은 5.9리터로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의 5.8리터보다 오히려 다소 더 높다.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주세율 체계는 고알콜주에 고세율을 적용하여 음주에 따른 외부불경제 축소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증류주에 대한 주세율을 상향

평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밖에 맥주의 경우에는 형평성이나 외부불경제 측면에서 모두 위스키 등의 증류주에 비해 높아야 할 당위성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맥주에 대한 주세율은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면서 점진적으로 세율을 인하하여 장기적으로는 최소한 증류주 수준 또는 그 이하의 수준으로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의 주세 관련 개편방안은 대부분 불필요한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인 만큼 대체로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주류 판매면허 제한사유의 객관화의 경우에는 개편방안이 여전히 애매모호한 용어로 정의된 부분이 있어 좀더 구체화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세납기의 연장은 주세 납세자의 금융비용을 덜어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월단위로 징수하는 개별소비세의 경우에는 익월말까지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볼 때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만약 그러한 방향으로 개편한다면 특별소비세의 경우에도 그러한 방향에서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지 않을까? 

상속 · 증여세제

韓 相 國 /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I. 서론

최근의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비실명 장기채권발행, 금융소득종합과세유보 등의 조치로 인해 적정한 세부담 없는 부의 이전, 누진적 세부담의 완화 등 부정적 효과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빈부격차의 심화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

정책당국은 그 동안 상속·증여세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변칙적인 상속·증여를 방지하기 위하여 과세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였다. 그러나 상속세의 납세인원이 연평균 사망자의 1% 내외에 불과하고(1995년 기준 과세자 비율 : 일본 5.5%, 미국 3.6%, 영국 3.3%), 세수도 국세의 1% 내외에 불과한 실정이다(1995년 기준 세수 비중 : 일본 4.7%, 프랑스 1.8%). 따라서 현행 상속·증여세제는 부의 재분배 기능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고 또한 그 기능이 주요 국가에 비해 미약함을 알 수 있다.

이에 정책당국은 상속·증여세제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새로운 금융기법을 이용한 교묘한 조세회피 행위, 재별이 세부담을 적게 하면서 경영권을 대물림하는 행위 및 공익법인을 이용한 변칙적인 상속·증여 등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개정안

을 발표한 바 있다. 본고에서는 1999년 정기국회에 제출한 상속·증여세제 개편(안)의 주요내용을 평가하고자 한다.

II. 개정안에 대한 평가

1. 변칙 상속·증여에 대한 증여의제 범위 확대

개정안에서는 자녀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1년 내에 무상 또는 저율로 대부받는 경우를 증여의제에 추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로 하였는데, 사실의 추적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즉 고액자산가가 대상이면 그 숫자가 많지 않아서 추적 및 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중산층이 동 대상에 포함된다면 그 숫자가 많아서 현단계에서는 추적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는 선연적 의미를 가지는 조항이 될 가능성이 크다.

2. 결손법인과외 거래유형 확대

현행법에 의하면, 자녀 등이 주주로 있는 2년

이상의 결손법인 및 휴·폐업중인 법인에 부모 등이 재산의 증여, 채무의 면제·변제·인수, 재산의 저가양도, 고가매입 등의 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준 경우 자녀 등에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결손법인을 통하여 금전·부동산 또는 용역 등의 무상 또는 저가 대여·제공 등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결손법인과외의 거래유형에 추가하였다. 이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된다.

3. 금융자료 일괄조회 대상자 범위 확대

금융자료 일괄조회 대상자의 범위를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 금액과 나이 제한 없이 모두 조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단, 이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탈루혐의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할 것이다.

4. 상속개시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강화

현행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의 사용처 소명대상기간이 현행 1년 이내로 제한되어 있음에 따라 사전상속에 악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 기간을 1~2년 이내로 연장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금융자산 일괄조회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조치도 함께 취해지고 있어서 이와 같은 연장조치의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고액자산가의 상속·증여세 부담을 높이고 부를 재분배하기 위하여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을 30억원 초과로 하향 조정하고 최고세율을 50%로 인상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방법의 개선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이 평가기준일 이전 3개월간 증가 평균액에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2개월(총 4개월)의 증가평균액으로 개정된다. 이는 상장주식의 경우 가격 등락에 따른 평가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는 상속재산의 과거가치와 미래수익가치를 함께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엄밀히 볼 때 상속이란 과거의 재산을 청산 및 정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평가기준일 이후 2개월간의 증가평균액이란 미래수익가치이므로 이 가치도 함께 평가해서 과세할 수 있을지는 좀더 연구해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6. 건물의 평가방법 개선

현행 건물의 평가방법인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약 30%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상속 또는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시가에 못 미치는 지방세법상의 시가표

준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국세청 기준시가가 적용되는 부동산과 비교하여 형평의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금번에 건물의 평가방법을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7. 과세구간 조정 및 최고세율 인상

고액자산가의 상속·증여세 부담을 높이고 부를 재분배하기 위하여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을 30억원 초과로 하향 조정하고 최고세율을 50%로 인상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8. 상속·증여세 과세시효 연장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상속·증여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상속·증여세 과세시효를 평생으로 연장한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비록 전산화가 많이 이루어져 있다지만 과연 행정적으로 이를 관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다른 세목의 과세시효와의 균형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9. 대주주의 주식거래에 대한 양도세 과세 강화

주식양도차익이 과세되는 대주주의 과세범위를 확대하고, 적용세율도 20~40%의 누진세율로 개정하였다. 이는 현실론에 바탕을 둔 개정안이다. 그러나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선진국에서도 자본시장이 미발달된 상황에서 소득세를 저율 분리과세하는 것에서 출발해서, 점차 자본시장이 성

숙되면서 세율을 상향조정하다가 최근에 들어서 종합과세하고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즉 우리나라도 개정안과 같은 복잡한 형태의 세제를 유지하기보다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 저율 분리과세를 고려하는 것이 장래를 위해서는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10. 비상장주식의 상장시세차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상장에 따른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상장 전에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에 현행 세제는 증여시점에서 과세하고 상장시세차익에는 과세할 수 없어 변칙적인 상속·증여의 수단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변칙적인 상속·증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첫째, 비상장주식의 증여시에 동 주식을 정확히 평가하거나 둘째, 증여 및 상장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발생한 시세차익에 대해서 적절한 수준에서 과세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비상장주식의 증여시에 동 주식을 정확히 평가하기에는 미래가치의 정확한 반영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당초 증여가액을 상장후 실제 주식가액으로 수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였다. 이는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의 개념을 원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개정안에서는 과세시기를 소급하여 과세하고 있는데 과연 소급과세가 그 타당성을 인정받

을 수 있을지가 해결해야 할 또 하나의 과제라고 하겠다. 비록 증여시점에 정확히 평가하기가 어려우므로 정확한 평가시점을 상장 후 3개월이 되는 시점으로 해서 정산한다는 정산의 개념을 도입해서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소급과세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또 하나의 문제로서 상장 전 3년 이내에 증여한 비상장주식이 과세대상인데, 예를 들어서 상장 전 3년 반 또는 상장 전 4년, 5년 이내에 증여한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결국 비상장주식을 상장하는 과정을 이용한 변칙적인 상속·증여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장주식의 매각차익에 대한 과세가 해결 방법이 될 것이며, 자본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감안해서 선진국의 예에서 보는 것처럼 처음에는 저율 분리과세하고 여건이 성숙하면 종합과세한다면 이와 같은 문제점이 해결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11. 경영권이 포함된 주식의 합중률 인상

경영권이 포함된 최대주주의 주식이 상속·증여될 경우, 최대주주의 지분율 50%를 기준으로 20% 또는 30%의 합중률을 적용하도록 하는 개정안은 주식양도를 통한 경영권 이전에 대한 과세가 미흡하다는 측면에서는 타당성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50% 내외인 상장법인인 거의 없는 상황이므로, 이는 주로 비상장법인에게만 적용될 것이다. 따라서 상장법인에 대해서는 최대주주의 지분율을 하향 조정하는 조

중장기적으로 자본시장이 어느 정도 성숙하면 실현된 자본이득을 저율분리 과세하고, 단계적으로 종합과세한다면 변칙적인 상속·증여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2. 공익법인의 계열사 지배방지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회사 지배방지를 위하여 계열사 주식소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출연자 등의 이사 취임 등을 제한하도록 한 것은 타당한 조치이다. 운용소득의 공익목적 사용 의무비율을 70%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안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III. 결론

현행 상속세의 납세인원이 연평균 사망자의 1% 내외이고, 동 세수도 국세의 1% 내외에 불과해서 현행 상속·증여세제는 부의 재분배 기능이 미흡한 실정에 있음을 인식하고 있는 정책당국은 상속·증여세제가 실효성을 제고하고 변칙적인 상속·증여를 방지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보완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특히 정책당국은 금년의 세법개정안에서는 새

로운 금융기법을 이용한 교묘한 조세회피 행위, 재벌이 세부담을 적게 하면서 경영권을 대물림하는 행위 및 공익법인을 이용한 변칙적인 상속·증여 등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바 있으며, 그 성과가 조만간에 가시화되어서 부의 재분배 및 공평과세의 실현에 일조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일부 개정안은 행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 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고(금전 무상대부 등에 대한 증여세 과세, 과세시효의 연장 등), 비상장주식의 평가기준일 이후 2개월의 종가평균액을 평가대상에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미래 수익가치이므로 과연 평가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을지는 연구가 더 필요한 부분이다.

비상장주식의 상장에 따른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상장 전에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에 대한 과세문제는 결국 자본이득에 대해서 어떠한 형태로 언제 과세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중장기적으로 자본시장이 어느 정도 성숙하면 실현된 자본이득을 저율분리 과세하고, 단계적으로 종합과세한다면 변칙적인 상속·증여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관세제도

張 槿 鎭 /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I. 서론

WTO체제의 성립 이후 무역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경제의 교역구조는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선진국가에서는 산업의 지식화 및 서비스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가들의 경우에는 공업화에 주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1999년 11월 출범 예정인 WTO 신협상(New Round)에서는 농산물과 서비스 개방이 이루어질 것이 확실시되고 있으며 공산품의 추가적 관세인하도 협상분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는 지난 1984년 관세율 인하 예시제를 실시하여 가공단계별 균등 관세율 체제를 유지하고 시장기능에 의한 자원배분을 강화한 바 있다. 즉, 정부주도의 산업보호정책에서 탈피하여 가격기능에 따라 국내자원이 성장산업에 유입되고 내수산업이 체질개선을 이루도록 정부는 관세율정책을 개편하여 평균관세율을 8%로 인하하였고 균등관세율체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1999년 관세제도의 개편방안은 일단 이러한 현행 관세율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WTO 신협상에 대비하여 역관세현상 등 그 동안 균등관세율체제의 이행으로 야기된 문제점을 시정하고 정보기술협정(ITA) 등 국제협상에 따른 관세율 인하의 파급효과를 조정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이 밖에도 관세자유지역의 설치와 함께 관세행정제도의 개선안에 초점이 맞추어졌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II. 관세제도 개편방안의 내용

1. 관세율 개편

우리나라 농산물의 경우 예외없는 관세화로 단 순평균 관세율이 18.9%(가중평균 10.9%)에 달하고 이외에도 비관세장벽이 상당하다. 따라서 농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가공식품 산업에서 역관세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를 시정하려면 완제품의 관세율을 인상하거나 원자재 관세율을 낮추어야 한다.

이에 정부는 유제품과 과실채소 가공품 등 음식료품에 있어서는 완제품평균 관세율 8%보다 높은 18.3%(가중평균 12.8%)의 관세율을 부과

하고 일부 품목의 경우 할당관세 등 탄력관세를 적용하여 가공식품의 부담을 덜어 주고 있었다. 이번 관세율 개편안에서는 역관세 현상을 영구히

시정하기 위한 조치로서 완제품 관세율 인상보다는 수입에 의존하는 원자재 품목의 관세율을 인하한 것이 그 특색인데 우선 토마토펀치스트, 유채

〈표 1〉 1999년도 관세율 조정방안

(단위: %)

품 명	기본관세율		비 고
	현행	개정	
가공식품의 역관세 해소:			
- 토마토펀치스트	8(할당 5)	5	토마토펀치스트(8%)원료
- 조제토마토	50(할당 10)	8	토마토펀치스트(8%)원료
- 유채유	30(할당 10)	10	마아가린(8%)원료
- 해바라기씨유	25	10	마아가린(8%)원료
- 카제인산염	20(할당 8)	8	커피크리머(8%)원료
- 아몬드	30(할당 8)	8	아이스크림, 비스킷(8%)원료
- 캐슈넛	30	8	아이스크림, 비스킷(8%)원료
- 해즐넛	30	8	아이스크림, 비스킷(8%)원료
ITA 협정에 따른 관세율 조정:			
- 폴리실리콘	8	3	실리콘웨이퍼 원재료
- 블랙크마스크	8	3	포토마스크 원료
- 포토마스크	8	3	반도체 제조장비
- 금속도금기	8	3	반도체 제조장비
- 흑연도가니	8	3	반도체제조용 전기로의 원부자재
- 석영도가니	8	3	반도체제조용 전기로의 원부자재
- 여과기	8	3	반도체 제조장비
- 납불탐재기	8	3	반도체 제조장비
석유제품 관세율 인상:			
- 휘발유	5	8	자동차휘발유, 항공휘발유, 제트연료유
- 등유	5	8	제트연료유 포함
- 경유	5	8	
- 중유	5	8	방카A유, 방카B유, 방카C유
기타 세율불균형 조정:			
- 컴퓨터설계도	8	무세	수제 설계도(무세)와 세율균형
- 발전기용 디젤엔진	8(할당 4)	4	발전기세트(무세)와 역관세 완화
- 재생스테이플섬유	8(할당 4)	4	할당관세 장기적용
- 테입형 리드프레임	8	무세	일반 리드프레임(무세)과 세율균형

유 등 기존에 할당관세가 적용되었던 품목에 대하여 이를 기본관세화하였고 아몬드와 캐슈넛 등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수입제품의 관세율을 인하하였다(〈표 1〉 참조).

두 번째로 정부는 전기·전자기기 등 정보기술 협정으로 무세화되는 품목에 있어서 세율의 불균형을 고려하여 관세율을 조정하였다. 특히 폴리실리콘과 금속도금기 등 전용부품이나 국산화 가능성이 없는 8개 원·부자재 품목의 평균관세율을 8%에서 3%로 인하하여, 기본관세화 하였다.

세 번째로 정부는 재정관세를 목적으로 5%의 관세율이 적용중인 원유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석유제품 판매 개방에 따른 국내산업 보호를 위하여 휘발유와 등유 등의 관세율을 5%에서 8%로 인상하였는데 이러한 관세율 인상은 오염방지와 에너지소비 절약을 위한 특세 인상과 달리 국내 석유산업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컴퓨터 설계도와 재생 스테이플 섬유 등 신기술개발과 산업구조 변동으로 유사물품간에 세율이 불균형을 이루는 4개 품목에 관하여 세율을 인하하거나 무세화하여 2000년 1월 1일 수입 신고분부터 적용하도록 조치하였다.

2. 관세행정

무역이 자유화될수록 신속하고도 정확한 행정서비스의 제공이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 1999년 관세제도의 개편안에서는 지금까지 관세청 훈령으로 운영되었던 과세적부 심사제도

**이번 관세율 개편안에서는
역관세 연상을 영구히 시정하기 위한 조치로서
완제품 관세율 인상보다는 수입에 의존하는
원자재 품목의 관세율을
인하한 것이 특색이다.**

를 관세법 제20조의 2로 법제화하여 법적 보편성을 부여하였다. 구체적으로 세관장의 경정통지를 받은 자는 세관장 등에게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세관장은 3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행정심의회제도도 심사 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의 3단계에서 심사 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치면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제기본법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납세자의 권리구제절차를 제고하였다(관세법 제38조 내지 제43조의 5).

또한 징세비용을 절약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관세감면 대상품목 중 소액물품(10만원 이하)에 있어서는 기증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하여 재경부령이 정하는 소액물품으로 규정함으로써 선진국과 같이 명실상부한 소액면세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밖에도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목적으로 수입되는 물품은 제한적이고 특정적이므로 국내제작과 관련 없이 감면대상이 되도록 하였다(관세법 제28조의 5 및 제30조).

세 번째로 정부는 세관의 검사수수료 면제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지정장치장과 세관검사장 이외

에도 보세장치장(자신의 수입품을 장치하기 위한 자가 장치장은 제외)에서 물품검사를 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하였다(관세법 제141조). 현재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상기 이외의 장소에서 물품검사를 하는 경우 기본료 2,000원과 실비상당액을 수입업자가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보세장치장은 대부분 세관 부근에 위치하고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수수료 없이 세관의 업무를 제공하여 수입업체가 약 5억원에 상당한 비용을 절감하게 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형평성을 위하여 여행자 휴대품과 같이 이산화물에 있어서도 면세되지 않는 품목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납부세액의 20%에 상당한 가산세를 징수하도록 하였다(관세법 제137조 5항).

네 번째로 정부는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장치기간 경과물품의 매각업무를 세관장이 직접 하지 않고 외부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관세법 제124조에 마련하였다. 이 밖에도 규제완화와 경쟁제고 차원에서 정부는 일정 기간 관세행정에서 종사한 공무원에게 허용되었던 관세사 자격 자동부여제도(관세사법 제4조)를 2001년부터 폐지하는 대신 무역업체 등 민간분야를 포함한 일정 보직에서 근무한 경력자에게 시험과목 일부를 면제하도록 하여 일반 응시자의 전문자격 취득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전문분야 종사자의 전문성이 유지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주요 공항·항만 및 그 배후지를 동북아의 물류거점 기지로 육성하기 위

1999년 관세제도의 개편안에서는
지금까지 관세청 혼령으로 운영되었던
과세적부 심사제도를 관세법 제20조의 2로
법제화하여 법적 보편성을 부여하였다.

하여 관세자유지역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법률 제안이 있었다. 관세자유지역이란 한 국가의 관세선 외측에 위치한 구역으로 화물의 반출입과 중계 무역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법적·지리적 경제활동 특구로서 화물유치와 포장 및 재포장, 분류, 혼합과 단순가공 등 물류산업이 그 중심을 이룬다. 외국으로부터 관세자유지역에 반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등 수입제세의 부가가 배제되며 국내에서 동 지역으로 반입되는 물품 또한 수출로 간주, 관세 등의 간접세 환급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이 밖에도 정부는 관세자유지역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및 소득세 등을 감면하고 국유토지 등의 임대료도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III. 개편안 평가

우리나라 공산품의 평균관세율은 7.3%로서 주요 4개국(미국·일본·캐나다·EU)의 6.3%에 비하여 그다지 높지 않으며 품목간 세율도 균일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관세환급제도를 감안

하면 관세로 인한 실질적 세부담은 3.3%로 선진국 수준이다. 이러한 관세율체계는 금년 11월 출범 예정인 WTO 신협상에서 우리나라가 공산품 시장접근에 있어서 적극적 통상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협상기간 중에는 자율적인 관세율 개편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일각에서는 대폭적인 관세율 조정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관세율 인하가 협상의 한 수단으로 작용함을 감안할 때 1999년 관세율 개편안은 관세율 조정이 시급히 요구되는 최소한의 품목에 대하여 정책변경을 시도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 예로 관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세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입의존도가 높은 일부 원자재의 경우 무세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으나 이는 신협상에서 Nuisance Tariff(1~2%의 저세율)와 연계하여 관세율 조정을 시도해야 한다.

WTO협상을 감안한 관세율 개편의 또 다른 중요한 예는 정보기술협정(ITA) 관련 품목이다. 즉, ITA로 전자 등 첨단 산업의 관세율(HS 10단위 386개 품목)은 2004년까지 점진적으로 인하 내지는 무세화 되는데 이들 품목의 수입액은 1998년 당시 24조 6천억원으로 수입비중이 18.9%에 달하고 관련 산업도 전기·전자기기(75%)뿐만 아니라 인쇄·복제(62%), 화학(6%), 일반기계(7%) 그리고 정밀기기(24%)에 널리 걸쳐 있다. 따라서 ITA로 인한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내재화시키는 관세율 조정이 필요하지만 그러한 정책변화 또한 신협상과 연계하여

ITA로 인한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내재화시키는 관세율 조정이 필요하지만 그러한 정책변화는 신협상과 연계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더욱이 ITA 품목에 있어서 우리나라 수출규모는 38조 7천억원으로 수입규모보다 약 12조원이 많지만 이는 반도체와 컴퓨터 주변기기 등 전기·전자기기(무역특화지수 24%)에만 해당하며 인쇄·복제(-72%), 일반기계(-26%) 그리고 정밀기기(-75%)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현재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불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관세율 조정에 신중해야 한다. 결국 ITA 산업이 아니지만 동 품목을 부분품으로 사용하는 완제품(TV, VCR)의 실효보호율은 증강하지만 ITA 품목과 그 부분품은 역차별의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국내 생산이 당분간 불가능한 부품과 ITA 품목에만 소요되는 부분품의 관세율은 ITA 세율에 연계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1999년도 관세율 개편의 또 다른 특징은 음·식료품과 관련한 역차별 해소방안이다. 농수산물의 경우 고관세와 함께 각종 비관세장벽 그리고 수입과징금의 기금전환 등 중복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이다. 그 결과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음·식료품에서는 역차별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가 완제품 관세율 인상보다는 원재료 관세율 인하를 추진한 것은 자원배분적 측면에서 볼 때 매우 바람직한 정책변화로 판단된다. 즉, 국내생산이 미미한 원료 농산물에 관하여 불필요한 수입장벽을 쌓아둘 이유가 없으며 완제품 관세율을 인상하여 일부 비경쟁 산업을 지속적으로 보호하기에는 우리나라 경제가 소규모 경제로 이러한 정책이 무리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이 밖에도 재정확보를 위하여 원유에 부과되는 5% 관세율로 그 동안 실효보호율이 인화된 석유 산업에 대하여 관세율을 8%로 인상하였는데 원유에 대한 관세율은 OECD 평균(3%)에 비하여 다소 높으므로 이를 중기적으로 조정하고 석유류에 대한 관세인상도 한시적인 조치이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석유류 제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특별 소비세와 연계하여 환경오염과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종합적인 정책조율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행정절차의 개선과 관련하여 정부는 과세적부 심사제도를 법제화하고 행정심의제도도 간소화하였다. 그리고 검사수수료 면제 대상범위를 보세장 치장까지 확대하였고 매각업무를 외부기관에게 위탁하며 관세사 자격 자동부여제도를 폐지하였다. 신속하고도 투명한 행정서비스의 제공이 앞으로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기 조치 이외에도 정부는 꾸준히 행정절차의 간소화와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특히 관세사 자격취득과 관련하여 정부는 민간부문의 전문 인력이 실제 관세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음·식료품에서는
역차별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가
완제품 관세율 인상보다는 원재료 관세율
인하를 추진한 것은 자원배분적 측면에서
볼 때 매우 바람직한 정책변화로 판단된다.**

특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관세자유지역은 우리나라 물류산업이 경쟁력을 갖고 중개무역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제도인데 다만 동 제도가 탈루의 한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정부는 엄격한 감독·감시행정을 수행하여야 한다.

IV. 결론

우리나라는 소규모 경제이지만 과거 '자립형' 경제체제를 강조한 결과 전 품목에 걸쳐서 중간재와 자본재의 해외 의존도가 심화되어 무역흑자를 달성하기 어려운 교역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는 대선진국 무역구조에 있어서 수출비중이 40% 이하인 반면 수입비중은 53%로 선진국과 지속적인 무역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그 이유는 원자재 수입 이외에도 자본재 수입이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5%~40%에 달하고 있는 반면 소비재 수입비중은 10%로 매우 미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역이 자유화될수록 우리나라와 같은

소규모 경제에서는 자립형 산업구조를 추구할 수 없다. 오히려 우리나라가 선진형 경제로 진입하려면 무리한 국산화 정책보다는 수입자유화를 확대하여 수입을 통한 저비용 구조를 유지하는 대신 국내자원이 특정 부문에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시장기능에 의한 자원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과정에서 물론 성장 잠재력이 높은 산업의 경우 한시적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하지만 이는 예외적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9년 관세제도의 개편안은 일단 균등관세율체제를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관세 정책의 산업적 중립성을 견지하고 있다. 수입이 불가피한 농산물의 관세율을 인하하여 식료품 산업의 역차별 문제를 (부분적으로나마) 해소하고 ITA 품목에 있어서도 관세율조정을 단행하였다. 다만 WTO 신협상에 앞서서 관세율조정을 대폭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데 앞으로 협상과정에서 전략적으로 필요한 품목의 경우 관세율 개편을 단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산품에 대한 각국의 고관세와 경사관세체제 등 불투명한 수입장벽의 철폐를 적극적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다. **KDI**

세정개혁

玄 鑛 權 /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I. 서론

세정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은 크게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특별법 제정, 국세공무원법 제정, 조세범처벌제도의 실효성 제고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국세청에서 추진중인 세정개혁을 이루기 위해 제도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다. 그러므로 세정개혁의 기본방향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하다.

국세청에서 제시한 세정개혁방향은 신고납부제도를 바탕으로 납세서비스와 세무조사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조직도 현재 세목별 조직구성에서 기능별 조직으로 개편하였다. 즉, 과거에는 특정 세목과 관련된 모든 기능을 하나의 부서에서 담당하던 것을 기능별로 세무조사, 징세 등으로 전문화한 것이다.

이러한 전체 구도하에서 세정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 세 가지 인프라를 금번 개편안에 포함시켰다. 첫째, 정보 인프라이다. 국세청에서 납세자에 대한 정보를 제도적으로 확보하게 하였다. 둘째, 인적 인프라이다. 개혁은 사람이 하는 것인 만큼, 전문성과 청렴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인사체제

를 확립하려는 것이다. 셋째, 처벌수준에 대한 제도 인프라이다. 실효가 없는 처벌수준을 현실에 맞게, 탈세방지에 효과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세 가지 인프라의 확보는 세정 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데 효과적일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조세정책의 문제점 중의 하나가 세계 개편과 세정 개편이 서로 연계성을 가지지 않고 추진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개편안은 국세청에서 추진중인 세정개혁을 지원하기 위한 세계개혁이므로 과거의 개편과는 그 접근법에서 다르며, 옳은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II. 세정개혁을 위한 제도 개선안의 내용

1. 과세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현재 국세기본법 및 총리훈령에서 공공기관의 과세자료를 과세당국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체계적이지 못하여 실효성이 미흡한 실정이며, 다양하고 광범위한 과세자료를 행정력에만 의존하는 데에는 한계에 도달하였다. 이에 따라 공공기

관의 각종 과세자료가 국세청에 효과적으로 집중되도록 「과세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과세자료를 국세청의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집중시켜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공평과세 및 세정의 과학화의 추진을 동법 도입의 목적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선진국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3자 과세자료 보고제도」를 도입하여 자영업자 등의 과세자료 양성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과세자료 통보대상기관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금융감독기관 및 금융기관 등 공공기관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으로 정하고 있으며, 통보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재규정을 두어 효율적으로 과세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통보대상이 되는 과세자료는 공공기관의 보유자료 중 과세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는 자료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동법에는 지난 1997년 12월 금융소득 종합과세 유보시 금융소득자료의 국세청 통보를 중지한 것을 2001년 1월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시와 함께 국세청에 통보되도록 하였다. 즉, 조세탈루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본점에 일괄조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고액현금거래 자료는 5년간 기록을 보존하도록 하고 필요시 국세청장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탈세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과세자료 통보의무의 실효성을 위하여 통보기관장으로 하여금 통보이행 여부를 내부 업무감사

**국세공무원법의 제정은
국세공무원의 전문성, 청렴성 및
사명감을 제고하고 세정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깨끗하고 신뢰받는 세정구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의 필수항목으로 지정토록 하고, 국세청장은 감독·감사기관에게 통보의무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감사중점사항으로 지정토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세무공무원에 대하여는 과세자료를 타인에게 제공·누설 또는 용도 이외의 목적에는 이용을 금지하도록 하여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였다. 과세자료 통보에 대한 이행의무 위반시에는 감독 및 감사기관에 해당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세무공무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였다. 동 특별법안의 시행시기는 2000년 7월 1일이다.

2. 국세공무원법의 제정

동법의 제정은 국세공무원의 전문성, 청렴성 및 사명감을 제고하고 세정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깨끗하고 신뢰받는 세정구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세무행정조직을 기능별 조직으로 전환하는 한편 과세자료 수집체계의 제도화 및 국세공무원의 인사관리체계를 개혁하여

세정개혁을 뒷받침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일반직인 국세관련 공무원을 특
정직(국세행정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
다. 전환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국세청 소속공무원
(기능직·별정직 제외), 재경부 세제실 및 국세심
판소 소속공무원(6급 이하 전원, 조세정책의 입안
과 심판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은 일반직 또는
국세공무원에 보할 수 있음)으로 한다. 또한 국세
조사직렬(6급 이하)을 추가로 설치하여 세무조사
의 전문성 제고를 기하였다.

공무원의 신규채용에 있어서는 「5급 국세행정
고시」를 신설하여 국세청장의 주관하에 국세행
정에 필요한 자질을 갖춘 자를 선발하도록 하였
다. 6급 이하의 직원은 국세청장이 시험을 거쳐
공개채용하도록 하고 '국세행정직렬'과 '국세조
사직렬'로 분리 모집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
였다.

급여에 있어서는 기본급은 일반직 공무원과 동
일하게 하고 이외에 별도 수당을 지급하는 한편
업무유공자에 대하여는 포상금 지급 및 특별승진
제를 도입하였다.

국세공무원의 복무 및 처벌에 관하여는 '납세
자권리헌장' 및 '국세공무원윤리강령' 준수 의무
를 부과하고 위반자는 징계하도록 하였고, 직무
상 범칙는 1/3까지 가중처벌하고, 정치활동 및
집단행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
하 벌금 등 2배로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
다. 동 법안의 시행시기는 2000년 7월 1일로 하
고 있다.

3. 조세범 처벌제도의 실효성 제고

현행법은 국고우선주의를 기초로 하여 형법에
대하여 많은 예의를 인정하고 있고, 형량이 너무
엄벌위주로 되어 있는바, 형량을 적절히 하여 조
세범처벌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납세
의식 고취하는 방향으로 개편하였다.

세부내용을 보면 국고주의를 기초로 한 형법총
칙의 일부 배제 규정을 삭제하여 조세범에 대하여
도 형법총칙 적용을 전면 허용하였다. 기존의 세
목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5배
를 부과하는 지나친 벌금형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확정벌금형으로 전환하고
세목별 차등을 폐지하였다.

탈세제보의 보상금 지급기준을 벌금액(벌금액
의 10~25%)에서 포탈액(포탈액의 5~15%)으
로 변경하여, 징역형 부과 경우에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였다. 반면 무분별
한 추측성 탈세제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급비율
을 하향 조정하고 지급액의 상한을 1억원으로 하
였다.

이 밖에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및 장부의
기장·비치의무 위반은 조세포탈죄에 대한 예비
행위로 규정하고 그 죄질에 비추어 과태료를 부과
하도록 하였고, 특히 세금계산서 자료상의 처벌을
강화하였다. 세금계산서의 미교부, 무기장 등으로
인해 조세포탈에 이를 경우 조세포탈죄로 3년 이
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
도록 하였다.

동 법안의 적용시기는 2000년 1월 1일 이후 범 죄행위 성립분부터 적용된다.

III. 세정 개혁안의 평가

국세청에서 제2의 개칭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세무행정의 개혁을 추진중이다. 세금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으므로, 이를 담당하는 부서에 대한 일반국민의 곱지 않은 시각은 어쩔 수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세정은 그 동안 원리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현실논리에 얽매어 개혁다운 개혁을 시도한 적이 없었다.

국세청에서 제시한 세정개혁의 기본방향은 한마디로 옳은 방향이다. 신고납부제도를 바탕으로 한 기능별 조직체계가 그것이다. 우리나라의 세무행정은 정부부과제도로 운영되어 왔으므로 세무공무원이 납세자를 관리하기 위해 지역담당제가 필요했고, 이는 탈세와 세무부조리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었다.

세금정책은 세무당국과 납세자간의 게임이다. 납세자는 가능하면 탈세를 하려고 할 것이고, 세무당국은 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납세자들이 성실납부를 하게끔 유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국세청에 세무조사라는 무시무시한 칼을 쥐어준 것이다. 납세자 개개인의 소득규모는 본인만 알고 있을 뿐 국세청은 알 수 없다. 단지 국세청은 세무조사라는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납세자들로 하여금 성실신고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납세자 개개인의 소득규모를 모르는 상태에서, 납세자들로 하

여금 성실납부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신고납부제도의 기본철학이다. 세상이 복잡하게 됨에 따라 납세자들의 소득도 다원화되고, 국제간의 거래도 활발해져 국세청에서 납세자 개개인의 정확한 소득규모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 동안 납세자들의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사용했던 조세범처벌제도는 너무도 현실과 동떨어져 운영되었다. 명목적인 처벌수준은 매우 높지만, 실제로 법의 적용이 거의 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조세범처벌제도의 개정은 현실적인 제약요인을 고려하여 명목적인 제도를 실효성 있게 적용하기 위해서이다. 기본적인 방향은 옳은 것이다. 그러나 조세범처벌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은 중요한 요인은 조세범처벌제도를 활용할 경우 고발한 담당 세무공무원이 협력비용을 치루어야 하기 때문이다. 고발을 통해 본인에게 부담되는 시간 등의 협력비용이 있는 한 조세범처벌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을 요인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고발한 세무공무원에게 협력비용보다 높은 유인책을 제공하는 메커니즘을 만들 필요가 있다.

신고납부제도하에서는 납세자가 자신의 신고와 관련하여 세무공무원을 만날 필요가 없다. 세무조사를 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탈세를 하려고 하는 납세자는 불성실신고를 할 것이고, 그러한 위험이 두려운 납세자는 성실신고를 할 것이다. 세무당국에서도 납세자들에게 일정수준으로 신고해 달라고 부탁할 필요가 없다. 주어진 게임의 규

칙하에서 최선의 행동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국세청이 세목별 조직에서 기능별 조직으로 새출발하는 것이다. 과거의 조직은 특정 세목과 관련된 모든 기능을 한 부서에서 담당하므로, 세원관리하라, 세무조사하라, 징수하라, 팔방미인이 되어야 했었다. 이러한 환경하에서는 세무부조리가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이고, 세무공무원의 전문성도 확립될 수 없는 것이다.

개혁중인 국세행정이 풀어야 하는 가장 큰 과제는 세무조사라는 정책수단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를 빨리 회복하는 것이다. 세무조사받는 납세자들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은 어떤가? 아마 탈세자라는 부정적인 인식보다는 동정의 눈길을 대부분 보낼 것이다. 세무조사는 탈세라는 일부 납세자들의 나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수단이라는 국민들의 신뢰를 빨리 확보하여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과학적이며 투명하게 집행해 나가야 한다.

과학적이며 투명한 세무조사는 납세자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세무당국은 개별 납세자들의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정보가 없으면 엄포성의 세무조사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러한 세무조사 과정을 어떻게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밝힐 수 있겠는가?

그 동안 세무당국은 납세자들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하였으며, 그 결과도 효과적이지 못했다. 또한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자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제대로

**과학적이며 투명한 세무조사는
납세자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세무당국은
개별 납세자들의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협조를 받지 못했다. 이번의 과세자료 특례법은 이러한 자료의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해 줄 것이므로 향후 세무당국의 자료확보에 매우 유용할 것이다.

세무당국이 가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정보 중의 하나는 개별 납세자들의 금융소득에 대한 자료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유보된 현실에서 금융소득에 대한 자료를 국세청에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단지 2001년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실시한다는 기본방향이 있을 뿐이므로, 그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 다행히 2001년부터 실시한다고 해도 실제로 세무행정에 활용될 수 있는 시기는 2002년쯤이 될 것이다. 그전까지 이러한 중요한 정보가 없이 신고납부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인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

세정개혁은 세제개혁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세제개혁이 없는 세정개혁, 혹은 세정개혁이 없는 세제개혁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제2의 개청을 선언하면서까지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세정개혁이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는 세제개혁과 동시에 이루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KD**



사회적 비용 감축과 WTO 주세판정 이행을 위한 주세율체계 개편방향

* 이 원고는 한국조세연구원이 1999년 8월 17일 전국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 정책토론회 「사회적 비용 감축과 WTO 주세판정 이행을 위한 주세율체계 개편방향」의 주제발표 및 토론의 요약입니다.

- | | |
|--------------------------|--------------------|
| □ 사회자 : 郭泰元 서강대학교 교수 | 申英燮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
| □ 발표자 : 成明宰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 申榮休 (주) 금복주 전무이사 |
| 張權鎬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 尹榮垓 (주) OB맥주 상무이사 |
| □ 토론자 : 羅城麟 한양대학교 교수 | 鄭憲培 중앙대학교 교수 |
| 朴宰完 성균관대학교 교수 | 崔庚洙 재정경제부 재산소비세심의관 |

주제발표 요약

I. 서론

우리나라의 주세율 체계는 재분배 정책의 일환으로 고가·고급주에는 고세율, 저가·저급주에 저세율을 적용하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음주에 따른 외부불경제 축소와 괴리되어 있다.

EU와 미국은 우리나라의 주세제도가 내국민 대우와 비차별적 시장접근을 규정한 GATT 제3조 2항을 위반하고 있다고 하면서 1997년 4월 WTO에 제소하였다. WTO 패널 및 상소심을 거쳐 지난 2월 17일 분쟁조정기구(DSB)는 우리나라의 주세제도가 수입증류주에 차별적이라고 판정함으로써 주세율 체계를 개편해야만 하는 상황에 도달하였다.

최근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급증 등 음주의 사회적 비용이 크게 증폭되고, 생산성 하락, 알콜중독, 청소년 음주 등의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무분별한 주류 소비의 억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대내외적인 경제여건과 소비패턴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면서 외부불경제 축소와 통상 마찰 해소 차원에서 주세율 체계 개편이 불가피하다.

II. 주세의 현황

1. 주세율 체계

우리나라에서는 주류를 주정, 탁주, 약주류, 맥

주, 과실주, 소주류, 위스키류, 브랜디류, 일반증류주, 리큐르, 기타 주류의 11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1999년 현재 맥주와 소주에 대해 각각 130%와 35%(50%), 위스키류와 브랜디류에는 100%의 주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주세율 80%를 기준으로 주세액의 10%와 30%의 세율로 교육세가 부과되고 있다(단, 약주, 주정, 탁주 제외).

2. 주류소비 추이

1997년 현재 맥주, 소주, 위스키의 세 가지 주종의 소비량은 각각 180만 6천kl, 81만 4천kl, 2만 5천kl 정도로 주류 소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주류소비량은 경제성장을 상회할 정도로 빠르게 증가하여 소주와 맥주는 1970년에 비해 각각 4배 및 19배, 위스키는 1980년에 비해 7배 수준으로 소비가 증가하였다. 1998년에는 극심한 경기침체로 소주를 제외한 모든 주류의 소비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경제위기에 따른 일시적 현상인 것으로 판단된다.

3. 주세수입 추이

1998년 현재 주세수입은 1조 8,145억원으로 국세 대비 2.7%, 간접세 대비 8.7%의 점유비를 나타내고 있다. 주세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나 경제위기 이후 주류 소비가 감소하면서 주세수입은 다소 감소하였다.

주세수입 증가율은 상당히 낮은데 이는 인구증



가율이 낮아 주류소비인구의 증가가 둔화되었고 가주의 소비비중이 다소 상승하면서 세수가 다
 최근의 주세율 인하에 따른 것이다. 향후에는 고 소 증가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도 한시적일 것으

〈표 1〉 주요 주류의 소비추이

(단위: 십억원, kl)

	실질GNP	소주	위스키	맥주
1970	36,429.1	202,484	-	92,970.7
1975	53,109.4	379,222	-	169,781.1
1980	73,481.1	494,948	3,382	580,142.8
1985	108,130.3	586,949	4,033	772,349.9
1990	178,262.1	701,566	8,806	1,311,156.3
1991	194,458.9	677,912	9,938	1,585,654.8
1992	204,231.0	723,230	12,174	1,574,841.9
1993	216,162.3	744,000	12,537	1,509,551.4
1994	236,817.7	765,497	16,670	1,770,607.2
1995	254,704.9	761,935	22,555	1,854,069.9
1996	272,200.3	787,197	28,479	1,873,806.8
1997	285,588.4	813,600	24,530	1,806,162.0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무역통계연보」, 각 연도.

〈표 2〉 연도별 주세수입의 추이

(단위: 십억원, %)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주 세(A)	1,145	1,329	1,368	1,546	1,825	2,084	1,790	1,815
(증가율)	(12.1)	(16.0)	(2.9)	(13.0)	(18.0)	(14.2)	(-14.1)	(1.4)
국 세(B)	30,320	35,218	39,261	47,262	56,775	64,960	69,928	67,798
(증가율)	(12.9)	(16.2)	(11.5)	(20.4)	(20.1)	(14.4)	(7.6)	(-3.0)
간접세(C)	12,085	15,000	17,369	18,192	20,124	22,943	25,365	20,897
(증가율)	(16.4)	(24.1)	(15.8)	(4.7)	(10.6)	(14.0)	(10.6)	(-17.6)
A/B	3.8	3.8	3.5	3.3	3.2	3.2	2.6	2.7
A/C	9.5	8.9	7.9	8.5	9.1	9.1	7.1	8.7

주: 1. 징수액 기준
 2. 증가율은 전년대비 증가율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주세수입 구조는 맥주에 치중되어 있다. 즉, 맥주의 세수점유비가 전체의 3분의 2 정도에 이르고, 소주와 위스키를 합산할 경우 90% 이상을 나타내고 있다.

4. 문제의 제기

현행 주세율 체계는 형평성 측면에 치중하고 있지만 맥주의 대중화 등과 같은 소비패턴의 변화에 부합하지 못해 형평성 측면에서도 다소 문제가 있다. 또한 주종 구분, 음주에 따른 외부불경제 축소 등의 측면에서 일관성과 객관성이 미흡하다. 일부 고알콜주의 경우에는 음주에 따른 외부불경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어 외부불경제 축소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주세율 체계가 내국민대우 및 비차별적 시장접근을 규정한 GATT 제3조 2항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WTO의 판정에 따라 소주와 위스키 등 증류주 내에서의 주세율 격차를 사실상 일치시켜야 하는 상황에 도달하였다.

주세율 조정은 주류산업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를 유도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소주와 맥주의 경우 1970년대 초반 이후 지금까지 거의 동일한 세율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변화된 경제여건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III. WTO 주세분쟁과 주세·교육세 개편

1. WTO 제소배경과 경과

1991년 이후 우리나라는 EC와 일련의 협의를 통해 위스키에 대한 주세율을 150%에서 100%, 증류주에 대한 관세율을 40%에서 20%로 인하하였다. 그러나 1996년 WTO·일본 주세분쟁에서 승소한 것을 계기로, 1997년 1월 EC는 WTO DSU 규정 제4조에 근거하여 양자 협상을 요구하였다. 당해 협상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EC는 미국과 함께 1997년 4월 우리나라 주세법을 WTO에 제소하였다.

1997년 10월 16일 WTO는 패널을 구성하고 1998년 3월과 4월 스위스 제네바 WTO 본부에서 구두심리가 진행되었다. 1999년 9월 WTO 패널은 소주와 위스키 등 9개 수입 증류주가 직접경쟁·대체상품으로 우리나라 주세법이 최소허용수준(de minimis)을 초과하여 수입품을 차등과세함으로써 국내생산을 보호하였다고 판정하였으며, 1994년 GATT 협약에 합치되도록 주세법과 교육세법 개정을 권고하였다.

우리나라는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한 DSU 11조를 패널이 준수하지 않았으며, 부당한 입증책임의 배분과 GATT 제3조 2항 법리적 해석의 오류를 들어 1998년 10월 항소하였다. 항소심은 패널의 법리적 해석과 심의 기준이 적절하였다고 결정하고 GATT 규범에 일치되도록 주세법과 교육세법 개정 권고안을 1999년 2월 17일 공식 채택하였다.



2. WTO 판정결과의 이행과 주세율 개편

우리나라는 WTO 중재결정에 따라 2000년 1월 31일까지 GATT 제3조 2항에 합치되게 주세와 교육세법을 개편하여야 한다. 동 기간 내에 이행조치를 완수하지 않으면 DSU 제22조 2항에 따라 우리나라는 미국, EC와 협의하여 자발적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 2000년 2월 20일 이내에 만족할 만한 보상에 관한 합의가 없으면 분쟁해결기구의 승인하에 양허 정지 또는 그 밖의 의무정지 등의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다. 1997(8)년 당시 양주의 수입규모는 약 2억 2천만(1억 2천만)달러에 달하므로 제소국은 이에 상당한 보복조치를 할 수 있다.

한편 종가세 체계하에서 알콜도수에 따라 세율을 차등화하는 방안은 일본과 칠레 등 기존 WTO 판례에 비추어 볼 때 대안이 될 수 없다.

IV. 주세율 체계정비의 필요성

1. 음주 관련 외부불경제 문제

지난 30년간 우리나라의 주류 소비량은 실질 국민총생산 증가율을 상회하여 크게 증가하였다. 주류 소비의 소득탄력성이 낮은 것이 일반적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증가에 비해 주류가 더 크게 증가한 것은 우리나라의 주류 정책이 빈약하여 일반국민들이 주류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암시해준다.

음주에 따른 대표적인 사회적 비용은 알콜중

독, 음주 교통사고 등에 의한 경제·사회적 손실(의료비, 사망·부상 등에 의한 생산손실 등), 음주 범죄의 증가, 청소년 음주에 의한 제반 손실 등을 들 수 있다.

가. 음주 교통사고

최근 연간 교통사고 총발생건수는 25~27만건 정도인데 음주 교통사고는 1990~1996년 동안 7,303건이었던 것이 2만 5,764건으로 6년 동안 3배 이상 증가하였다. 음주 교통사고 사망자 및 부상자 수도 음주 교통사고 발생건수에 비례하여 3배 정도 증가하였다.

1994년과 1996년에 위스키 세율이 인하되자 음주 교통사고가 크게 증가하였고 1995년에는 소주에 교육세를 부과하였는데 음주 교통사고가 감소하는 등 주세율과 음주 운전간에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음주운전에 따른 직·간접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직접규제 강화와 주류소비의 억제가 필요하다.

나. 음주 관련 질병

1997년 현재 질병이나 사고 등에 의한 사망자는 약 10만 2천명 정도인데 음주 관련 사망자는 2만 1천명으로 전체의 20.8%에 이르는 등 음주에 따른 충동적 또는 우발적 사고 등으로 발생하는 인명손실이 매우 크다.

특히 음주 사망자 가운데 남자의 점유비가 여자보다 훨씬 높다. 이는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이 주류를 소비하기 때문으로 질병이나 사고로

〈표 3〉 음주운전 교통사고 추세

(단위: 건, %)

	총 발생건수		음주로 인한 발생건수		
	건수	전년대비	건수	전년대비	점유율
1990	255,303	-0.2	7,303	-2.1	2.9
1991	265,964	4.2	8,377	14.7	3.1
1992	257,194	-3.3	10,319	23.2	4.0
1993	260,921	1.4	14,961	45.0	5.7
1994	266,107	2.0	17,900	19.6	6.7
1995	248,865	-6.5	17,777	-0.7	7.1
1996	265,052	6.5	25,764	44.9	9.7
1997	246,452	-7.0	22,892	-11.1	9.3

자료: 도로교통안전협회, 『1997 교통사고 통계』, 1998.
 _____, 『대형교통사고 통계 및 사례분석』, 1997.

인한 인명손실과 음주간에 상관관계가 있음을 암묵적으로 시사해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주류를 과다하게 소비하는 경우에는 질병이나 사고 등에 의한 경제·사회적 비용 이외에도 노동공급 및 생산성 감소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초래된다.

다. 음주에 따른 경제·사회적 비용

음주는 질병 및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의료비 지출, 노동공급 감소, 생산성 저하 등과 같이 사회적으로 많은 부작용을 파생시킨다.

노인철 외(1997)의 연구에 의하면 1995년 현재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13조 6천 억원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4조원의 직접비용을 제외한 의료비, 생산성 감소, 조기사망에 의한 손실, 재산피해, 기타 행정비용 등의 간접비용은 9조 5천억원 정도에 이른다.

우리나라의 음주 관련 경제·사회적 비용은

1995년 현재 GNP의 2.75% 정도로 상당히 높다.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은 GNP 대비 경제·사회적 비용의 비중이 우리나라보다 낮으며 독일은 우리나라보다 다소 높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소주의 가격이 위스키 등에 비해 세전 가격이 10분의 1에도 미달하고 소비자가격은 그 이상의 차이를 보이는 것을 감안할 때 실제 비용은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2. 청소년 음주문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청소년에 대한 음주를 제한하기 위해 최소 음주허용연령을 18~20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보호법에서 19세로 음주를 제한하고 있다(Brewers Association of Canada(1997) 참조). 그러나 최근 문화체육부에서 실시한 한 조사연구에 의하면, 1989~1993년 동안 음주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표 4〉 질병별 음주 관련 사망자 수(1997년)

(단위 : 명, %)

전체사망자	사망			위험률 ¹⁾	음주관련사망자 ²⁾		
	남	여	계		남	여	계
구강 인두암	-	-	516	50 ³⁾	-	-	258
식도암	1,330	171	1,501	75	998	128	1,126
위 암	7,501	4,303	11,804	20	1,500	861	2,361
간 암	7,467	2,293	9,760	15	1,120	344	1,464
후두암	668	132	800	50 ³⁾	334	66	400
본태성고혈압	-	-	3,615	8	-	-	289
뇌혈관 질환	-	-	33,845	7	-	-	2,369
호흡기 결핵	2,444	849	3,293	25	611	212	823
폐렴	1,320	951	2,271	5	66	48	114
소화기 질환	-	-	1,574	10	-	-	115
간경변	7,434	1,896	9,330	50	3,717	948	4,665
취장 관련질환	244	62	306	42 ⁴⁾	102	26	129
당뇨병	4,442	4,242	8,684	5	222	212	434
알코올성 간질환	1,322	61	1,383	100	1,322	61	1,383
알코올성 정신질환	1,143	68	1,211	100	1,143	68	1,211
소 계	-	-	89,893	-	-	-	17,183
추락	1,743	663	2,406	35	610	232	842
사고성 익수	1,385	289	1,674	38	526	110	636
화재	530	256	786	45	239	115	354
자살	-	-	6,022	28	-	-	1,686
살해	-	-	985	46	-	-	453
소 계	-	-	11,873	-	-	-	3,971
전체	-	-	101,766	-	-	-	21,154

주: 1) 미국 질병관리센터(CDC)에서 제시한 1990년 음주관련 사망 위험률임.

2) 음주교통사고 사망자 690명은 제외됨.

3) 남자의 경우 50%이고, 여자의 경우 40%임.

4) 만성해장염의 경우는 60%이나 여기서는 급성해장염의 비율(42%)을 적용함.

자료: 통계청, KOSIS 자료.

비율이 60%에 이르는 등 청소년의 과반수 이상이 음주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996년도에는 음주비율이 더욱 확대되어 청소년

년의 3분의 2 이상이 음주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의 음주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10대 중·후반의 과반수 이상이 최초로 음주

〈표 5〉 음주의 경제·사회적 비용(1995년)

(단위 : 억원, %)

	사회부담	개인부담	계	비율
의료비				
직접의료비	2,600	2,232	4,832	
간접의료비	-	1,841	1,841	
의료보조비	-	2,457	2,457	
소 계	2,600	6,530	9,130	9.54
생산성 감소				
질병·사고	4,862	-	4,862	
음주 숙취	51,447	-	51,447	
소 계	56,309	-	56,309	58.86
조기사망손실				
암·질병	16,685	-	16,685	
교통사고	2,834	-	2,834	
각종사고	8,529	-	8,529	
장례비	45	1,584	1,629	
소 계	28,093	1,584	29,677	31.02
재산피해액				
교통사고	199	199	398	
화재	35	34	69	
소 계	234	233	467	0.48
행정비용				
자동차보험	71	-	71	
경찰행정	71	-	17	
소 계	88	-	88	0.09
합 계	87,324	8,347	95,671	100.0
알콜 지출	-	40,559	40,559	
합 계	87,324	48,906	136,230	

자료: 노인철 외(1997).

를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초 음주 경험 연령도 매우 낮아 15~16세가 22.3%로 가장 비율이 높으며 17~18세 및 13~14세도 각각 19.1%와 17.9%로 나타났다. 또한 남녀를 불문하고 성인이 되기 전인 19세 이전에 거의 대부분이 술을 마셔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초등학교 학생으로서 청소년이라고 보기에 아직 어린 12세 이하 아동의 경우에도 음주의 경험이 있는 비율이 32.5%로 나타나 아동의 음주 문제도 또한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표 6〉 음주 관련 연간 경제·사회적 비용의 국제비교

(단위 : 십억달러, %, 달러)

		비용 ¹⁾	GNP 비율	1인당 비용	연구자
한 국	1995	12.50	2.75	274.5	노인철 외(1997)
일 본	1987	45.78	1.89	376.3	Nakamura et al.
오스트레일리아	1991	8.2	1.73	473.0	Collins & Lapsley
독 일	1993	46~69	2.81~4.22	574.9~862.4	Kieselbach
뉴질랜드	1985	1.16	2.3	357.1	Chetwynd & Rayner
미 국	1983	116.9	3.40	504.9	Harwood et al.
	1985	70.3	1.73	294.5	Rice et al.
	1988	85.8	1.75	352.5	Rice et al.
	1988	136	2.77	558.8	Burke

주: 1) 자국 화폐단위로 표시된 금액을 미국의 달러(1995년 1달러 = 765원)로 환산.

자료: M. Henderson, G. Hutcherson & J. Davies, *Alcohol and the Workplace*, WHO, 1996.

Nakamura et al., "The Social Cost of Alcohol Abuse in Japan,"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September 1993, pp. 618~625.

〈표 7〉 연도별 청소년 음주경험 비율

(단위 : %)

음주경험	1989	1991	1993	1996
여 자	43.7	-	53.0	69.5
남 자	72.4	-	63.0	74.0
계	61.1	61.8	59.7	71.8

주: 1996년에 문화체육부가 전국의 만 9~24세 청소년 1만 3,62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약물남용 전국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얻은 결과임.

자료: 문화체육부(1996).

청소년 음주는 각종 범죄 및 비행에도 연루되어 국가적으로 사회불안이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청소년 범죄는 1970년에 4만 3천건 정도 발생하였으며 1980년에는 8만 8천건, 1990년에는 10만 6천건, 1997년에는 15만건으로 매년 4.8%씩 증가하고 있다. 음주에 의한 청소년 범죄도 1980년에 5.6%(약 5천건) 정도에

서 1995년에는 10% 수준으로 크게 증가하여 음주에 따른 청소년 비행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3. 세부담의 형평성

가구당 총소득 대비 실효주세부담률은 1994년에 0.0823%였던 것이 1997년에는 0.0681%,

〈표 8〉 청소년의 최초 음주연령(1996년)

(단위: 세)

	남자	여자	계
10세 이전	23.5	13.1	18.0
11~12세	17.7	11.8	14.5
13~14세	17.8	17.7	17.9
15~16세	21.4	22.8	22.3
17~18세	15.5	21.9	19.1
19세 이후	4.1	12.7	8.9

주: 1996년에 문화체육부가 전국의 만 9~24세 청소년 1만 3,62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약물남용 전국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얻은 결과임.

자료: 문화체육부(1996).

〈표 9〉 소년 범죄의 원인별 구성비

(단위: 건, %)

구분류	계	이욕	사행심	원한분노	가정불화	유혹	우연	취중	기타
1970	42,819 (100)	17,218 (40.2)	203 (0.5)	5,923 (13.8)	244 (0.6)	-	3,082 (7.2)	-	16,149 (37.7)
1980	87,867 (100)	12,327 (14.0)	1,910 (2.2)	3,618 (4.1)	207 (0.3)	1,060 (1.2)	10,293 (11.7)	4,959 (5.6)	53,493 (60.9)
1985	102,038 (100)	18,090 (17.7)	3,219 (3.2)	5,519 (5.4)	214 (0.2)	1,887 (1.8)	24,891 (24.4)	5,994 (5.9)	42,135 (41.3)
1990	105,567 (100)	13,442 (12.7)	2,755 (2.6)	3,872 (3.7)	151 (0.1)	1,852 (1.8)	35,065 (33.2)	7,683 (7.3)	40,468 (38.3)
1991	102,537 (100)	10,060 (9.8)	1,909 (1.9)	3,012 (2.9)	149 (0.1)	2,081 (2.0)	27,687 (27.0)	7,864 (7.7)	49,483 (48.3)
1992	99,301 (100)	9,761 (9.8)	1,597 (1.6)	2,091 (2.1)	129 (0.1)	1,790 (1.8)	25,407 (25.6)	7,260 (7.3)	50,792 (51.2)
1993	110,453 (100)	10,840 (9.8)	1,633 (1.5)	1,897 (1.7)	136 (0.1)	2,961 (2.7)	25,877 (23.4)	7,284 (6.6)	59,314 (53.7)
1994	108,342 (100)	20,628 (19.0)	1,036 (1.0)	1,756 (1.6)	135 (0.1)	1,251 (1.2)	26,785 (24.7)	9,711 (9.0)	47,040 (43.4)
1995	124,244 (100)	22,122 (17.8)	1,066 (0.9)	1,492 (1.2)	134 (0.1)	1,278 (1.0)	30,813 (24.8)	12,346 (9.9)	54,993 (44.3)
신분류	계	이욕	사행심	보복	-	유혹	우발적	호기심	기타
1996	127,503 (100)	22,430 (16.3)	1,083 (0.8)	1,570 (1.1)	-	1,494 (1.1)	32,537 (23.7)	14,637 (10.6)	63,752 (46.4)
1997	150,199 (100)	22,985 (15.9)	1,157 (0.7)	2,359 (1.5)	-	1,914 (1.2)	35,956 (23.9)	15,057 (10.0)	70,711 (47.0)

주: 1996년부터 통계분류 기준이 개편되어 취중에 발생한 청소년 범죄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알기는 어렵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자료: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1996』.



<표 10> 주요 주류에 대한 소득계층별 총소득 대비 주세부담률

(단위 : %)

		1	2	3	4	5	6	7	8	9	10	평균
주세 부담률	1994	1.449	1.100	1.081	1.034	0.891	0.942	0.798	0.788	0.684	0.556	0.823
	1997	1.205	0.934	0.716	0.757	0.773	0.698	0.702	0.583	0.504	0.598	0.681
	1998	1.330	0.958	0.851	0.710	0.797	0.711	0.639	0.574	0.436	0.354	0.612

주: 1. 도시가계조사자료를 기준으로 추정된 것임.

2. 단위가 천분율임에 유의하기 바람.

자료: 성명재(1996, 1999).

본격적으로 경제위기에 접어든 1998년에는 0.0612%로 하락하였다. 최근에는 GDP 대비 세수비중이 하락하는 추세에 따라 실효주세부담률도 점차 하락하고 있다. 실효주세부담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은 위스키와 맥주에 대한 주세율이 인하되었던 것에도 요인이 있다.

실효주세부담률은 고소득층으로 이행할수록 낮아져 세부담이 역진적이다. 주종별로는 청주, 탁주, 소주, 맥주의 경우 주세부담이 역진적이다. 반면에 위스키의 경우에는 경제위기 이후 소비가 위축되기는 하였지만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위스키의 소비가 집중되어 있어 주세부담이 누진적이다.

경제위기 이후 주세부담의 절대수준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경제위기로 인해 불요불급한 수요를 감축하였기 때문이다.

4. 개편의 필요성 종합

현재의 가격구조나 주세율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주류가격 결정시에 고려되는 비용은 사회적 비용을 모두 포괄하고 있지 않기 때

문에 현재의 균형소비량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을 초과하고 있다. 그러므로 주류의 소비량을 억제하여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소비량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직접 규제와 함께 경제적 유인장치를 작동시켜야 한다. 더욱이 청소년 음주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음주 관련 외부불경제 문제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함에도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위스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주종의 주세부담이 역진적이다. 따라서 세부담의 형평성만을 논한다면 대중주나 저소득층이 많이 소비하는 주류에 대해 저세율을 적용하고 고급주에 고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렇지만 주류는 여타의 소비재와 달리 비용도 함께 초래하므로 세부담의 형평성만을 강조하여 주세율 체계를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는 음주 관련 외부불경제와 청소년 음주 문제를 볼 때 자명하다.

특히 WTO 체제하에서 증류주의 주세율을 사실상 일치시켜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주세율의 소폭 조정은 위스키 세율의 대폭 인하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음주 관련 외부불경제

를 축소하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으로 주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주세율 수준의 상향평준화가 바람직하다.

V. 주세율 체계 개편방향

1. 주세율 체계 개편시 고려사항

주세율 개편시에는 대외통상문제, 대내적 외부불경제 축소 및 청소년 음주 억제 문제, 재정여건, 조세체계 간소화 관련 사항 등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WTO의 결정에 따라 증류주에 대한 세율을 사실상 일치시켜야 한다. 외부불경제 축소 및 청소년 음주 억제를 위해 음주에 대한 직접 규제 강화와 함께 주류 소비의 억제가 요청된다. 안정적 세수 확보를 통한 재정 건전화와 효과적인 주류 소비 억제를 위해 주세율의 상향평준화가 바람직하다. 종국적으로 조세체계 간소화에 따른 교육세의 본세 통합에도 대비하여 개편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그리고 주종간 주세 과세의 형평성, 재정여건, 외부불경제 축소 등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맥주의 경우 가장 주세율이 높아야 할 당위성을 찾기 어렵다. 그렇지만 세율인하시 급격한 세수감소로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일차적인 주세율 개편방안의 범위를 소주와 위스키 등 증류주에 국한하고 맥주에 대해서는 중기적인 관점에서 세율개편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개편방향

대부분이 고알콜주인 증류주에 대해서는 주세율 체계 개편의 전제조건이 되는 증류주 내의 세율격차 해소와 외부불경제 축소 차원에서 주세율을 상향평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WTO 주세판례에 비추어 볼 때 중가세 체계하에서는 최소허용 범위에 따른 주세율 차등방안은 WTO 패널에 의해 실질적으로 거부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다른 통상마찰의 가능성이 있어 고려하지 않는다(칠레·EU간 WTO 주세분쟁).

맥주에 대한 주세율은 최소한 증류주 수준으로의 조정이 필요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당분간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맥주에 대한 세율조정시에는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시차를 두고 중기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기대효과

소주의 경우 주세율 인상시 가격 상승으로 수요의 수요감소가 예상된다. 소주 수요는 대체관계가 큰 맥주와의 상대가격 구조에 의해서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 소주가격이 상승하여도 맥주가격이 인하되지 않는다면 수요감소는 작아질 것이다. 소주의 가격탄력성이 낮아 가격인상에도 불구하고 소주 소비의 감소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을 것이지만 음주에 따른 외부불경제의 한계비용이 매우 크기 때문에 비록 소비감소가 작더라도 외부불경제 축소효과는 상당히 클 것



로 판단된다.

소주 수요의 감소에 따라 소주시장의 위축이 예상되므로 규모가 영세하고 경영실적이 부실한 일부 소주 제조사의 경우에는 경영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스키의 경우에는 여타 주류와의 대체탄력성이 무시해도 될 정도로 예상되므로 여타 주종의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소비대체에 의한 수요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증류주에 대한 주세율 상향조정시 다소의 세수 증가가 예상되지만, 중·장기적으로 맥주세율을 인하하는 경우 세수감소효과가 상당히 클 것이므로 낙관하기는 어렵다.

VI. 요약 및 결론

우리나라의 주세율 체계는 통상마찰 해소와 음주 관련 외부불경제 축소 등을 위해 고알콜주, 특히 그 가운데 증류주를 중심으로 세율조정이 필요하다.

EU와 미국은 1996년 日·EU 및 미국간 WTO 주세분쟁에서 승소한 후, 우리나라의 주세 제도를 문제삼아 1997년 4월에 WTO에 제소하였고, 지난 2월 17일 WTO는 우리나라의 주세 제도가 수입주류에 차별적이라고 판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2000년 1월말까지 증류주에 대한 주세 및 교육세율을 일치시켜야 한다.

통상압력의 골자는 표면적으로는 소주와 위스키 등 증류주간에 주세율이 차등화되어 내국민 대우 규정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판단에 모아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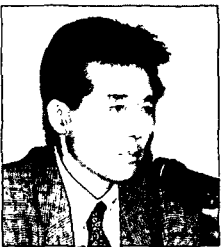
지만, 실질적으로는 위스키와 브랜디 등 수입주류에 대한 주세율 인하를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세는 전통적으로 세부담이 역진적이지만 음주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매우 크므로 외부불경제 축소 차원에서 주세율 체계의 개편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최근 음주운전 등의 외부불경제와 청소년 음주문제 등이 심각해지면서 인적·물질적 손실이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음주 억제에 요청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음주문화가 올바르게 정착되지 못한 데에서 찾을 수 있으며 부차적으로는 현행 주세율 체계가 음주를 부추기는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부불경제 축소를 위해 주세율의 상향평준화를 통한 소비억제가 바람직하다.

맥주의 경우 세율인하의 필요성이 있지만 재정적자와 맥주의 세수점유비가 3분의 2에 이르는 점, 외부불경제 축소 차원에서 고알콜주의 소비를 저알콜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적절히 세율조정시기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토론 요약

복잡한 주세체계 단순화시켜야



羅城麟
한양대학교 교수

EU와 미국이 우리나라를 WTO에 제소하게 된 원인으로 첫째, 주류에 대한 명확한 과세원칙 없이 세수 확보만을 중요시하는 현행 우리나라 주세제도의 문제점과, 위스키세율과 소주세율을 동일화하려는

각국 주류업계의 요청을 들 수 있다. 특히 외국 업계에서는 한국이 WTO 권고안을 받아들이게 되면 서민의 심한 반발이 예상되는 소주세율을 위스키세율에 맞추어 인상하는 것보다는 위스키세율을 소주세율 수준으로 낮추는 주세율 체계 개편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WTO의 판정을 받기 위해 노력한 것 같다. 그러나 본 토론자는 이러한 판단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생각되며, 위스키세율을 낮추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어쨌든 EU, 미국 등 외부압력에 의해 주세율 체계의 개편 시도를 하게 된 점은 아쉬우나, 우리나라는 WTO의 권고안을 수용하여야 한다. 이번 주세체계 개편은 단순히 소주와 위스키 두 주종만을 대상으로 해서는 안되며 주세 전체의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의 주세체계에 대한 개편방향을 장·단기로

구분하여 제시하기에 앞서 정부가 주류정책과 관련해 고려해야 할 사항을 우선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사회적으로 술 소비량을 줄여나가야 한다. 4년 전 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1년에 술 소비를 위해 약 4조원 가량, 즉 세수의 6% 정도를 지출하고 있다.

둘째, 외부불경제를 완화하는 원칙을 준수해 나가야 한다. 발표자가 앞서 의견을 피력한 바와 같이 음주운전, 술로 인한 질병 및 사망문제, 범죄 증가, 청소년 문제 등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셋째, 술과 노동은 상호대체관계에 있으며, 우리나라는 현재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국가 전반적으로 많은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주세율을 전반적으로 높여 술 소비를 줄임으로써 노동의 효율성을 꾀하는 문제가 시급하다. 음주횟수가 증가할수록 결근자 비율이 증가하고 생산성이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넷째, 물론 주종간 대체탄력도는 존재하지만,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술만을 놓고 볼 때 가격에 비탄력적인 제품이기 때문에 세율인상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다섯째, 앞으로 주세체계는 알콜도수에 따른 세율체계로 정비되어야 한다.

여섯째, 권고안을 준수하기 위해 소주세율을 조정해야 하지만, 영세한 소주업체가 많은 것도 현실이므로 이들 업체의 급격한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배려가 요망된다.

일곱째, 위스키 수준으로 세율인상이 되면 소주값이 300~400원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

는데, 가격면에서 절대적으로 비싼 것은 아니다
 라도 업소에서 판매시 자발적으로 술에 대한 가
 격을 책정하고 있으므로 서민들의 저항이 초래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급격한 부담을 감해주
 어야 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소득분배의 역진성을 완화해 줄 필요
 가 있다.

위의 8가지 사항을 감안한 장·단기적 주세율
 체계 개편방향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적인 시각에서의 주세체계 개편방향

먼저 우리나라의 주세체계가 단순화되어야 한
 다. 즉 현행 11가지 주종 체계를 증류주, 발효주,
 맥주로 삼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같은 주종 내
 에서 알콜도수에 따라 비례적으로 세율을 부과
 해야 한다.

그리고 현행대로 증가세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미국이나 EU측에서는 종량세체제를 요구하고 있
 으나 가격의 차이가 있는 제품간에 같은 액수의 세
 금을 납부한다는 것은 공평과세 원칙에 어긋난다.

또한 전반적인 주세인상이 바람직하다. 주세율
 인상은 경제학적으로는 술이 노동과 대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외부효과를 보다 완화시킬 수 있
 다는 점에서 타당하며, 사회학적으로는 우리나
 라 음주문화 개선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2) 단기적 주세체계 개편방향

통상보복을 받지 않기 위해 WTO 권고안을 받
 아들이되 앞에서 의견을 피력했듯이 위스키세
 율 인하는 반대하며,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한
 위스키와 소주 세율의 조정대안은 다음의 3가지
 로 설정할 수 있다.

제1안: 위스키세율은 그대로 두고 소주세율을
 위스키세율로 인상하는 방안

제2안: 위스키와 소주세율을 동시에 인상하는
 방안

제3안: 위스키세율은 그대로 두고 소주세율을
 이에 근접시키는 방안.

이 중 세 번째 안은 몇 년의 기간을 두고 점진
 적으로 두 주종의 세율조정을 WTO의 권고안대
 로 이행하게 되기 때문에 소주업계는 환경변화에
 적응 및 대처할 여유를 가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

WTO의 보조금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예상되는 소주업계의 피해를 보완하고 기
 술개발 및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한 지원방안
 을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주세율의 복잡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즉 주세에 교육세를 부과하고,
 여기에 다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므로 교육세의
 폐지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일부 주세율 조정 아닌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申英燮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주세정책 수립시 일
 반적으로 세수확보,
 사회적 비용 축소, 통
 상마찰 회피, 과세 형
 평성 등의 4가지 변수
 가 고려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행 제도는
 이 4가지 정책변수 측

면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세수확보면에서 전체 주세수입의 70%가 맥주세에 의존하고 있어 안정적인 세수확보에 문제가 있다. 둘째, 사회적 비용을 축소한다는 측면에서 국민건강, 국제수지나 범죄예방 등의 차원에서 고알콜주에 대한 소비를 억제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 주세율 체계가 그런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통상마찰을 회피한다는 측면에서도 같은 증류주끼리 세율에 큰 편차를 보이고 있어 이번 WTO 제소의 빌미를 제공하는 등의 문제를 발생시킬 소지가 있다. 넷째, 과세형평성 차원에서도 우리나라는 증가세를 원칙으로 고가주는 고세율, 저가주는 저세율 정책을 적용한다고 하지만, 실제 위스키세율이 100%인데 맥주세율은 130%, 청주는 70%이며, 수입포도주는 30%인 사실에 비추어볼 때 오히려 역차별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조정하기 위해 이번 주세율 개편에서는 다음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우선, 이번의 주세체계 개편은 소주와 위스키의 불공평세율 조정에만 국한하지 말고 전면적인 개편이 단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현행 주세율 구조가 국내 주류에 역차별의 부당함을 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데, 구체적으로 맥주세율은 낮추고 위스키와 소주는 부분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술 소비에 대한 외부효과 및 기타 정책변수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가 있어야 한다. 즉 술로 인한 교통사고, 가정폭력 등의 사회·경제

적 문제를 줄여나가야 하며, 이런 차원에서 주세율의 전면적인 상향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정부가 WTO 권고안을 따르기 위해 주세율을 조정하는 경우 가능한 대안으로는 다음 3가지가 있다.

제1안: 위스키세율 현행 유지, 소주세율 인상

제2안: 위스키세율 인하, 소주세율 현행 유지

제3안: 위스키와 소주세율 양자를 조정하여 균형을 이루는 방법

앞서 살펴본 2가지 고려사항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주세율 개편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고자 한다. 우선 술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주세 세율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소주세율을 많이 올려야 한다고 판단된다. 특히 소주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매우 비탄력적이므로, 700원에서 1000원으로 상승한다고 해서 소주업체가 우려하는 수준의 소주 수요 감소는 예상되지 않는다. 두 번째로 알콜도수에 따라 세율을 부과하는 경우 알콜도수 40도인 위스키세율을 100% 기준으로 하는 경우 소주세율은 62.5%가 되어야 하며, 맥주세율은 현행보다 크게 낮추어야 한다. 그러나 세수의 급격한 감소를 감안하고, 또한 WTO에서 지적한 것처럼 알콜도수에 따른 세율 조정이 우리나라의 현행 증가세 체제와 조화를 이루기 어렵다는 현실적 문제를 감안한다면 소주세율은 위스키세율에 근접시키고 맥주세율은 낮추되 100%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안을 제시하고 싶다.



전체 주류에 공동 적용할 기본원칙 필요



申榮休
(주)금복주 전무이사

우선 본 토론자는 발 표자의 소주세율 상향 조정에 대한 표현을 소 주세율을 100%로 하 겠다는 의미로 이해하 겠다. 소주세율 100% 인상방안은 위스키세 율 100%에 맞추려는

의도에 따른 것이며, 모든 주류에 적용되는 기본 원칙에 따른 세율인상 방안이라고 보지 않는다.

이처럼 기본적인 세율정책 원칙이 없는 상황에서 술에 의한 사회불경제적 요소를 부가하여 소 주세율 인상의 당위성을 설명하려는 것은 납득하 기 어려우며, 이번 세율 개편시 소주 외의 다른 주류에 대한 구체적인 세율인상도 함께 논의되 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주세의 전반적 개 편에 대해서 본 토론자도 찬성하나 반드시 전체 주류에 공동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본원칙이 전 제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현행 종가세 체제에서 종량세 체제의 원칙인 고도주·고세율, 저도주·저세율의 논리를 전체 주류에 대해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로, WTO와의 사이 에서 소주와 위스키에만 국한해서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기로 타협을 본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

소주가 100% 세율이 인상되었을 때, 소주 수 요 감소가 미미할 것이라 예측하고 있는데, 다른 연구자료에 의하면 수요 감소 예측에서 많은 차 이를 보이고 있다. A.C. Nelson의 경우 다른 주

류의 세율은 그대로 두고 소주세율을 100%로 두었을 때, 소주에 대한 수요 감소분이 개인당 27% 정도 된다고 예측하고 있는데, 대개 2명 이 상 음주하는 문화로 인해 실상 수요가 감소하는 파급효과는 이의 2배인 50% 이상이 될 것이라 고 생각된다. 또한 양승종 교수팀에 의한 예측자 료에서도 순매출액의 53% 정도 수요감소가 예 상되고 있다. 이러한 조사자료에 근거할 때 소주 세율의 100% 인상은 주류업계에서 소주업체는 퇴출하라는 극단적인 의미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아울러 소주는 순도(pure : 순수한 알콜의 함 량)가 높은 술로 인체에 가장 유해성이 없는 위생 적인 주종이며 술이 제공하는 효용 또한 높다. 따 라서 단지 저렴한 가격과 알콜도수 20도 이상의 대중주라는 이유로 교통사고, 질병유발, 청소년 비행 및 범죄 등의 사회적 비용 야기의 주범이 마 치 소주인 듯한 발표자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

현재 EU 15개 국가들은 자국에서 생산하는 주류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포도주(맥주보다 알 콜농도가 2배)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데 소주는 수출하는 전체 주종 중 70%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술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주세정책에 비추어 위스키 수준으로의 세율 인상은 납득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세정책 개편에서는 기본원 칩 없이 소주와 위스키만을 타겟으로 할 것이 아 니라, 현행 종가세 체제를 종량세 체제로 바꾼 후 이에 근거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 있는 주세율 정책이라고 생각된다.

알콜소비 억제하는 주류정책 입안되어야



朴宰完
성균관대학교 교수

앞서 얘기가 나왔듯이 주세율 체계 개편은 주류정책의 기본방향 설정 후에 이와 부합되게 추진되어야 한다. 그리고 음주의 사회적 비용을 합리적으로 감축하려는 취지에서 소

주세율을 위스키세율에 맞추어 인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현행대로 맥주세율을 130%로 유지하려는 것은 이러한 원칙과 부합하지 않으며, 세수감소에 대한 우려만 반영하여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실적으로 사회적 불경제를 야기하는 음주 자체를 금지시키기는 어려우므로, 알콜 소비를 억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즉 고도주 소비를 저도주 소비로 전환하는 주류정책이 입안되어야 한다. 이 경우 주종에 따라 세율체계의 적용논리가 달라서는 안되며, 일관된 원칙이 없는 경우 주세체계 개편작업은 설득력이 없어 소모적인 논란만 일으킬 수 있다. 차제에 정부는 몇 천억원의 세수확보가 중요한지 아니면 10조원에 달하는 음주의 사회적 비용 및 세수논리에 의해 왜곡된 주종간 세율격차가 야기하는 손실 중 어디에 더욱 비중을 두어야 할지 판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발표자는 맥주에 대한 세율 인상을 증류주와 시차를 두어 이번에는 증류주에 한해서만 세율조정을 검토하고 맥주세율은 중기적 관점에

서 접근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그러나 증류주 세율 인상시에 맥주세율을 인상하면 세수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증류주 세율을 고려하고 있는 지금이 보다 적기이며, 최근 소비가 일반화된 제품에 대해 특소세 폐지를 결정한 정 부안과도 부합한다고 생각된다.

주류산업 발전을 위한 주세정책을



尹榮垓
(주)OB맥주 상무이사

현행 주세율 체계의 문제점으로 먼저 형평성 결여를 지적할 수 있다. 즉 우리 정부는 고가·고급주에는 고세율, 저가·대중주에는 저세율을 기본원칙

으로 한다고 하나 이는 1970년 이후 지켜지지 않고 있다. 계속되는 외국의 통상압력에 의해 주세가 변경되어 오면서 현재 주세를 살펴보면, 맥주 130%, 위스키 100%, 청주 75%, 소주 35%, 포도주 30% 등 원칙이 없는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1970년도 기준으로 탁주는 전체 주류소비량의 80%, 맥주는 6%로 당시의 대중주는 탁주였으나 1997년에는 각각 7%, 63%로 상황이 바뀌면서 현재의 대중주는 맥주이다. 또한 가격면에서도 1975년 기준으로 탁주는 37원인 데 비해 맥주는 1l에 167원, 소주는 142원이었으나, 1997년 현재 탁주는 1l에



640원, 소주는 841원, 맥주는 557원으로 1970
년도에는 고급주였던 맥주가 지금은 가장 저렴한
술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은 아랑곳하
지 않고 맥주에 고세율이 부과되고 있는 것은 타
당하지 않다.

둘째, 현행 주세체계는 우리 맥주업계의 낙후
성을 초래한 주요 원인이었다. 외국 맥주업계에
서 우리 맥주업계의 신제품 개발 의지에 회의적
인데, 현재와 같은 종가세 체제하에서 주세
130%에 교육세, 부가가치세까지 부과되면 총
간접세는 총 196%에 이른다. 이러한 상황하에
서 맥주업계가 취할 수 있는 생존방법은 원가절
감뿐이며, 포장 및 제품개발에 대한 투자는 엄두
도 낼 수 없다.

셋째, 현행 우리나라 주세율 체계는 국민에게
고도주 음용을 장려해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
는 모양이 되고 있다. 맥주는 그 동안 호프문화
등을 통해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기여하여 왔
으며, 맥주 자체가 순곡·저도·발효주이므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는 다른 증류주
와는 다른 처우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세
율 정책이 유지되고 있다.

넷째, 우리나라는 주류산업을 배려한 주류정책
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 맥주원료인 보리는 전량
국내에서 수매한 후 부족분에 대해 정부의 인가
를 받아야 수입이 가능하므로 국내 생산 주류 중
국산화율이 가장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주
에 최고 세율이 적용되는 모순을 안고 있으며,
즉 주류산업을 고려한 정책이 주세법에 전혀 반
영되지 않고 있다.

부득이 이번에 외국의 압력에 의해 주세율 체
계를 개편하게 되었으나, 이번에는 주세에 대한
확고한 원칙하에 주세율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
다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
로 먼저, 현행 복잡한 주류 구분을 단순화(발효
주, 증류주, 맥주에 탁주와 소주 등을 포함)시켜
야 한다. 다음으로 사회적 비용의 유발을 억제하
고 건전한 음주문화를 장려할 수 있도록 주세법
이 개정되어야 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세수감소를 우려하여 맥주세
율 인하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데, 맥주는
다른 주류에 비해 가격탄력성이 높아 맥주세율
을 낮춤으로써 초래되는 세수감소보다 맥주수요
증가로 인한 세수증가가 크다는 것이 연구된 바
있다. 이것을 토대로 할 때 이번 기회에 세율을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궁극적으로 맥주세율이 가장 낮아져야 한
다고는 생각하나, 현실적으로는 재정수입 역시
도외시할 수 없으므로 단계적으로 최저세율 적
용을 기대하며, 이번 개편에서는 현행 130%에
서 75%로 세율을 인하해 줄 것을 맥주업계를 대
표하여 주장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주세율에 상관없이 단일화된 교육
세 적용을 요망한다. 주세가 80% 이상인 주류에
대해서는 교육세가 30%가 부과되고 있으며 여
기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 어떻게 보면 삼중
과세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새 천
년에 전면 실시될 이번 주세 개편안은 확고한 원
칙 수립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발효주와 증류주 기본세율 차별 뒤야



鄭憲培
중앙대학교 교수

발표자가 제시하고 있는 세율방안은 다른 주종의 세율은 현행을 유지하고, 소주세율만 위스키세율에 맞추어 인상시키려 하고 있는데 이는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본인은 다음과 같은 주세율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발효주와 증류주에 대한 기준세율을 정하고, 한번에 이를 시행할 수 없을 때는 기준세율 달성을 위한 유예시간을 줌으로써 주류업계의 세율인상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려는 정부측의 배려가 필요하다.

- 발효주 기본세율
 - 10도 미만인 경우 기준세율 40%
 - 10도 이상인 경우 기준세율 50%
- 증류주 기본세율
 - 20도 이상인 경우 기준세율 80%
 - 30도 이상인 경우 기준세율 100%
 - 40도 이상인 경우 기준세율 120%

끝으로 주세율 개편시 세원 확보, 소비자 보호, 산업 육성의 3자간 조화를 추구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전통·민속주에 대해서는 알콜 도수에 관계없이 이들 업체의 영세성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영세율 적용 등의 세제혜택이 주어져야 한다.

유사세율 적용을 원칙으로 주세율 개편 추진



崔庚洙
재정경제부 재산소비세심의관

이번 주세율 체계 개편은 경쟁력 상실을 초래할 수 있는 주세율 인상에 대한 업계의 입장,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주류에 대해 강력한 제재 차

민간단체, 주류산업 육성 및 재정안정을 꾀해야 하는 정부입장 등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용이하지 않다.

그러나 정부는 무엇보다도 소주와 위스키에 대해 유사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WTO 판정을 준수하여, 통상마찰을 발생시킬 수 있는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여야 한다. 만일 WTO 판정 이행 미흡으로 통상마찰이 발생하게 되면 관세 보복을 받게 되는데 이는 수출 주력제품인 자동차, 반도체 등 여타 업종에서 큰 피해를 야기하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유사세율 적용을 원칙으로 주세율 체계 개편을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선 WTO의 권고안대로 모든 증류주의 세율을 일치시키고, 둘째, 음주의 사회적 비용을 고려할 것이며 셋째, 재정적자를 막기 위해 세수감소를 야기할 수 있는 세율개편, 특히 맥주세율 인하 등은 추진하지 않을 계획이다.

위의 제반 사항을 고려하는 대신 주세법상의



많은 규제를 완화해 줌으로써 사업여건 개선 및 주류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며, 다만 면허체계 개선시 판매면허의 경우는 보다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 폐지가 당장 시행이 어렵다면 동일한 교육세가 적용되기를 한국정부에 요망한다. **KD**

한국 주세율 체제, 종량세제로 전환해야

팀 잭슨/ EU & U.S.A의 증류주 업계 대표

이번 주세율 개편 시도에서 한국과 EU·미국 간에 주세 및 교육세에 대한 상호 동의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길 희망하며 이러한 일환에서 우리측의 입장을 표명하고자 한다.

현재 한국에서 수입 증류주의 비중은 전체 증류주의 단지 2%에 불과하다. 우리는 물론 동일한 세율적용을 원하고 있으나 결코 소주 세율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종량세제 도입을 통해 한국의 세제(tax system)를 수정하려는 것이다. 현재 EU 국가 중 한국과 멕시코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종량세제를 시행하고 있다.

종량세제의 장점은 먼저 종가세제로부터 비롯될 수 있는 왜곡된 주류가격 차별구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품질과 주류의 맛에 의해 제품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경기 변동이 있는 경우에 주세 수입의 예측이 가능하고,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주류를 알콜도수 기준으로 제재한다는 차원에서 종량세제가 바람직하다.

더불어 교육세가 폐지되기 바라며, 만일 이러



주제발표 요약

I. 개정배경

현행 조세범처벌법은 1951년에 제정된 이후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부분적으로 개정된 바 있었지만, 그 동안의 사회·경제적인 여건 변화에 부응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고우선주의를 기초로 하여 형법의 많은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며, 과중한 벌금형 등 엄벌 위주의 형량으로 인해 적극적인 범칙조사 집행을 저해하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사회 전반에 탈세 등 조세범죄가 만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후반 이후 조세범 처벌실적은 크게 감소하고 있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조세범칙행위는 범죄라는 인식이 점차 희박해져 가는 가치관 왜곡현상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조세범처벌법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조세범칙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처벌함으로써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공평과세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 조세범이란 조세의 부과, 징수 및 납부에 관한 범죄를 말하며, 현행법에 규정된 조세범칙행위의 유형, 그에 따른 처벌내용 및 형법총칙 배제 여부 등을 정리한 것이 <표 1>이다.

II. 기본방향

첫째, 국고주의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조세범처벌법을 책임주의적인 조세형법 체계로 전환하고자 한다.

둘째, 조세범의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고 조세범처벌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셋째, 현행법의 조세범죄 중 형벌을 과할 필요성이 없는 행위 혹은 당벌성이 없는 행위 등을 비범죄화하고, 이러한 행위는 행정벌로 전환하고자 한다.

넷째, 기타 조문제목을 신설하고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개선하는 등 법체계를 정비하고자 한다.

III. 주요 검토사항

1. 형법총칙의 일부 배제규정 삭제 여부(§4)

현행법은 조세범에 대해서 형법총칙의 일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나, 조세범에 대하여도 책임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배제규정을 삭제한다.

중범에 대한 형 감경 규정을 배제하는 현행 규정은 형법의 일반이론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률의 착오는 자연범에서보다 행정범에서 일반국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기능을 하므로, 법률의 착오에 의해 범칙행위를 한 국민들이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책임주의 원칙의 관점에서 바람직하다.

〈표 1〉 조세법칙 유형 요약

법칙행위의 유형	처벌	형법 총칙 중 적용배제	징역과 벌금 병과 행위	공소시효	관련조문	
무면허 주류 제조·판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	5년	§8①	
조세포탈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5배 이하의 벌금					
① 특별소비세·주세 또는 교통세 포탈	· 포탈세액의 5배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② 인지세 포탈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는 세액의	○	○	5년	§9	
③ 기타 국세 포탈	3배 이하의 벌금					
1회계연도에 3회 이상 체납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체납액에 상당하는 벌금	○		5년	§10	
원천징수의무 불이행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불이행세액에 상당하는 벌금	○		5년	§11	
VAT 세금계산서 관련						
① 고의 미교부·허위 기재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VAT의 2배 이하의 벌금		벌금경합			
② 폭행 등으로 수취방해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제한기중	○	5년	§11의2
③ 재화·용역 공급 없는 교부 또는 동일 알선·중개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VAT의 2배 이하의 벌금		규정만 배제			
재산장닉 및 허위 계약	· 2년 이하의 징역			5년	§12①,②	
재산장닉 등의 방조	· 1년 이하의 징역			5년	§12③	
납세증지 등 불법사용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	○	5년	§12의2	
장부불비치·무기장	· 50만원 이하의 벌금			2년	§12의3①	
장부의 소각·파기 등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12의3②	
법인의 결손금 과대계상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과대계상 산출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	○	○	5년	§12의3③	
정부명령 등 행정질서위반	· 5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2년	§13	
허위신고·무신고를 선동·교사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14①	
허위신고·무신고를 위한 폭행·협박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14②	

2. 징역과 벌금의 병과규정 삭제 여부(§5)

일반 형법에서는 죄질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부과하고 있으므로, 조세포탈죄에 대해서만 징역과 벌금을 병과하고 기타 조세범처벌행위에 대한 병과규정은 삭제하거나(1안) 또는 전체를 삭제하는 것(2안)이 합리적이다. 조세포탈죄의 경우 공소시효나 제척기간 등으

로 징역형만으로는 범죄자가 취득한 이익을 전부 박탈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병과규정을 계속 존치해야 할 것이다.

3. 몰수대상 물품 규정의 존치 여부(§7)

현행 규정은 선의의 제3자에게 예측치 못한 피해를 줄 위험이 있으므로, 형법 제48조의 규



정을 참고하여 몰수 대상을 "범인의 소유에 속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고 취득한 물품"이라고 명확히 하거나(1안), 형법 제 48조 이하의 몰수규정을 조세범죄에 준용하여도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삭제해도 될 것이다(2안).

4. 무면허 주류 제조·판매범의 형량조정 등(§8)

무면허 주류 제조·판매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주세면허행정의 원활성 확보와 주세포탈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조세포탈죄에 준하는 3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거나(1안), 3천만원 이하의 벌금만 부과하는 것(2안)이 합리적이다.

무자료 주류 등 불법 주류 단속시에 무면허 중개상들이 대부분 판매목적으로 운반 또는 보관 중에 적발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면허 없이 판매할 목적으로 주류를 소지·보관하는 자에 대한 처벌근거를 신설한다.

5. 조세포탈범의 형량조정 등(§9)

조세포탈범에 대한 세목별 차등은 폐지하고 벌금형을 형법의 책임주의 원칙을 도입하여 확정 벌금형으로 전환하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1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2안)을 과한다.

근래 경제범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1천만원의 벌금을 조합하는 추세에 있다.

포탈세액을 자진하여 수정신고·납부한 경우 국가의 재정권이 회복된 것이고 이는 형법상의 중지 미수와 같은 정도의 책임 경감 사유가 된다고 보여지므로 형을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6. 원천징수 의무위반범의 형량조정 등(§11)

형법의 책임주의 원칙에서 볼 때, 원천징수불납부범은 형법 제355조나 제356조의 횡령죄 또는 업무상 횡령죄에 준하여 원천징수불이행범보다 죄질이 더 나쁘므로 원천징수불납부범을 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원천징수불납부범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고, 원천징수불이행범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세금계산서범의 형량조정 등(§11의 2)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의 경우 장부의 기장·비치의무 위반 등과 함께 조세포탈죄의 예비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500만원 이하(1안) 또는 1천만원의 벌금형(2안)만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폭행·협박의 경우 형법 제324조의 강요죄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일반 형법으로 처벌하거나(삭제를 의미함: 1안), 선동·교사·통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미교부·불수취·허위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2안) 또는 1천만원 이하(3안)의 벌금을 과한다.

세금계산서 자료상의 경우 단순한 세금계산서 미교부 등과는 달리 그 죄질이 나쁘므로 징역형을 부과한다. 벌금형은 징역형과 비례하여 확정 벌금형으로 전환하되 대규모 자료상의 효과적인 처벌을 위해 사실상 포탈세액까지 벌금형을 부과한다.

합계표를 허위 기재해서 제출하는 자도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

8. 체납처분 면탈범의 형량조정 등(§12)

체납처분 면탈범은 형법의 강제집행면탈죄와 같은 성격의 범죄이므로 구성요건을 형법상 강제집행 면탈범을 참고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한다.

9. 납세증명표지 불법사용범의 형량조정 등(§12의 2)

납세증명표지의 불법사용 등의 범죄는 형법 제218조(인지·수표의 위조 등), 제219조(위조인지·수표 등의 취득), 제221조(소인 말소)의 범죄와 같은 성격이므로, 형법 규정을 참고하여 범죄의 구성요건 및 형량을 전면 조정해서 한다.

행사할 목적으로 납세증명표지를 위조·변조 및 이의 행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변조된 납세증명표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한다.

납세증명표지나 소인된 인지의 재사용은 형법

제221조의 소인말소죄보다는 무거운 범죄로 보아서 징역형은 2년으로 같게 하되, 벌금형은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10. 기장의무위반자의 형량조정 등(§12의 3)

장부의 비치·기장의무 위반행위는 조세포탈의 추상적 위험성이 있는 행위이므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소득세법·법인세법상의 비치·기장의무가 있는 장부를 제외할 이유가 없으므로 포함시킨다.

국세기본법(§85의 3③)에서 전산회계처리 기업의 정보보존장치 보존을 의무화하였으나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 대한 제재방법이 각 세법에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처벌근거규정을 마련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한다.

11. 조세질서범의 형량 및 처벌대상 조정(§13)

명령사항위반 등은 그 자체로 반사회적인 행위라기보다는 세무행정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범죄로 규정한 행위이다. 따라서 형벌보다는 과태료를 과하는 것이 타당하며, 과태료는 경제규모 및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여 인상 조정한다.

일부 중복되거나 폐지된 규정은 삭제하고 소위 백지세금계산서나 백지영수증은 조세포탈의 수단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므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12. 신고방해범의 형량조정 등 (§14)

과세표준을 허위신고·무신고하도록 선동·교사하는 자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징역형에 비례하여 상향조정한다.

무신고, 허위신고를 위한 폭행·협박의 경우 형법 제324조의 강요죄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일반 형법으로 처벌한다.

세무대리인이 임의로 과세표준을 허위 신고하는 경우 현행 제1항으로 처벌할 수 없으므로 이를 처벌하기 위해 현행 제12조의 2 제7호를 제14조에서 규정한다.

13. 세무공무원 가중처벌규정 삭제 여부 (§15)

세무공무원에 대해서만 형법 중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대하여 가중처벌할 필요성이나 정당성이 없고, 세법에 위반한 자를 처벌하기 위한 조세범처벌법의 목적에도 맞지 않으므로 삭제한다.

14. 조세범처벌절차범의 탈세제보 교부금 지급 규정(법 §16, 시행령 §6)의 개정

탈세제보를 통한 사회적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탈세제보 보상금 지급기준을 벌금액에서 포탈세액으로 변경하면서, 교부금 수령목적의 무분별한 추측성 탈세제보로 인한 행정력 낭비 등을 감안하여 지급비율을 하향 조정하고 지급액에 상한을 규정한다.

15.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 조세포탈의 가중처벌규정(법 §8)의 개정

현행 특가법 제8조에 규정된 형량은 형법상 살인죄의 형량(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과 비교될 정도로 과중해서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이나 비례원칙에 반하며, 법 적용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특가법 제8조를 삭제하고 처벌법 제9조의 형량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거나, 처벌대상 및 형량을 대폭 완화해서 포탈세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을 과하고,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을 과한다.

토론 요약

경미한 조세범죄 처벌에서 제외해야



金完石

서울시립대 교수

우선 조세범처벌법 개정의 기본방향은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한다. 국고주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조세범 처벌법을 책임주의적인 조세형법체제로 전환하고, 조세범의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며,

경미한 조세범의 경우 가산세로써 징계한다는 점에 대하여 동의한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를 추가적으로 언급하면 첫째, 범법사실이 적발되면 예외없이 처벌한다는 전제 아래 법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종전의 경우 형의 인플레이션상으로 말미암아 범법사실이 발견되더라도 처벌하지 못하는 모순이 있었다. 즉 조세범 처벌법상의 높은 형량이 오히려 법 집행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해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형량 자체를 현실적으로 낮추고 그 낮춘 형량을 예외없이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가능하다면 경미한 조세범죄는 조세범처벌법에서 제외하고 조세포탈범이나 사회적 비난이 크게 나타나는 반사회범만을 규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형벌과 가산세 제도를 연계 조정해야 할

것이다. 즉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따라서 형벌, 가산세제도, 과태료가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보완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 각론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형법총칙의 일부 배제규정 삭제 여부와 관련하여는 제시되어 있는 개정안에 동의하며 이의가 없다.

징역과 벌금의 병과규정 삭제 여부와 관련하여는 조세포탈범이나 체납처분면탈범 등에 대해서 징역형과 벌금의 병과규정을 존치하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물수대상물품 규정의 존치 여부와 관련하여 규정을 삭제(제2안)하더라도 형법 제48조 규정을 적용하면 되므로 개정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무면허 주류 제조·판매범의 형량조정 경우 개정안의 제2안을 적용하는데 찬성한다.

다음으로 조세포탈범의 형량조정문제는 본 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법의 개정작업에 있어서도 가장 큰 노력이 기울여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우선 특가법 제8조의 규정을 폐지하고 조세범처벌법에서 수용하여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 둘째, 형량의 경우 제1안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동의하지만 슬라이딩(sliding) 규정을 두고 있는 제1안의 단서는 원래 추구하는 개정방향과는 일치하지 않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셋째, 조세포탈범의 기수 시기와 관련하여 현



재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고납부기한 경과시로 하고 있고, 부과주의를 채택하는 경우에는 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다. 즉, 허위의 채무증명을 첨부하여 상속세, 증여세를 신고하더라도 상속·증여세를 결정하기 전까지는 조세포탈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누구나 거짓의 채무증명 등을 이용하여 상속·증여세를 축소신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납세자로부터 하역금 조세포탈의 유혹을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조세포탈을 부추기는 작용을 하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상속·증여세의 경우도 신고납세 시기가 경과하면 기수시기가 도래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단순무신고의 경우 처벌하지는 견해가 많고 또 그러한 견해가 법리적으로 타당성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대체로 무신고자는 영세사업자 및 영세소득자 등이 대부분이어서 현실적으로 이들을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따라서 과도기적으로 무신고 가산세 제도를 활용하여 제재하고, 당분간 처벌은 유보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다섯째, 조세포탈범의 자진신고의 경우,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의 경우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의견은 이론상 논란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 경우 처벌규정을 유지하게 되면 수정신고의 경우 원천적 오류나 누락에 기인한 수정신고를 막는 장애요인으로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독

일의 경우 세무사찰 개시 이후 추가신고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벌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음 조세포탈범의 예외규정 삭제 여부와 관련해서는 우선 조세포탈범의 구성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면 독일의 조세기본법 등이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문에도 제시되어 있는 현행법의 조세포탈범의 예외규정은 추상적이고 불확실한 규정 이어서 해석상 논란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추상적이고 불확실한 개념이 아니라 어떠한 행위가 조세포탈에 속하지 않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한 예외규정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체납범의 형량조정과 관련하여 처벌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과세관청이 국세체납범에 대하여 광범위한 강제수단 즉, 체납처분권, 가산금, 증가산금, 납세증명서제출제도, 관허사업제한제도 등 강제수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조세채권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공무원에게 있는 것이지 납세자를 비난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처벌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원천징수의무위반범의 형량조정과 관련하여 원천징수의무불이행범은 최종적으로 불납부범에 흡수가 되므로 이 경우 처벌규정을 두지 않는다 하더라도 별문제는 없지만 굳이 처벌규정을 존치해야 한다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너무 과중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세금계산서범의 형량조정의 경우 제2안에 동

의하며, 2항 및 3항의 경우도 제2안에 찬성한다. 자료상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에 동의하지만 슬라이딩 제도를 채택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며 정액형(확정형) 벌금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체납처분면탈법의 형량조정의 경우는 개정안에 동의한다.

납세증명표지 불법사용범의 형량조정과 관련하여 개정안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과중한 면이 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도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또한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변조된 납세증명표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2년 이하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하는 것이 조세포탈범에 대한 처벌과 균형을 맞추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개정안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내용 중 ‘소인된 인지의 재사용’은 삭제하여야 할 것이다. ‘소인된 인지의 재사용’은 인지세포탈범으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조항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기장의무 위반범의 형량조정 등과 관련하여 조세포탈을 위한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세법에 의한 장부 소각, 파기·은닉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안에 찬성한다. 또한 개정안의 “세법에 의한 장부의 불비치나 무기장 또는 허위기재”와 관련하여 소득세나 법인세의 경우에는 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 추계과세를 하거나 가산세 제재, 영세사업자

의 경우 기장세액공제를 하는 등 여러 가지 제재와 혜택을 구비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제재를 위해서라면 가산세를 높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단지 부가가치세와 같은 간접세의 경우는 가산세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경우는 조세질서범 안에 포함시켜 벌금, 과태료를 부과하면 될 것이고, 소득세, 법인세까지 확대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결론금 과대계상의 경우는 조세포탈범과 크게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시켜 조세포탈범과 제재수준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조세질서범의 형량 및 처벌대상조정과 관련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는 그 금액이 다소 높다는 느낌이고 200~300만원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과태료 처벌을 한다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현행 처벌체계와의 상충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먼저 과태료를 신설한다면 가령 ‘500만원 이하’라는 표현보다는 ‘500만원’ 등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할 것이다. 벌금은 판사가 양형하지만 과태료는 양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현행법 제13조의 조세질서범은 일정기간 경과 후에 다른 조세법에 흡수된다. 따라서 법적 경합이 발생되어 하나의 행위자에 대하여 이중처벌 가능성이 있으므로 과태료 신설의 경우 형벌과의 관계를 명시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과태료 신설의 경우 가산세, 형벌, 그리고 과태료라고 하는 3중 처벌문제의 발생 여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도 고려해야 할 것

이다.

조세범처벌절차법에서 탈세제보 교부금 지급 규정의 개정안 중 “추징한 포탈세액의 5~15%(상한 1억원)를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명시적인 표현으로 수정하여야만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무공무원의 고발을 공소제기의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이 경우 조세질서법 및 조세범처벌법상의 처벌규정이 벌금형이나 과료형으로 처벌하는 경우만 공소제기요건으로 남겨두고, 징역형을 과할 수 있는 범죄유형의 경우는 세무공무원의 고발을 공소제기 요건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검찰의 독자적인 수사권에 의하여 소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효과적인 징세를 위한 보조수단으로 기능해야



朴時龍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법의 개정 필요성 및 배경, 그리고 제시되어 있는 내용들에 대하여 대체로 공감한다.

조세범처벌법은 경제 행위를 하는 모든 개인 및 법인에게 막강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 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역설적으로 말하면 법 자체를 준수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과 조세 범법행

위가 상당히 광범위하게 만연되어 있는 우리 사회의 단면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조세범처벌법은 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은 당연하지만 효과적인 징세를 위한 하나의 보조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조세범법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조세제도 자체가 불합리하다는 문제, 조세범처벌 자체가 너무 경미해서 법을 어기더라도 처벌 확률 및 형량이 낮다는 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최근 조세범 처벌건수가 감소하는 것이 어떤 원인에 기인하는지 궁금하다.

개정안의 제안서에서는 대체로 벌금이 10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최고벌금 수준이 우리의 소득 수준이나 기타 선진국의 예를 참조하더라도 다소 과중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된다. 제안서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조세범의 발생률이 그다지 높지 않다면 최고 금액을 무리하게 높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더욱이 조세 포탈의 경우 벌금형을 대폭 상향한 것이 특징으로 나타나는데 사안에 따라 벌금상한을 하향조정할 수 있는 것은 낮추는 것도 좋을 듯 하다.

구체적인 각론 측면에서는 우선 조세포탈범 형량조정과 관련하여 세목별 차등 폐지, 확정벌금형으로의 전환 등 기본적인 개정방향에 동의하며 제2안이 적절한 안으로 생각된다. 조세포탈범 예외규정 삭제 여부와 관련해서는 예외규정을 삭제한다는 제1안에 동의한다.

원천징수의무위반범의 형량조정과 관련하여 원천징수불이행범과 원천징수불납부범을 각각

분리하여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김완석 교수의 의견에 동의하며, 세금계산서범의 형량조정 등과 관련하여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제1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세무공무원의 가중처벌규정 삭제 여부와 관련하여 조세공무원에게만 가중처벌할 필요성이나 정당성이 없으므로 이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에 동의한다.

마지막으로 특가법상의 조세포탈의 가중처벌 규정(제8조)을 삭제하고 조세포탈죄에 대한 처벌을 조세범처벌법으로 일원화시키는 안도 바람직한 것 같다.

조세범의 형사벌 처벌에는 신중해야



嚴基雄
대한상공회의소 이사

본 토론자는 이번 개정안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업의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법 개정의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동감한다. 조세범은 형사범이라기보다는 행정법이며, 국고수입을 감소시키는 재정범이란 특징을 갖고 있다. 따라서 조세범법행위는 사회윤리적인 범죄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개정안의 전체적인 방향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다섯 가지 사항을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 상습범과 누범에 대한 처벌을 가중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초범일 경우에는 처벌을 유예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예방효과면에서 이러한 방향은 동일범죄자가 재범할 우려를 방지하는 특별예방효과에 초점을 두는 것이 현실에 더욱 잘 맞는 것 같아 제시하는 것이다.

둘째, 세무공무원의 고발에 의한 공소제기 요건은 특가법상에서 예외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함께 삭제하여 공소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과세권을 가진 세무공무원이 공소권을 갖는 것이 조세범처벌법의 체계와 성격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셋째, 통고처분제도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면이 있는데 이 제도를 조세범처벌법의 전단계로 유지하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이 제도 역시 초범일 경우에만 적용하고 상습범이나 누범인 경우 적용을 배제해야 할 것이다. 통고처분 제도는 특별예방효과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으며 이 제도에 대하여 논란이 많지만 사법부의 업무량 경감이라는 측면에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제도라고 판단된다.

넷째, 미수범이나 과실범은 조세범 처벌대상에서 제외하여 위헌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앞으로는 조세범처벌법의 체계가 위헌방지, 상당성금지, 과잉금지 등 3대원칙에 보다 충실해야 한다.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위헌소송이 늘어나고 국가가



폐소할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다섯째, 조세범처벌법의 처벌규정을 형법 형량에 가깝게 하더라도 징역과 벌금형을 선택하는 경우에 처벌법의 형량을 형법보다는 다소 가볍게 하고 벌금형은 다소 무겁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신체적인 형량보다는 재산적인 측면의 벌로 처벌하는 것이 이러한 재정법에 대한 처벌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의견을 제기하는 이유는 조세범법행위의 예방효과도 중요하지만 처벌대상자의 생활안정 및 기업유지라는 측면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일단 조세범으로 확정되어 처벌대상이 되면 경제활동의 제약으로 인해 생활에 위협을 받게 되고 이는 다시 세원축소 등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형사벌로 처벌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납세도의가 낮은 사회에 처벌법 규정을 강화한다고 해서 납세도의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며, 처벌법 강화로 전과자를 양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납세의식 개선이라는 것은 처벌이라는 사법적 수단 이외에 정부의 홍보, 제도개선, 교육, 세무행정기술의 과학화 등을 통해 더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사법적 처벌은 최후의 예방수단에 불과하다고 생각된다.

이제 각론적으로 개정 제안서에 실린 내용들에 대하여 간략히 의견을 제시하겠다.

먼저 징역과 벌금의 병과규정 삭제 여부와 관련하여 제2안과 같이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누범인 경우에는 병과가 가

능도록 하여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무면허 주류 제조·판매범의 형량조정 등과 관련하여 제2안인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동의하며 이 경우에도 재범인 경우 징역과 벌금형을 선택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세포탈범 형량조정 등과 관련하여 초범인 경우 제2안, 재범인 경우 제1안으로 하고 자진수정신고납부하는 경우 일정한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경우는 형 감면이 아니라 형 기소중지까지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조세포탈범 예외규정 삭제 여부와 관련하여 김완석 교수의 주장과 같이 과세행정의 안정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현행을 유지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체납범의 형량조정 등과 관련하여 제1안을 찬성하며 재범인 경우는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원천징수의무위반범의 형량조정과 관련하여 원천징수불납부의 단서규정 “단, 납부하지 않은 세액이.....”는 재범이나 누범인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세금계산서범의 형량조정 등과 관련하여 개정안의 내용 중 “합계표를 허위기재해서 제출하는 자도 위와 같이 처벌함”은 “합계표를 고의로 허위기재해서 제출하는 자도 위와 같이 처벌함”으로 수정하여 고의성 입증에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단서조항인 “단, 매출세액이 3천만원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한 금액까지 벌금부과가 가능함”이라는 규정은 과잉금지에 위배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납세증명표지 불법사용범의 형량조정 등과 관

련하여 징역형은 절반으로 감하고 벌금형은 2배로 가중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기장의무위반법의 형량조정 등과 관련하여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소규모사업자에 대하여 앞으로 과세특례제도가 없어질 경우에 대비한 대응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장부 비치불이행법은 행정의무 위반법이기에 때문에 과태료 부과가 적정한 제재수단이라고 생각되며, 또한 전산매체 형태의 장부비치 불이행법의 경우는 가벼운 과태료 부과가 바람직할 것이다.

조세질서법의 형량 및 처벌대상 조정과 관련하여 백지영수증이나 백지세금계산서를 받았다가는 사실만으로는 처벌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조세포탈의 명백한 혐의가 있는 경우로 그 대상을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고방해법의 형량조정 등과 관련하여 징역형을 줄이고 벌금형을 높이되, 협박·폭행 등에 대해서는 형법을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있어서 탈세제보 교부금 한도는 일반범죄 제보의 경우, 예를 들면 간첩신고시의 보상 정도를 참고하는 것이 좋을 듯하며, 이러한 적용이 어렵다면 일반습득물 보상규정 등에 준하는 형평의 도모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개정안에서 제시한 '상한 1억원'은 탈세예방 효과의 제고를 위해서는 미흡한 수준이라고 사료된다.

특가법상의 조세포탈의 가중처벌규정과 관련하여 개정안의 제1안에 찬성하며 누범인 경우 제2안을 적용하여 재발방지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이외에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현재 종업원이 잘못했을 때 지휘감독권이 있는 사용자를 처벌하는 양벌규정은 법 체계상 과실범처벌규정이 없는 한 위헌의 소지가 크므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조세범처벌법과 관련이 많은 국세청 훈령의 벌과금 상당액의 양정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통고처분제도가 조세범처벌법의 전 단계로 운영되어야 한다면 포탈액의 2~5배에 달하는 벌과금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특히 이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벗어나므로 벌금형 수준으로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조세범처벌법의 개정은 예방효과 증대, 납세의식 제고가 목적이므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할 때 개정안을 상당부분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자유형 중심주의로의 이행을 분명히 해야



河昇秀 변호사

현재 조세범처벌법의 적용대상은 광범위하지만 법적용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점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제안서에서는 법적용이 부진한 원인을 지나친 엄벌주의 때문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잘못된 원인분석인 것 같다.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세무당국의 처벌의



지가 부족하였던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는 세무조사시 근거에 의한 세무조사가 아니라 납세자와 협의에 의해서 추징하는 관행과 세무조사의 과학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조세포탈범의 형량조정과 관련하여 일본의 경우도 직접세의 포탈인 경우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시켰는데 직접세 포탈범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때가 1970년이며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조세법에 대하여 책임형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조세범을 일반 형사범으로 처벌하고자 한다면 과거의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조세포탈범에 대하여 금전제재 중심주의와 자유형 중심주의에 대한 이론적 논쟁이 있었지만 선진국에서는 자유형 중심주의가 정착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조세범처벌법의 개정방향 측면에서 자유형 중심주의로의 이행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현재 자유형 중심주의로 이행하는 데에 장애요인들이 되는 규정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이의 대표적인 경우가 통고처분제도인데 이는 통고처분받은 금액만 납부하면 그것으로 형사처벌이 종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강력한 제재수단이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일본의 경우 직접세에 대해서는 통고처분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최소한 직접세 포탈에 대해서는 통고처분제도를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며 자유형 중심주의로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 법원이 조세범에 대한 벌을 광범위하게 인정해줄 가능성이 있으

나 현재는 고발요건 때문에 기소 자체가 잘 안되고 있어서 법원에서 선고할 기회마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특가법상 연간 2억원 이상의 포탈액이 있을 때만 고발 없이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더욱 확대하여 직접세에 대해서는 통고처분과 고발 없이 기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결국 직접세에 대해서는 통고처분제도와 고발공소제기요건을 모두 폐지하는 것이 자유형 중심주의로 이전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특가법 규정을 삭제하고 조세범처벌법으로 일원화하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고발요건 및 통고처분제도의 폐지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상습범의 가중처벌에 대해서는 동의하며 탈세체보보상제도의 경우는 보상규정을 임의화할 것이 아니라 보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현재 미미한 수준인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한 조치이다.

조세포탈범의 형량조정과 관련하여 벌금액을 확정, 정액화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며 슬라이딩 규정은 일본에도 있으므로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형법이론상 슬라이딩 규정이 일단 적용된 뒤 경합법 규정이 적용되므로 가중제한규정과 관계가 없고, 포탈세액이 큰 경우 벌금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기장의무위반범의 형량조정 등과 관련하여 무기장, 무신고의 경우 현재 광범위하게 이루어지

고 있기 때문에 바로 형사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김완석 교수의 의견과 같이 일단 가산세 등 다른 수단에 의하여 무기장, 무신고율을 낮춘 다음에 형사처벌문제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본 토론자는 조세범처벌법을 개정한다고 해서 조세범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 법 개정보다는 법 집행이 더욱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 조세범처벌법이 실효성이 없었던 이유는 법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점에 기인하고 있다. 따라서 법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범칙사건조사전문인력 확보, 공소권이 있는 검찰과 세무공무원(범칙사건 조사전문인력)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범칙사건의 조사나 고발에 있어서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세무조사중에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실, 특히 조세포탈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범칙사건조사로 전환하여야 하는데 현재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범칙사건조사로 원활히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국세청 내부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통고처분제도나 고발요건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들 제도를 폐지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고발을 활성화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야만 조세범처벌법 개정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

보다 실효성 있는 법이 되도록 개정 추진

李在賢 /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장

오늘 공청회에서 제시된 조세범처벌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하여 토론자 여러분께서 토론해주신 여러 의견들, 특히 일부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들 그리고 저희가 이 시안을 준비하면서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검토하는 한편, 조세범처벌법의 집행기관인 법무부의 의견을 참고하여 정부 개정안을 확정하고자 한다. 오늘 토론 과정에서 의견이 대체로 일치하는 부분도 있고, 상반되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이 시안이 상당히 이상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형법을 적용하고 조세범처벌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 중 삭제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삭제하려는바, 일부 조항의 경우 조세공무원의 실무집행의 편이를 위해 형법의 조항과 중복되는 면이 있더라도 그대로 존치해야 할 것 같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세무공무원의 고발권 같은 것은 아직은 시기적으로 좀 이른 느낌이 있기 때문에 본 개정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징역과 벌금의 병과규정 삭제 여부와 관련된 부분 역시 이론적으로는 삭제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조세포탈되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몰수대상 물품 규정의 경우도 일선 세무공무원들이 나름대로 형법규정에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수정하여 존치해야 할 것으로 판

단된다.

조세포탈범 예외규정은 단순한 예외규정일 수도 있겠지만 세무공무원들에게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다.

각종 형량의 조정문제는 토론자 여러분들의 의견이 상충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본 시안을 토대로 하고 공청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다.

객석토론

논리적 문제 발생 소지 줄여야

송쌍종 /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발표자와 토론자 여러분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지만 저는 논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우선 기장의무위반범의 형량조정과 관련하여 이론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기장의 무위반범은 범죄유형으로 볼 때 형식적 탈세범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다른 형식적 탈세범은 규정상 징역형과 벌금이 병과되고 있는데 반하여 기장의무위반범은 현행법상(§12의3) 50만원 이하의 벌금형만 부과하고 있어서 논리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다른 형식적 탈세범처럼 병과해야 한다.

또한 원천징수불이행범의 형량조정과 관련하여서는 원천징수불이행범과 유사한 직접소비세 징수문제는 현행법상 처벌규정이 없다. 따라서 원천징수불이행범 및 불납부범을 처벌한다면 논리상 직접소비세부징수, 불납부도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과세 유흥장소 경영자나 과세장소 경영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단순무신고범에 대한 제재는 어떠한 형태로든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행법은 조세위해범(질서범)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나 조세위해범은 과세권행사방해범과 협력의무위반범으로 구분될 수 있고 또한 세부적으로도 많은 유형이 있으므로 그 세부 유형에 따라 처벌규정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주요국의 조세제도

- 대만의 조세(II) -

* <주요국의 조세제도>는 대만편이 2회에 걸쳐 연재되고 있습니다. <편집자 주>

韓 相 國 /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III. 지방세

1. 영업세

대만 정부는 1928년에 전국재정회의를 소집해서 청나라 때부터 시행해오던 內地物品 통과세인 釐稅를 폐지하고 영업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1931년에 「營業稅法」을 제정·공포했으며, 각 성에서도 「營業稅徵收章程」을 제정해서 財政部の 심사·비준을 받음에 따라 영업세가 본격적으로 부과되기 시작했다. 그 후 영업세는 여러 차례 수정되었지만 1985년 11월에 영업세법을 대폭 개정해서 부가가치세제도를 도입하였고, 1986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영업세의 과세대상은 대만 내에서의 물품 또는 노무의 판매 및 물품의 수입이다. 따라서 납세의무자는 물품 또는 노무를 판매하는

영업인 또는 輸入物品의 수취인이나 소지인이다.

영업세의 일반세율(부가가치세형)은 최저 5%부터 최고 10%의 범위 내에서 行政院이 결정하게 되어 있으며, 현재는 5%이다. 그 외의 특수한 세액계산(총액형 영업세)에 의한 세율도 존재하고 있으며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일반세액의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다.

납부세액 = 순매출세액 - (순매입세액 - 제19조의 매입세액) - 전기 累積留抵稅額

순매출세액 = 매출액 × 세율 - 매출환입 또는 에누리 × 세율

순매입세액 = 매입액 × 세율 - 매입환출 또는 에누리 × 세율

전기의 累積留抵稅額 : 전기의 일부세액으로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留抵해야 하는 세액

영업세의 종류·세율·계산기초·매입세액의 공제여부 및 적용대상의 관계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수출품이나 수출과 관계 있는 노무 또는 국내에서 공급하지만 국외에서 사용되는 노무, 국제선 운수 등은 영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농어촌 정책과 관계된 것, 교육·문화와 관계된 것, 군사와 관계된 것 등은 면세대상이다.

2. 지가세

지가세의 과세대상토지는 田賦¹⁾가 과세되지 않는 토지로서 지가가 규정(산정)되어 있는 토지이며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다.

- ① 토지소유권자
- ②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경우에는 저당권자
- ③ 점유허가를 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점유허가를 받은 자
- ④ 개간승인을 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경작권을 가진 자
- ⑤ 공유에 속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관리기관 또는 관리인.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각 지분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공동 공유시에는 전체 공동공유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토지소유권자가 동일 直轄市·縣(市)에 2필지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토지의

<표 1> 세율계산기초와 적용대상

영업세 종류	세율	계산기초		매입세액 공제여부	적용대상
		실제매출액	사정매출액		
부가가치세	0%	√		전액환불가	수출 및 수출로 보는 것
형영업세	5%	√		전액공제가	일반세액계산영업인
총액형 영업세	0.1%		√	10%공제가	농산물을 판매하는 소규모 영업인, 농산물 도매시장의 위탁판매인
	1%		√	10%공제가	소규모영업인, 財政部의 規定에 의해 매출액의 신고를 면제받은 기타 영업인
	1%	√		불가	재보험수입
	5%	√		불가	은행·보험·투자신탁·증권·단기채권업
	5%	√	√	불가	전당업
	15%	√	√	불가	나이트클럽, 오락프로그램이 있는 음식점
	25%	√	√	불가	주점, 여종업원이 있는 디방

1) 田賦(farm land tax)란 농지의 수익에 대해서 부과되는 농지세의 일종이며, 현물의 양곡에서 징수하는 전통이 오래된 조세이다. 징수된 양곡은 穀價調節用으로서, 또 軍糧으로서 활용되었다. 경제발전에 따라서 1988년부터는 부과되지 않고 있다.

사용인이 각각 다른 상황에서 이들 토지에 대하여 지가세가 누진세율로 계산·부과된다면 각 토지의 사용인은 사용하는 토지의 지가 비율에 따라 지가세를 대리납부해야 한다.

지가세의 기본세율은 10%이다. 토지소유권자의 지가총액이 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直轄市 및 縣(市)의 累進起點地價²⁾에 미달하는 경우에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토지소유권자의 지가총액이 누진기점지가를 초과하는 경우, 누진기점지가의 배수에 따라 15~55%에 이르는 5단계의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이상의 내용에 따라 지가세의 세율체계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일반토지의 경우 세액의 계산은 아래와 같다.

$$\begin{aligned} \text{납부세액} &= \text{과세지가} \times \text{해당누진세율} - \text{누진차액} - \text{감세액} \\ \text{감세액}^3 &= (\text{감세토지과세지가} \times \text{해당누진세율} \\ &\quad - \text{누진차액}) \times \text{감세비율} \\ &\text{또는 감세 토지면적 비율} \end{aligned}$$

3. 토지증치세

토지증치세는 지가가 규정된 토지의 소유권이전 또는 그러한 토지에 抵當權(典權)을 설정할 경우에, 해당토지의 증가된 가격총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자본이득세의 일종으로서,

<표 2> 지가세의 세율체계

세 율 구 분	대 상 토 지 의 내 용	세 율
기본 세 율		10 %
누진 세 율	- 과세지가가 누진기점지가의 5배 이내 - 과세지가가 누진기점지가의 5 ~ 10배 - 과세지가가 누진기점지가의 10 ~ 15배 - 과세지가가 누진기점지가의 15 ~ 20배 - 과세지가가 누진기점지가의 20배 이상	15 % 25 % 35 % 45 % 55 %
우 대 세 율	- 자기거주(자용)의 택지 - 국민주택용지	2 % 2 %
기 타	- 공업·광업용지, 사립공원·운동장용지, 교실·명승고적지, 공유지(공공용은 면세) - 공공시설보류지, 단, 사용하지 않는 것은 면세 - 국방, 정부기관, 교육, 교통, 수리, 급수지, 염전, 종교, 의료, 위생, 자선 또는 교역사업용 등으로 제공하는 토지	10 % 6 % 면 세

자료 : 土地稅法 第16條

2) 누진기점지가란 지가세의 누진세율의 적용을 개시하는 지가로서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text{누진기점지가} = \frac{\text{직할시나 현(市)의 규정지가 총액} - (\text{공·광·농업용지 지가} + \text{면세지 지가})}{\text{직할시나 현(市)의 규정지가 총면적} - (\text{공·광·농업용지 면적} + \text{면세지 지가})}$$

3) 감세액이란 土地稅減稅規則의 각 조항에 규정되어 있는 감세대상 토지의 감세액을 말한다.

개인의 노동이나 자본을 투자하지 않았는데도 산출된 불로소득적 성격의 가치증가분(Land Value Increment)을 과세표적으로 한다.

따라서 토지증치세의 납세의무자는 토지를 유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원소유자, 토지를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자가 되고,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자가 된다. 과세표준은 증가된 토지의 價値總額(土地漲價總數額)이 되며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begin{aligned} \text{증가된 가치총액} &= \text{신고한 土地移轉現值} - \text{원규정지가 가치총액} \\ &\text{ 또는 前回 移轉時의 신고한 土地移轉現值} \times (\text{일반도매물가지수} / 100) \\ &\quad - (\text{土地개량비} + \text{공정수익비} + \text{토지구획정리시 부담했던 총비용}) \end{aligned}$$

세율은 누진세율과 우대세율을 혼용하고 있는 데(〈표 3〉 참조) 세액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① 일반토지

$$\begin{aligned} \text{납부세액} &= \text{土地漲價總數額} \times \text{누진세율} - \text{누진차액} - \text{감세액} - \text{抵繳稅額} \\ \text{감세액} &= (\text{감세되는 土地漲價總數額} \times \text{누진세율} - \text{누진차액}) \times \text{감세비율} \end{aligned}$$

② 우대세율이 적용되는 토지

$$\text{납부세액} = \text{우대세율의 土地漲價總數額} \times \text{우대세율} - \text{감세액} - \text{抵繳稅額}$$

③ 누진세율과 우대세율이 함께 적용되는 토지

$$\begin{aligned} \text{납부세액} &= (\text{土地自然漲價總數額} - \text{우대세율의 土地自然漲價總數額}) \times \text{누진세율} \\ &\quad - \text{누진차액} + (\text{우대세율의 自然漲價總數額} \times \text{우대세율}) - \text{감세액} - \text{抵繳稅額} \end{aligned}$$

4. 房屋稅

房屋이란 토지에 고정되어 있는 건축물을 말하며, 영업용·업무용 또는 주택용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방옥세 과세대상은 토지에 부착된 각종 방옥과 그 방옥의 사용가치를 증가시키는 기타 부속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즉 방옥과 건축물(이하 건축물로 약칭함)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납세의무자는 건축물의 소유권자 또는 저당권설정자이다. 공유건축물은 공유인 1인을 대표로 추정해서 납세하게 한다.

세율구조는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비례세율

〈표 3〉 토지증치세의 세율체계

세율구분	대상토지의 내용	세율
누진세율	- 土地漲價總數額이 100분의 100 미만	40%
	- 土地漲價總數額이 100분의 200 미만	50%
	- 土地漲價總數額이 100분의 200 이상	60%
	(단, 土地漲價總數額이란 原規定地價 또는 前回の 讓渡價格에 대한 倍數임)	
우대세율	- 自用住宅用地 (도시지역 300㎡, 비도시지역 700㎡)	10%

자료: 土地稅法 第33條.

로서 <표 4>와 같으며, 최고세율과 최저세율의 범위 내에서 부과된다. 부과세율은 縣(市) 政府에서 결정하는데 현재는 최저세율에 의하여 과세되고 있다. 세액의 계산은 다음과 같다.

$$\text{납부세액} = \text{房屋現值} \times \text{徵收率(稅率)}$$

여기에서 房屋現值(標準價格)는 不動產評價委員會가 원가법⁴⁾에 의해서 산정하는데, 구체적인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다.

$$\text{房屋現值} = \text{주택면적} \times (1 - \text{감가상각률} \times \text{경과연수}) \times \text{가로등급조정률} \times \text{査定된 단가}$$

상기식의 査定된 單價란 재건축가격을 의미한다.

房屋現值(標準價格)를 산정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면 <표 4>와 같다.

<표 4> 방목세의 세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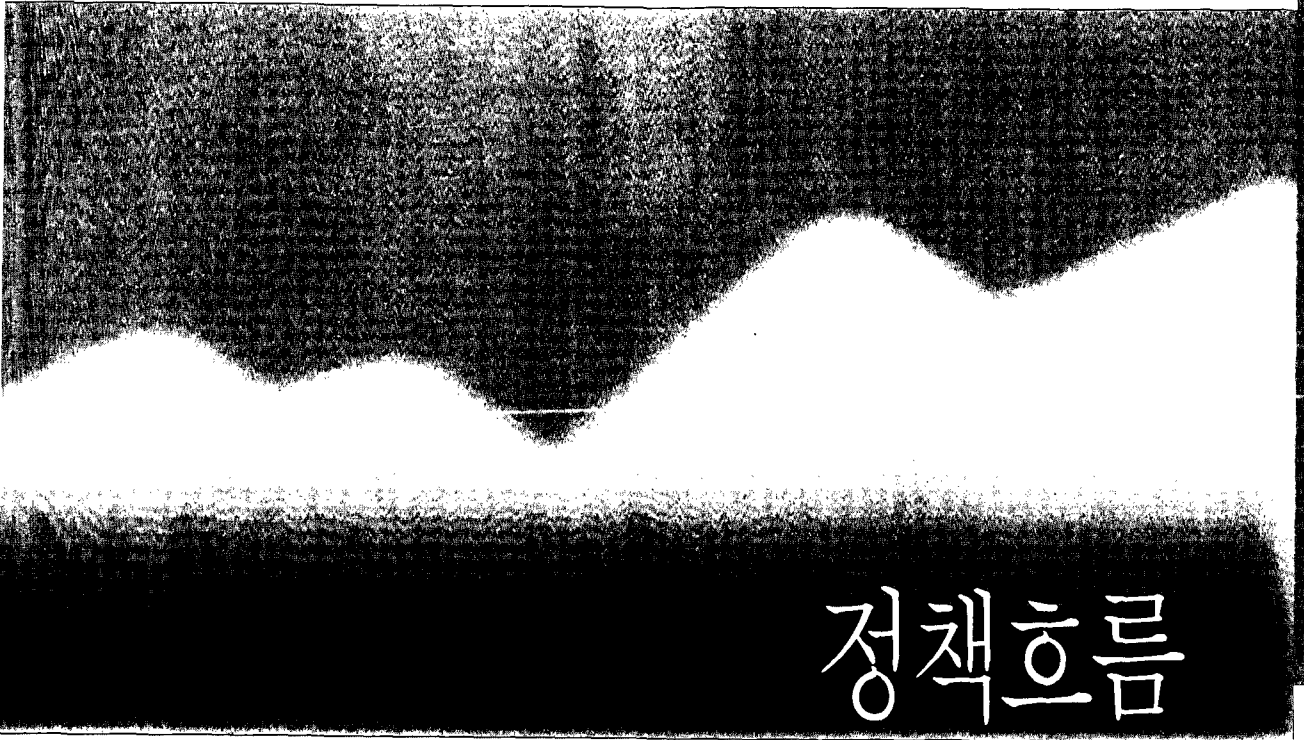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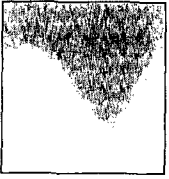
(단위 : %)

건축물의 사용 유형		세 율	
		최 저 세 율	최 고 세 율
주거용건축물	(1) 자가 거주용	1.38	1.38
	(2) 자가 비거주용	1.38	2
비주거용건축물	영 업 용	3	5
	(3) 비영업용	1.5	2.5
(4) 주거용과 비주거용의 겸용 건축물		실제면적을 기준으로, 주거용과 비주거용에 사용되는 면적에 따라 각각 세율을 적용(단, 비주거용의 과세면적이 최소한 전체 면적의 1/6은 되어야 함)	

- 주 : 1. 자가 거주용이란 자신이 직접 거주하는 건축물임(自住房屋).
 2. 자가 비거주용이란 자신이 직접 거주하지 않는 건축물임(非自住房屋).
 3. 비영업용이란 개인병원, 자유직업자들의 사무소 등에 사용되는 건축물.
 4. 예를 들면, 주상복합건물같은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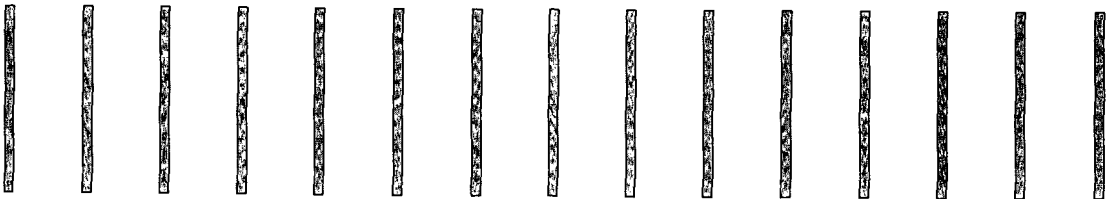
자료 : 房屋稅條例, 第5條

4) 重建成本法(reproduct cost approach) 또는 重值成本法(replacement cost method)이라고도 한다.



정책흐름

1999 정기국회 제출 세제개편(안)



1999 정기국회 제출 세제개편(안)

※ 이 자료는 재정경제부 세제실에서 1999년 8월 28일에 발표한 「1999 정기국회 제출 세제개편(안)」의 전문입니다.

I. 基本方向

- 금년도 세제개편에서는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악화된 所得分配構造를 개선할 수 있도록 公平課稅 실현과 일자리 창출 지원에 역점을 두는 한편, 세정개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여건변화에 부응하여 세제를 보완
- 지난 臨時國會에서 봉급생활자들의 세부담을 대폭 경감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활성화,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 설비투자 확충 등 일자리 창출을 우선적으로 지원
- 금년 定期國會에서는 8.15 대통령 발표 국정과제 후속조치로서 기 발표(8. 16)한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세제개혁방안」의 입법을 추진
 - 금융소득 종합과세 재실시를 위한 입법을 추진
 - 상속·증여세제를 강화하여 세금 없는 富의 代물림을 방지
 - 호화·사치주택의 기준 및 과세방법을 현실에 맞게 조정
 - 부가가치세 특례과세제도가 고소득 자영업자의 조세회피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개선
 - 중산·서민층이 주로 소비하는 품목에 대한 특소세 폐지

- 이에 추가하여 금년 定期國會에는 다음과 같은 세제개편안을 함께 제출
 - 稅政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21C 선진세정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稅政改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 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자료의 국세청 통보를 의무화하는 특례법 제정
 - 국세공무원의 전문성·청렴성·사명감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국세공무원법 제정
 - 조세범 처벌제도의 실효성을 제고
 - 또한,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부응하여 세제를 합리화·국제화해 나가는 등 적극 보완
 - 地域間 산업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을 위한 획기적인 세제지원방안 마련
 - 법인가간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조정제도 도입 및 기업구조조정 지원세제의 보완 등 기업과세제도 개선
 - 세금우대저축 정비 및 양도소득세의 신고납세제 전환
 - 국제기준에 맞추어 酒稅率 체계를 개편하고 주류행정의 규제를 완화
 - 국제징수절차 및 세무사·관세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 관세율 체계의 일부 세율 불균형 현상을 시정하고 관세 자유지역제도 도입

- 이와 함께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을 위한 1단계조치로 「1998년 직접세 조세지출보고서」를 금년 정기국회에 세입 예산안의 참고자료로 제출

○ 그동안 이번 세제개편안을 마련함에 있어서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의 4개 분과위원회와 관세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하였으며, 앞으로 8월 27일(금) 당정협의 및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 9월하순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임.

II. 所得分配 改進黨을 위한 細部對策

1. 相續·贈與稅 課稅 強化

가. 變則 相續·贈與에 대한 증여의제 범위 확대

현 행	개 정(안)
<p>〈신 설〉</p> <p>- 자녀 등이 주주로 있는 2년 이상 결손법인·휴폐업중인 법인에 부모 등이 다음의 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준 경우 자녀 등에 증여세 과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산의 증여 • 채무의 면제, 변제, 인수 • 재산의 저가양도, 고가매입 등 	<p>- 자녀 등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현저히 낮은 이자율로 대여하는 경우 정상이자율과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1년내 1억원 이상 대부 • 정상이자율 :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당좌대월이자율(현재 11%) <p>-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범위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전·부동산 또는 용역 등의 무상 또는 저가 대부·제공 등을 추가

〈改正理由〉

- 특수관계자간 금전의 무상대부 및 결손법인을 통한 이익분여 행위에 대하여 정상과세

〈適用時期〉 2000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

나. 相續·贈與稅 課稅의 实效性 提고

(1) 金融資料 一括照會 대상자의 범위 확대

현 행	개 정(안)
<p>- 상속세 : 상속재산 30억원 이상 또는 탈루혐의가 있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p> <p>- 증여세 : 30세 미만 수증자</p>	<p>-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 금액과 나이 제한 없이 모두 조회</p> <p>- 다만, 단순오류 등의 경우는 조사대상에서 제외</p>

〈改正理由〉

- 고액재산가의 금융재산에 대한 과세누락 사례방지

〈適用時期〉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

(2) 相續開始前 處分財産 등의 상속추정 강화

현 행	개 정(안)
<p>-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가액 및 부담한 채무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자녀 등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p> <p>• 대상 처분재산 : 부담채무 금액 : 상속 전 1년 내 2억원 이상인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금액 확대 • 2억~5억원 이하 : 1년 이내 • 5억원 초과 : 2년 이내

〈改正理由〉

- 고액재산가들이 상속개시 수년 전부터 재산을 처분하는 방법 등으로 사전상속에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

〈適用時期〉 2000년 1월 1일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적용

(3) 上場株式에 대한 評價方法의 改善

현 행	개 정(안)
- 상속·증여일 이전 3개월간 증가평균액	- 상속·증여일 이전·이후 2개 월(총 4개월)의 증가평균액

〈改正理由〉

- 현행 제도는 과거 3개월간의 가격만을 평균함으로써 평가기
준일 이후의 미래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 미래가치가 반영되도록 개선하여 보다 균형있고 정확한 평
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

〈適用時期〉 2000년 1월 1일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

(4) 建物の 評價方法 개선

현 행	개 정(안)
- 일반건물 : 지방세법상 시가 표준액	- 국세청 기준시가
- 상업용·특수용도 건물 및 공 동주택 : 국세청 기준시가	- (현행과 같음)

〈改正理由〉

- 현행 건물의 평가방법인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약 3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 상업용 건물 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해 높게 평가되는 불형평 문제 해소

〈適用時期〉 2000년 1월 1일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

다. 既發表(8. 16) 對策 보완(세발심 재산분과위
심의결과 반영)

- 최대주주의 주식이 상속·증여될 경우 적용되는 할증률(현
재 10% → 최대주주 지분을 50% 이하 20%할증, 50% 초

과 30%할증)을

- 3년간 계속 결손법인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함.

○ 기업관련 공익법인 출연자 등의 이사취임 등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던 당초안을 비율제한 방식으로 변경

- 이사 총수의 1/5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되 이사 총수가 4
인 이하인 경우에는 1인 인정

2. 附加價値稅 課稅制度 개선

가. 신용카드 賣出傳票 福券制度 도입

현 행	개 정(안)
〈신 설〉	- 보상금 지급 대상 • 국내에서 재화·용역을 공급 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직불 카드영수증 포함)를 교부받은 자 • 다음의 것은 제외 • 불법대금업(카드깡) 및 위장 가맹점 거래분 •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카 드 사용분 - 소멸시효 •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그 지급 일로부터 3개월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당해 보상금은 국가에 귀속) -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 법」의 적용 배제 - 지급시기, 보상금액, 지급방법 등 구체적 사항은 국세청장예 게 위임

〈改正理由〉

- 신용카드 사용 확대 유도로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
- 최종 소비단계(음·숙박등)에서의 과세자료 양성화는 제조·도매 등 상위 유통단계에서의 세금계산서 등 과세자료 양성화로 연결

〈適用時期〉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

(2) 代理·仲介 등에 대한 별도 기준 폐지

현 행	개 정(안)
- 과세특례자 기준금액 :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 •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도급 : 연간 매출액 1,200만원	- 간이과세자로 전환 • 별도 기준 폐지

〈改正理由〉

- 대리·중개 등을 별도 기준하에 관리할 실익이 미미하고 제도가 복잡하므로 단순화

나. 納稅便宜를 위한 制度改善

(1) 豫定告知 대상 확대

현 행	개 정(안)
- 예정고지 대상자 • 간이과세자·과세특례자 • 연간 매출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개인 일반사업자 * 다만, 당기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기 대비 1/4에 미달하는 사업부진자 등은 신고 가능	- 예정고지 대상자 확대 • 개인사업자 전체로 확대 (+ 12만 7천명) * 당기 매출액 및 납부세액이 직전기 대비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등 신고가능

〈改正理由〉

- 연 4회 부가가치세 신고로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 및 징세기관 행정업무량 과다
- 국세청의 기능별 조직전환에 의한 세원관리부서 종사직원의 감소에 따라 관련 업무 축소 필요
- 신고납부할 수 있는 사업부진자 범위는 확대

〈適用時期〉 200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결정하여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3) 供給時期 이후 발행한 稅金計算書 매입세액 공제 허용

현 행	개 정(안)
- 공급시기 이후 교부된 세금계산서 • 매입자 : 매입세액 불공제	- 공급시기 이후 동일 과세기간 내에 교부된 세금계산서 • 매입자 : 매입세액공제허용 가산세는 부과

〈改正理由〉

- 공급시기 이후 교부된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동일 과세기간 내에 교부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여 납세편의를 제고
-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확립차원에서 지연교부 및 수취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

〈適用時期〉 200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4) 延滯利子を附加價値稅 課稅標準에서 제외

현 행	개 정(안)
-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이자 중 다음 금액을 한도로 과세표준에서 제외 * 공급가액 × 5/10,000 × 지연지급일수(이자로 간주)	- 공급대가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이자 전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 * 이자소득으로 과세

〈改正理由〉

-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세금계산서 교부 및 소득세 원천징수 등 불편 해소

〈適用時期〉 200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5) 事業者登録前 買入稅額 公제요건 완화

현 행	개 정(안)
- 사업개시 후 20일 이내에 등록한 사업자의 경우 • 등록 신청일 20일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 인정	-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매입세액 공제 허용 * 사업개시 후 등록인지, 사업개시 전 등록인지 불문

〈改正理由〉

- 사업개시 전에 등록한 사업자의 등록 전 매입세액에 대하여도 공제 허용

〈適用時期〉 200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6) 相續稅 등 物納의 경우 부가가치세 課稅對象에서 제외

현 행	개 정(안)
- 상속인이 사업용 자산을 물납하는 경우 •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 과세대상에서 제외

〈改正理由〉

- 물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시 국가로부터의 거래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납세자의 불편 초래

〈適用時期〉 2000년 1월 1일 이후 물납하는 분부터 적용

다. 其他 補完事項

(1) 外國法人에 대한 부가가치세 申告期限 특례제도 폐지

현 행	개 정(안)
-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 내국법인 :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 외국법인 : 과세기간 종료 후 50일 이내	- 외국법인의 신고기한 조정 • 내·외국법인 차별없이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改正理由〉

- 외국법인을 별도 관리함에 따른 행정부담을 줄이고 내·외국법인간의 역차별 시정

〈適用時期〉 200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2) 少額不徴收者が 自進納付시 징수

현 행	개 정(안)
- 소액부징수자의 경우 납부를 원하는 경우에도 징수 불가	- 소액부징수자가 자진납부시 징수토록 개선 • 다만, 무지로 인한 납부시 환급 가능

〈改正理由〉

-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이므로 사업자가 거래징수한 세액은 납부되는 것이 바람직

〈適用時期〉 200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3) 大衆 藝術行事에 대한 附加價値稅 면세

현 행	개 정(안)
-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공연 예술행사 • 비영리목적의 순수예술행사	- 비영리목적의 예술행사

〈改正理由〉

- 순수와 비순수의 명확한 개념구분이 어렵고 고부가가치 분야로서의 대중문화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대중예술에 대하여 지원

〈適用時期〉 200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3. 特別消費稅 品目 조정

가. 課稅對象 조정

(1) 特別소비세 과세대상 품목 조정

현 행	개 정(안)
-음식료품 • 청량 · 기호음료, 설탕, 커피 · 코코아, 자양강장품 -가전제품 • TV, 냉장고 · 냉동고, 세탁기, VTR, 전기음향기기(오디오, 앰프, 스피커 등) • 전기 · 전열 · 가스 · 액체연료 이용기구(전자레인지, 진공청소기, 전자계량기, 정수기, 가스오븐레인지, 순간온수기 등) -생활용품 • 화장품(팩, 선크림, 마스크라 · 아이섀도 등 색조화장품) • 크리스탈유리제품(식탁용구, 용기류, 실내장식용품 등) • 피아노 -대중스포츠 및 관련물품 • 스키 · 볼링용품 • 스키장, 퍼블릭골프장 이용료	- 과세대상에서 제외 • 다만, 에어컨, 프로젝션 TV 등 고가, 에너지 다소비 가전제품은 계속 과세

〈改正理由〉

- 중산 · 서민층의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식음료품, 가전제품, 생활용품, 대중스포츠 및 관련물품 등 소비가 대중화된 물품에 대한 특소세 폐지

〈適用時期〉 2000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스키장 · 퍼블릭골프장은 2000년 1월 1일 이후 입장부터 적용)

(2) 경륜장 신규과세

현 행	개 정(안)
<신 설>	- 경륜장 • 1인 1회 입장에 대해 200원

<改正理由>

- 그동안 경륜제도가 도입 초기단계(1994년 10월 개장)에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과세를 유보하여 왔으나
 - 최근 경륜인구가 연 2백만명 수준으로 성장단계에 있으므로 경마장과의 과세 형평 등을 위해 신규 과세
 - * 경마장 : 1인 1회 입장에 5백원 과세
- <適用時期> 2000년 1월 1일 이후 입장부터 적용

나. 其他 補完事項

(1) 어업용 선외내연기관 면세

현 행	개 정(안)
- 선외내연기관 과세 (특소세율 : 30%)	- 선외내연기관 중 어업용의 것은 면세

<改正理由>

- 1999년 1월 한·일 어업협정 발효에 따라 어선감축, 어획량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어선용 선외내연기관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 선외내연기관 : 동력기관과 프로펠러를 일체로 하여 1톤이하 소형 어선의 선미에 자유로이 탈부착이 가능한 엔진으로 고속력, 용이한 운전 등으로 단거리 운항에 편리
- <適用時期> 2000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신고 하는 분부터 적용

(2) 외국인전용판매장 결제 通貨제한 폐지

현 행	개 정(안)
- 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요건 • 결제통화를 외화로 제한	• 외화 이외에 원화, 신용카드 결제도 허용

<改正理由>

- 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외화로 결제한 경우에 한해 면세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 관세법상 보세판매장 등 여타 외국인대상 면세판매장과 마찬가지로 원화, 신용카드 결제도 허용
 - * 외국인전용판매장(5곳) : 동화면세점, 롯데호텔, 롯데월드, 롯데호텔출국장, 신라호텔
- <適用時期> 2000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되는 분부터 적용

Ⅲ. 稅政改革을 뒷받침하기 위한 制度改善

1. 課稅資料의 蒐集 및 管理에 관한 特例法 제정

가. 制定 背景

- 각종 과세자료를 국세청 통합전산망(TIS)에 집중시켜 정보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공평과세 및 세정의 과학화 추진
- 미국 등 선진국에서 과세자료의 수집에 활용되고있는 第3者 課稅資料 報告制度(third-party information reporting system)를 구축하여 자영업자 등의 과세자료를 양성화
- 현재는 국세기본법 및 총리훈령(행정기관의 과세자료 통보에 관한 규정)에서 공공기관의 과세자료를 과세당국에 통보토록 하고 있으나

- 체계적인 과세자료의 통보·수집 및 관리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이 미흡하고
- 광범위하고 다양한 과세자료를 행정력에 의존하여 수집하는 데에는 한계

- 따라서, 特例法の 제정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각종 과세자료가 국세청에 효과적으로 집중되도록 하고
- 통보된 과세자료는 조세목적 이외에는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秘密保障을 강화
- ※ 施行時期：2000년 7월 1일

나. 特例法案의 主要内容

(1) 通報對象機關

-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② 금융감독기관 및 금융기관
- ③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
- ④ 사업자단체·협회
- 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

〈改正理由〉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公共機關에 대하여 과세자료 통보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규정을 두어 효율적으로 과세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함.

(2) 通報對象 課稅資料

- ① 법률상 사업·행위 등의 인·허가자료
(예) 유흥주점, 식품류 등의 허가자료
- ② 법률상 제출받는 공사, 생산 등의 실적보고자료
(예) 정보통신·전기·소방시설 등 각종 건설공사실적 보고

자료

- ③ 법률상 작성·보관하는 재산 등의 명의변경에 관한 자료
(예)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택지, 분양권 등의 명의변경 자료

- ④ 국가기관 및 지자체가 교부받는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등
(예) 정부의 조달물자 구입이나 관급공사시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改正理由〉

- 公共機關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 중 과세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는 자료를 통보대상으로 함.
- 구체적인 자료명세는 시행령에서 규정

(3) 金融機關 課稅資料에 대한 특례

- ① 금융소득자료의 통보
- 특례법에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시행과 함께 통보되도록 함.

〈改正理由〉

- 1997년 12월 금융소득종합과세 유보시 金融實名法 부칙에서 금융소득자료의 국세청 통보를 중지
- 따라서, 금융소득자료의 통보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재 실시(2001년 1월)와 함께 시행

② 금융거래자료의 본점 일괄조회

- 조세탈루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로서 이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의 본점에 일괄조회
- 현재 금융실명법에 따라 조세탈루 혐의조사, 채납재산조회, 납기전징수, 상속증여재산 확인 등을 위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특정점포에 조회

〈改正理由〉

- 금융거래가 on-line 등으로 전국화되고 금융상품도 다양화 되어 특정 점포에 대한 금융거래 조회만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 조세탈루험의가 인정되는 경우로서 이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의 본점에 일괄조회할 수 있도록 함.

③ 고액현금거래 기록보존

- 고액현금자료는 5년간 기록 보존하도록 하고, 국세청장이 필요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함.

〈改正理由〉

- 고액현금자료의 보존의무를 두어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탈세조사의 실효성 제고
- 기록보존대상이 되는 현금거래규모는 제도의 실효성과 금융기관의 업무부담 및 미국·일본 등의 예를 고려하여 결정(시행령에 위임)

(4) 通報履行 및 秘密維持

① 통보기관장의 책임

- 통보기관장은 소속 기관 또는 직원의 과세자료 통보에 차질이 없도록 통보이행 여부를 내부 業務監査의 필수항목으로 지정
- 국세청장은 자료통보의무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監督·監査機關에게 감사 중점사항으로 지정토록 요청

② 비밀유지의무

- 세무공무원은 과세자료를 他人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③ 통보의무 및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 과세자료 통보를 독촉받고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감독기관 및 감사기관에 해당직원의 징계요구
-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세무공무원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改正理由〉

- 통보업무의 적절한 이행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감독·감사기관에게 감사사항으로 지정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국세청에서 수집된 과세자료는 비밀보장을 철저히 하여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위반시 제재

2. 國稅公務員法の 제정

가. 制定 背景

- 國稅公務員에 대한 별도의 인사관리시스템을 확립하여 국세 공무원의 전문성, 청렴성 및 사명감을 제고함으로써
- 稅政改革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깨끗하고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

- 세무행정조직의 機能別 조직으로 전환(物的 인프라) 및 과세자료 수집체계의 제도화(정보 인프라)와 함께
- 국세공무원 인사관리체계(人的 인프라)를 개혁하여 稅政改革을 뒷받침

※ 2000년 7월 1일 시행

나. 法案의 主要內容

(1) 國稅公務員의 범위

- 국세청 소속 공무원
- 국세청소속 一般職 1~9급은 모두 포함하되 기능직은 제외

- 廳長·次長은 정무직·별정직이므로 제외
- 재경부 세제실 및 국세심판소 소속 공무원
- 6급 이하는 전원 국세공무원의 범위에 포함.
- 조세정책의 입안과 심판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은 일반 직 또는 국세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함.

(2) 國稅公務員의 계급구분

- 현재 일반직 행정직군의 행정직렬(5급 이상) 및 세무직렬(6급 이하)로 분류되어 있던 것을 국세행정직렬 1~9급으로 통합하고
- 국세조사직렬(6급 이하)을 추가 설치하여 전문성을 제고

(3) 國稅公務員 人事委員會

- 인사자문기구인 「국세공무원 인사위원회」를 국세청에 설치
- 인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중앙인사위원회 등 관련부처의 국장급 공무원을 위원으로 포함.

(4) 新規採用

- 5급 신규채용
- 『5級 國稅行政考試』를 신설하여 국세행정에 필요한 자질을 갖춘 자를 선발
- 7·9급 신규채용
- 국세청장이 공개채용 시험을 실시하고 국세행정 직렬과 국세조사 직렬로 분리모집할 수 있는 근거 마련

(5) 試補任用

- 현재 5급 1年, 7·9급은 6個月의 시보기간을 두고 있는바
- 7급 신규공채자에 대하여 1년간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국세행정의 핵심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시보기간을 6개월에서 1年으로 연장

(6) 報酬 및 特別昇進

- 基本給은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하고 별도 手當을 지급
- 업무유공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및 특별승진제도를 도입
- ※ 구체적 지급기준 및 금액은 대통령령에서 정함.

(7) 停年

- 연령정년 : 국가공무원법과 동일하게 규정 (5급 이상 60세, 6급 이하 57세)

(8) 服務 및 處罰

- 납세자 권리현장 및 국세공무원윤리강령준수의무를 부과하고 징계기준에 포함하여 위반자는 징계토록 함.
- 벌칙강화
- 직무상 범죄 : 3분의 1까지 가중처벌(현행 조세범처벌법을 준용)
- 정치활동 및 집단행위자 처벌 강화
-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 2배로 가중

(참고) 國稅公務員法 制定 效果比較

	國家公務員法	國稅公務員法
- 신분	- 모두 일반직	- 특정직(국세행정직)으로 전환 - 국세청 전원(1~9급) - 세제실·심판소 6급 이하 전원 • 5급 이상은 복수직위제
- 채용	- 행자부 장관이 실시	- 국세청장이 주관 - 5급 국세행정고시 신설 • 시험은 행자부가 실시 - 6급 이하 직원의 채용시험은 국세청장이 실시
- 인사	- 5급 이상의 임면 → 대통령 - 1~3급의 승진임용시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	- 4급 이상의 임면·5급의 신규 채용 및 승진 → 대통령 - 심사불요 (국세공무원 인사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
- 보수	- 일반직 보수표와 수당이 적용	- 기본급은 일반직과 동일 - 특별수당 신설 • 세수증대 포상급 등 추가
- 징계 및 처벌	-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징계 - 일반 형사처벌	- 징계사유에 윤리강령위반 등 추가 - 처벌 강화 • 집단행위·정치활동: 2배 가중 • 직무상범죄: 장기의 1/3 가중

3. 租稅犯 處罰制度의 실효성 제고

가. 刑法總則 일부 배제규정 삭제

- 현행법은 국고우선주의를 기초로 형법에 대한 많은 예외를 인정하고 있고, 刑量이 엄벌 위주로 되어 있어 조세법처벌의 장애요인으로 작용
- 형량을 적정히 하여 조세법처벌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납세의식을 고취

현 행	개 정(안)
- 형법총칙의 일부규정 적용 배제 ① 형사미성년자·심신미약자 · 농아자 불처벌 배제 ② 중범에 대한 형경감규정 배제 ③ 법률의 착오 불벌규정 배제 ④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 규정 배제	< 삭제 >

〈改正理由〉

- 국고주의를 기초로 한 형법총칙의 일부 배제 규정을 삭제하여 조세범에 대하여도 형법총칙 전면 적용
- * 독일(1977년) 및 일본(1962년)도 형법총칙 배제규정을 삭제(適用時期) 2000년 1월 1일 이후 범죄행위 성립분부터 적용

나. 租稅通脫犯의 刑量 조정

현 행	개 정(안)
- 세목별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5배이하의 벌금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포탈세액이 3천만원 초과시 당해 금액까지 벌금 부과 가능

〈改正理由〉

- 포탈세액의 3배 내지 5배까지 지나치게 가중한 벌금형을 부과하여 오히려 처벌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으므로
- 벌금형을 확정벌금형으로 전환하고 세목별 차등을 폐지
- * 벌금형과 별도로 조세포탈로 인한 경제적 이익은 전액 추징

다. 脫稅提報 補償金 제도의 개선

현 행	개 정(안)
- 탈세제보시 벌금액의 10~25%를 보상금으로 교부	- 탈세제보시 추징한 포탈세액의 5~15%(상한 1억원)를 보상금으로 교부

〈改正理由〉

- 탈세제보 보상금 지급기준을 벌금액에서 포탈세액으로 변경
- * 현재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부과될 경우 보상금 지급기준 미비
- 반면, 무분별한 추측성 탈세제보로 인한 부작용을 감안하여 지급비율을 하향 조정하고 지급액의 상한 설정

라. 기타 주요 租稅犯則行爲의 刑량 등 조정

현 행	개 정(안)
- 정당한 사유없이 1회계연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체납액에 상당하는 벌금	- 1회계연도 → 1년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재화·공급없이 세금계산서 교부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매출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	- 재화·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 교부 또는 합계표 제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세금계산서 미교부·허위기재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매출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장부의 불비치·무기장(소규모사업자 제외) • 50만원 이하의 벌금	- 장부의 불비치·무기장·허위기재(소규모사업자 제외)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사항(예 : 사업자 등록) 위반 등 • 50만원 이하의 벌금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改正理由〉

-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및 장부의 기장·비치의무 위반은 조세포탈죄의 예비행위로서 그 죄질에 비추어 과태료만 부과하되 소위 세금계산서 자료상은 처벌을 강화
- * 세금계산서 미교부, 무기장 등으로 인해 조세포탈에 이를 경우 조세포탈죄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명령사항위반 등 경미한 조세질서범은 형벌 대신 과태료 부과

IV. 稅制의 합리화 · 국제화

1. 首都圈 공장 · 본사의 地方移轉 촉진

○ 수도권기능의 지방분산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전략의 첫 단계로서 기업 지방이전 촉진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 수립
- 지방이전 기업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기업 수준으로 지원

○ 지원 대상

-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사 또는 공장을 5년 이상 계속 소유하고 사업을 영위한 법인으로서
• 본사 또는 공장을 수도권생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법인
• 공장의 경우 지방광역시 지역으로 이전시 산업단지에 한정
• 2002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한 기업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적용

○ 지원 내용

- 법인세 : 본사 또는 공장이전 후 5년간 100%, 그후 5년간 50% 감면(최저한세 적용배제)
*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따른 법인세(3년거치 3년 분할과세)는 현행과 같이 계속 적용
- 특별부가세 :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50% 감면(과세이연을 적용받지 못한 나머지 부분)
* 현재는 과세이연하되, 기계장치 취득분만 50%감면
-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 비과세
- 재산세, 종합토지세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감면추진
<適用時期> 2000년 1월 1일 이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 현행 본사 ·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조세지원

현 행	1999년 임시국회 조세법 개정
<p><수도권 본사 및 대도시 공장 양도지원> - 본사 및 공장의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세를 과세이연(지방에서 기계장치 취득분은 50% 감면) (신설)</p>	<p>- 수도권 본사 및 공장 양도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3년 거치 3년 분할상환 과세 - 투자세액공제를 대폭 상향 조정 : 3% → 10%</p> <p>- 수도권 중소기업 지방이전 감면 대폭 확대 ⇒ 3년간 소득세 · 법인세 100%감면, 그후 5년간 50%감면</p>
<p><지방본사 및 공장 취득지원> - 지방에서 건물 및 기계장치 등 투자시 투자금액의 3%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 - 지방에서 본사 및 공장용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 등록세 면제</p>	
<p><이전 후 운영지원> - 수도권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 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중소기업이 지방이전하는 경우 ⇒ 3년간 소득세 · 법인세 50% 감면, 그후 2년간 30%감면</p>	

2. 企業課稅制度 개선

가. 企業 構造調整 支援稅制 보완

(1) 持株會社에 대한 세제지원

① 持株會社의 配當所得에 대한 二重課稅 조정 신설

○ 적용대상 :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 익금불산입

- 자회사에 대한 지분비율 80%(상장·등록법인 50%)를 기준
- 기준비율 초과시 :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의 90% 익금불산입
- 기준비율 이하시 : 배당소득의 60% 익금불산입
- ※ 단기 보유주식(배당결의일 전 3월 내 취득주식)은 제외

○ 익금불산입의 제한

- 자회사가 계열사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타법인 주식을 1% 이상 보유하는 경우 익금불산입규모 축소
- 지주회사의 차입금이 클수록 익금불산입규모 축소

〈改正理由〉

- 1999년 4월부터 지주회사의 설립이 허용됨에 따라
- 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로부터의 배당이 주된 수입임을 감안하여 배당소득에 대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해소
- 다만, 연쇄출자 및 차입금을 통한 계열확장을 억제하기 위하여 자회사의 타법인 출자, 지주회사의 차입금 등이 있을 경우 배당소득 중 익금불산입규모를 축소

※ 익금불산입 제한액(시행령 개정시 반영예정)

i) 타법인 출자의 제한

$$\text{익금불산입 제한액} = \text{익금불산입액} \times \frac{\text{자회사의 타법인 출자액}}{\text{지주회사의 지주회사 출자액}}$$

ii) 차입에 의한 출자 제한

$$\text{익금불산입 제한액} = \text{자금이자} \times \frac{\text{지주회사의 차입금}}{\text{지주회사의 총자산액}} \times \text{해당 공제율}$$

〈適用時期〉 2000년 1월 1일 이후 수취하는 배당분부터 적용

※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요건

㉠ 총자산 중 자회사 주식이 50% 이상이고, 자산이 100억원 이상일 것

㉡ 부채비율이 순자산 대비 100% 이내일 것. 다만, 현물출자에 의해 지주회사로 전환한 경우 1년간 예외 인정

㉢ 자회사에 대한 출자지분비율이 50%(자회사가 1999년 4월 1일 현재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30%) 이상일 것

㉣ 자회사 외의 국내회사의 주식을 지배목적으로 소유금지. 다만, 현물출자에 의해 지주회사로 전환한 경우 전환 당시 소유주식은 2년간 예외 인정

㉤ 금융지주회사(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지주회사)의 일반회사 주식 소유금지

㉥ 일반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 제외)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 금지

㉦ 자회사가 생산한 제품의 판매 등 사업연관이 없는孫회사의 소유금지. 다만, 자회사가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될 당시 소유하고 있던 주식은 2년간 예외인정

② 계열사간 株式 공동出資에 의한 지주회사 설립시 세제지원

현물출자시	지주회사
- 현물출자시 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 특수관계 있는 계열회사간에 주식을 공동 현물출자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 공동 현물출자시에는 출자자 간에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 한 적용	•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改正理由〉

- 주력 계열회사간에 보유 주식을 공동으로 현물출자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

〈適用時期〉 2000년 1월 1일 이후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③ 持株會社가 寡占株主가 되는 경우 取得稅 배제

현 행	개 정(안)
-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 취득세 과세 (지방세법 §105)	-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현물출자 포함)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 취득세 비과세

〈改正理由〉

-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자회사가 비상장법인인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50% 이상을 보유하여야 함에 따라
 - 지방세법상 과점주주(발행주식총수의 51%)에 해당하여 취득세를 부담하게 되는 문제 해결
- 〈適用時期〉 2000년 1월 1일 이후 주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2) 現物出資에 대한 과세특례제도 보완

현 행	개 정(안)
- 내국법인이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신설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지원 - 적용시한 : 1999년 12월 31일 - 지원내용 ① 현물출자하는 법인 • 법인세 과세이연 • 특별부가세 이월과세 • 자회사 주식은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되는 타법인주식에서 제외 • 주식 출자시 증권거래세 면제 ② 신설법인 • 취득세 · 등록세 면제	- 적용시한 폐지 : 영구 제도화 - 대상법인의 범위 제한 :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한정 ※ 현행 법인세법상 분할에 대한 지원도 5년 이상 영위법인에 대하여만 적용

〈改正理由〉

- 현물출자는 분할과 유사한 조직변경으로서 기업의 구조조정 방식으로 많이 활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일반 제도화
- 〈適用時期〉 2000년 1월 1일 이후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3) 法定管理企業 등의 債務減免에 대한 課稅特例

현 행	개 정(안)
-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 인가,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 파산법에 의한 강제화의 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 - 차입금의 현재가치 상당액을 상환하고 - 특수관계없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원금과 상환금액의 차액을 면제받는 경우 지원 • 채무를 면제한 금융기관 : 손금산입 • 채무를 면제한 법인 : 채무면제익을 익금불산입 - 적용시한 : 1999년 12월 31일	〈삭제〉 - 특수관계없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를 감면받는 경우 지원 • 채무를 면제한 금융기관 : 손금산입 • 채무를 면제한 법인 : 채무면제익을 3년거치 3년 분할 익금 산입 - 적용시한 폐지 • 영구 제도화

〈改正理由〉

- 법정관리기업 등의 회생을 세제상 지원함과 동시에 과세형평 확보
- 〈適用時期〉 1999년 사업연도에 채무를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

(4) 委託企業體의 株主가 受託企業體에게 資產을 贈與하는 경우에 대한 課稅特例 신설

현 행	개 정(안)
<p><신 설></p> <p>※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p> <p>- 계열화 : 제조·가공·수리·판매업자가 '물품등'(물품·부품·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제조·가공 또는 수리)를 중소기업에게 위탁하고, 이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자가 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상호분담적 협력관계를 이루는 형태(\$2. 3호)</p> <p>- 위탁기업체 : 계열화에 의하여 위탁을 하는 자(\$2. 5호)</p> <p>- 수탁기업체 : 계열화에 의하여 위탁을 받은 자(\$2. 6호)</p>	<p>- 위탁기업체의 주주가 수탁 기업체(중소협력업체)에게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p> <p>• 수탁기업체의 자산수익을 3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p> <p>• 적용시한 : 2000년 12월 31일</p> <p><요 건></p> <p>- 자산 증여 기업(위탁기업체)</p> <p>• 정리절차개시·화외개시 및 파산을 신청한 법인</p> <p>- 자산 수증 기업(수탁기업체)</p> <p>• 중소기업</p> <p>- 위탁기업체와 수탁기업체간에 특수관계가 없을 것</p>

<改正理由>

- 협력업체인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주주로부터 손실 보상차원에서 자산을 증여받는 경우의 조세문제 해결

<適用時期> 1999사업연도에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5) 流動化專門會社(SPC)에 대한 課稅特例 신설

현 행	개 정(안)
<p><신 설></p>	<p>-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Special Purpose Company)에 대한 지원</p> <p>•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배당시 배당액을 소득 공제</p>

<改正理由>

- 자산유동화의 활성화를 통해 외자유치 및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를 지원하고

• SPC가 자산유동화를 위하여 세워진 Paper Company로서 일반 법인과 달리 도관(conduit)의 성격이 강한 점을 감안

* SPC는 자산유동화 관련 업무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없고,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할 수 없음(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20).

• 일본도 SPC에 대하여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배당시 배당액을 공제하고 있음.

* 1999년 7월 31일 현재 9개 금융기관 등이 SPC 설립

<適用時期> 200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

(6) 住宅抵當債權 流動化會社에 대한 지원

현 행	개 정(안)
<p><신 설></p> <p>※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지원</p> <p>•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시 특별부가세 50% 감면</p> <p>• 유동화자산의 관리·처분시 취득세·등록세 면제</p> <p>• 위 취득세·등록세 면제분 농특세 면제 등</p>	<p>- 유동화전문회사에 준하여 지원</p> <p>• 금감위에 등록된 채권유동화 계획에 따라 이전받은 저당권에 대한 등록세 면제</p> <p>• 저당권실행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면제</p> <p>• 등록세·취득세의 감면분에 대한 농특세 면제</p>

<改正理由>

-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를 유동화전문회사에 준하여 지원

<適用時期> 200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주택저당채권유동화를 위하여 등록·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7) 企業構造調整組合에 대한 세제지원

현 행	개 정(안)
<p>〈신설〉</p> <p>※ 현행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대한 지원(조특법 §14, 16)</p> <p>① 개인·기관투자가 조합을 통해 취득한 창업중소기업 주식의 양도차익 비과세</p> <p>② 창업중소기업이 지급하는 이자·배당소득은 창업중소기업이 조합에 지급시 원천징수하지 않고 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시 원천징수(배당소득은 분리과세)</p> <p>③ 개인의 조합출자액의 30% 소득공제</p> <p>④ 조합이 창업중소기업에 출자한 주식·지분 양도시 증권거래세 비과세</p>	<p>- 기업구조조정조합에 대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p> <p>① 개인·기관투자가 기업구조조정조합을 통해 취득한 구조조정대상기업 주식의 양도차익 비과세</p> <p>② 구조조정대상기업이 지급하는 이자·배당소득은 당해 기업이 구조조정조합에 지급시 원천징수하지 않고 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시 원천징수(배당소득은 분리과세)</p> <p>③ 개인의 조합출자액의 30% 소득공제</p> <p>④ 조합이 대상기업에 출자한 주식·지분 양도시 증권거래세 비과세</p>

〈改正理由〉

- 기업구조조정조합에 대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준하여 세제상 지원

〈適用時期〉 2000년 1월 1일 이후 구조조정조합을 통하여 최초로 취득한 주식과 이자·배당소득 분부터 적용

(8) 金融機關 貸損充當金の 損金算入 特例期限 연장

현 행	개 정(안)
- 금융감독원장의 감독을 받는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손비 인정한도	

현 행	개 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 i), ii) 중 큰 금액 i) 채권잔액의 2% ii) 채권잔액 × 대손실적률 • 실적률: 대손금/전년말 채권잔액 •특례: 금융감독규정에 의하여 적합한 대손충당금 •적용시한: 1999년 12월 31일 	- 특례 적용시한을 1년간 연장

〈改正理由〉

- 금융 구조조정이 마무리되고 금융시장의 안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1년간 특례 연장

※ 금융감독규정상 대손충당금제도

- 5단계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기준비율 이상 대손충당금 적립

- 자산건전성 분류: 정상(0.5%), 요주의(2%), 고정(20%), 회수의문(75%), 추정손실(100%)

나. 法人稅 源泉徵收稅率 인하

현 행	개 정(안)
- 내국법인에게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율	- 원천징수세율 인하
• 이자소득금액의 22%	• 20%로 2%p 인하

〈改正理由〉

- 개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인하에 맞추어 조정
 〈適用時期〉 200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다. 기타 稅制支援制度 보완

(1) 技術開發準備金制度 개선

현 행	개 정(안)
- 대상 : 제조업, 광업 등 16개 업종 - 손금산입 한도 * 자본재산업 · 기술집약적산업 : 매출액의 5% * 기타산업 : 매출액의 3%	* 매출액의 3%로 통일 * 산업별 차등은 WTO규약 위 배

〈改正理由〉

- 실효성도 크지 않으면서 특정산업을 우대하는 현행 제도는 통상마찰을 야기하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정비
 - * 1998매출액 경상이익률(전산업) : 3% 내외
- 〈適用時期〉 2000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적립분부터 적용

(2) 投資促進을 위한 지원의 日沒時限의 연장

현 행	개 정(안)
- 1999년에 종료되는 투자촉진 제도 *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투자금액의 10% * 과잉생산설비폐기에 대한 세액공제 : 자산가액의 3%	* 2000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 * 2000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

〈改正理由〉

- 기계공업진흥회 내의 「유휴설비정보센터」에 등록된 1만 1천건의 중고설비 중 거래가 성사된 것이 약 3,100건(1999년 7월 31일 기준)에 불과한 점을 고려
- * 1999년 8월 임시국회에서 세액공제를 상향조정 : 5%→

10%

- 과잉생산설비폐기에 대한 세액공제 1999년 8월부터 1999년 12월간의 짧은 기간동안만 시행되는 경우 그 지원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어려운 점을 고려
- 〈適用時期〉 2000년 6월 30일까지 투자 · 폐기한 분까지 적용

3. 所得稅制 개선

가. 10% 저율과세 세금우대저축의 統合 · 整備

저축종류	현 행		개 정(안)
	1인1통장여부	일몰시한	
소액가계저축	○	2000년 가입분	2000년 1월이후 總額限度管理
노후생활연금신탁	○		- 대상 : 1년이상 저축
소액채권저축	○		- 總額限度
소액보험계약	○		* 1인당 4천만원
가계생활자금저축	○		* 老人 · 障礙人 : 6천만원
근로자장기저축	○		* 未成年者 : 1,500만원
근로자장기증권저축	○	"	* 既存 세금우대저축은 한도에서 차감
근로자증권저축	○		
장학적금	○		
주택청약저축	○	"	기한연장

〈改正理由〉

- 현행 세금우대저축은 그 종류가 다양하고 1인당 총 가입한도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나
 - * 각 저축별로 가입자격 · 가입한도 · 불입방법 · 통장수 등 제약요인이 많아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는 면이 있음.
 - 따라서, 현행 세금우대저축을 총액한도에 의해 통합운용함으로써 중산층 이하 서민들이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 * 세금우대저축이 고액 금융소득자의 조세피난처로 이용되는 사례를 방지
- 〈適用時期〉 2001년 1월 1일 이후 저축분부터 적용

〈참고〉 税金優待貯蓄의 종류

(단위 : 만원)

	저축요건				취급기관
	가입자	통장수	저축기간	저축한도	
〈비과세저축〉					
개인연금저축	20세이상	-	10년 이상	월 100(분기당 300)	보험, 은행, 투신, 단위조합, 우체국
장기주택마련저축	개인	1인 1통장	7년 이상	월 100	은행, 우량신용금고
근로자유대저축	근로자 (연3천만원이하)	1인 1통장	3~5년	월 50	전금융기관
농어기목돈마련저축	농어민	-	3~5년	월 12	단위조합
조합, 새마을금고 예탁금등	조합원	1인 1통장	-	예탁금 2,000 출자금 1,000	단위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장기 저축성보험	개인	-	5년 이상	-	보험,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10%저율과세〉					
소액가계저축	개인	1인 1통장	1년 이상	2,000	은행, 투신, 증권, 신용금고, 우체국
소액채권저축	개인	1인 1통장	1년 이상	2,000	증권, 일부은행
노후생활연금신탁	개인	1인 1통장	2년 이상	2,000	은행, 투신
가계생활자금저축	개인	1세대 1통장	-	1,200	전금융기관
근로자장기저축	근로자	-	3년 이상	월 50(월 급여 이내)	은행, 우체국, 신용금고, 일부 투신
근로자증권저축	근로자 (월 60만원 이하)	-	1년 이상	급여의 30% (120만원 이상)	증권
근로자장기증권저축	근로자	-	3년 이상	연 600	증권
소액보험계약	개인	-	-	1,800	보험,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 상기 이외 10% 저율과세저축 : 장학적금, 입주자저축

나. 配當稅額控除제도 개선

함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소액주주들의 세부담(20%)보다 크게 낮아지는 문제 해소

(1) 배당세액공제기준 보완

현행	개정(안)
- 실제 법인세 부담률이 법인세 최저세율인 16%를 초과하는 경우 • 실제 법인세 부담률에 의해 배당세액공제 허용	- 실제 법인세 부담률이 16%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 16%에 의해 배당세액공제 적용

〈改正理由〉

- 종합과세되는 대주주의 경우 과도하게 배당세액공제를 허용

(2) 법인세 減免所得의 배당에 대한 배당세액공제 배제

현행	개정(안)
-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하여도 • 법인세가 16% 부과된 것으로 보아 배당세액공제 허용	- 법인단계에서 최저한세 적용 배제로 법인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은 소득에 대하여는 • 배당세액공제 적용 배제

〈改正理由〉

- 배당세액공제 제도는 법인단계와 주주단계에서 2중적으로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 법인이 실제 부담하지 않은 세액까지 공제해 주는 것은 동 제도의 기본취지에 맞지 않음.

다. 讓渡所得稅 과세제도 보완

(1) 申告納稅制度로의 轉換

현 행	개 정(안)
- 정부결정제도 •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 • 기준시가에 의해 결정 * 1년 이내 단기양도, 미등기양도, 투기거래 등은 실가 결정	- 납세자 신고납세제도 • 납세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 • 기준시가로 신고 * 1년 이내 단기양도, 미등기양도, 투기거래, 고급주택 등은 실가로 신고 • 경정 : 불성실신고자에 한해 기준시가 과세대상은 기준시가, 실가과세대상은 실가에 의해 결정 * 실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에 의해 결정

〈改正理由〉

- 납세자에 대한 세정간섭을 줄이고 세정개혁을 지원
- 〈適用時期〉 200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고급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중 개정안(법제처 심사중)의 시행일(1999년 9월중 공포예정) 이후 최초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建物 등의 讓渡 · 取得價額 산정방법 변경

현 행	개 정(안)
- 건물의 기준시가 • 국세청장의 기준시가 산정 고시 대상건물 : 공동주택(토지·건물 일괄 평가) - 골프회원권 양도 · 취득가액 산정방법 • 원칙 : 기준시가 • 양도자가 실가신고시 : 실지거래가액	• 상업용건물, 단독주택(고급주택 포함) 추가 • 원칙 : 실지거래가액 • 실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기준시가

〈改正理由〉

- 기준시가제도가 시가를 적절히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세청장의 기준시가 고시대상을 확대
- 골프회원권에 대해 고급주택과 동일한 차원에서 실가에 의해 과세함으로써 고액재산가에 대한 적절한 세부담 실현
- * 시설물이용권 중 실가과세되고 있는 스키장회원권, 콘도회원권 등과의 과세형평 도모

〈適用時期〉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골프회원권은 200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3) 讓渡所得稅 加算稅制度의 보완

현 행	개 정(안)
- 신고불성실가산세액 • 미달신고 산출세액의 10% - 납부불성실가산세액 • 미달납부세액의 10%	• 미달신고 산출세액의 20% • 미달납부세액에 대한 경과일수에 따른 이자상당액(1일 0.05%, 연 18.25%)

〈改正理由〉

- 신고납세 전환을 계기로 성실한 신고납부를 유도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 가산세를 종합소득세의 가산세 수준으로 조정
- 〈適用時期〉 200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 非居住者의 외국상장 국내기업주식 讓渡所得 면세

현 행	개 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 비상장 국내기업주식 양도시 과세 • 국내 거래소 상장·협회등록 주식 • 25% 이상 소유시 : 과세 • 25% 미만 소유시 : 상호면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스닥 등 외국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국내기업 주식 양도시 면세

〈改正理由〉

- 우리 기업의 새로운 외자유치수단을 세계면에서 지원
- 〈適用時期〉 200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 酒稅制度 개선

가. 酒稅率 조정

현 행	개 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류주 • 소주 • 희석식소주 35 % • 증류식소주 50 % • 위스키 100 % • 브랜디 100 % • 일반증류주 80 % • 리큐르 50 % - 맥주 13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후 발표

나. 酒類行政 관련 규제완화

(1) 酒類의 新規 製造免許 수급제한 폐지

현 행	개 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무서장이 기존 제조업체 수를 고려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 주류의 신규 제조 면허 제한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지 • 주류제조시설기준만 충족하면 자유로이 제조면허 취득 가능

〈改正理由〉

- 주류제조자간 경쟁촉진을 통한 다양한 주류개발 및 주류산업 발전을 위하여 주류「제조」분야의 자유로운 진입 허용
- 〈適用時期〉 2000년 1월 1일 이후 제조면허 신청분부터 적용

(2) 酒類 販賣免許 제한사유 客관화

현 행	개 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속상 부적당한 경우 또는 기존 주류판매업자 수를 고려하여 주류판매면허 제한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자료 거래가 성행하는 지역, 판매업면허가 밀집된 지역에 대하여는 판매업면허를 제한할 수 있도록 구체화

〈改正理由〉

- 주류 「판매」면허 제한사유를 객관화하여 투명성 제고
- 〈適用時期〉 2000년 1월 1일 이후 판매면허 신청분부터 적용

(3) 酒類販賣場 移轉時 許可制을 事前申告制로 전환

현 행	개 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 시·군지역으로 판매장 이전시 : 사전신고제 - 동일 시·군외 지역으로 판매장 이전시 : 許可制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 시·군뿐 아니라 동일 시·군의 지역으로 판매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허가제를 申告制로 전환

현 행	개 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종합주류도매면허업자가 무자료거래 성행지역, 판매업 면허 밀집지역으로 이전시 신고수리 거부 가능

〈改正理由〉

- 사업자의 자율적 판단에 의해 판매장 입지 선정 가능

〈適用時期〉 2000년 1월 1일 이후 판매장 이전 신고분부터 적용

(4) 酒造士 義務雇傭制度 폐지

현 행	개 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류제조장에는 주류의 제조 관리와 품질향상을 위하여 주조사를 두어야 함. • 다만, 탁주·약주·민속주·특산주는 예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조사 자율고용제로 전환

〈改正理由〉

- 규제완화 등을 통해 주류제조업계의 경쟁력 제고

〈適用時期〉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

(5) 酒稅 納付期限 연장

현 행	개 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류 출고 후 익월 20일까지 주세 신고 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세 납부기한 변경 • 2000년 : 익월 말일 • 2001년 이후 : 익익월 말일

〈改正理由〉

- 주류제조자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

〈適用時期〉 2000년 1월 1일 이후 출고분부터 적용

(6) 酒類業團體의 設立·加入制限 폐지

현 행	개 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류제조자는 주류별로 주류업단체를 조직하여야 함. - 주류업단체에 대한 加入強制 • 국세청장이 주세보전상 또는 건전한 주류업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 주세법에 의한 주류업단체 외에 별도로 주류업 단체를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삭 제〉 - 任意加入制로 전환 - 국세청장의 설립허가를 받아 민법상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자유로이 설립·가입 가능

〈改正理由〉

- 주류업단체의 설립 및 가입 자유화

〈適用時期〉 2000년 1월 1일 이후 설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부터 적용

(7) 稅額控除·還給對象인 換入酒類 범위 확대

현 행	개 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세납부·출고 후 납부한 주세의 공제·환급이 가능한 경우 • 변질·품질불량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환급사유 확대 • 주류의 유통과정중 도난, 파손 또는 자연재해가 발생한 때 추가

〈改正理由〉

- 주류제조업계의 납세편의 제고

〈適用時期〉 2000년 1월 1일 이후 환입하는 분부터 적용

(8) 稀釋式燒酒 製造方法 다양화

현 행	개 정(안)
- 희석식소주에 증류식소주 또는 곡물주정 첨가 가능 • 다만, 첨가 알콜량을 20% 이내로 제한 • 첨가하는 주류의 알콜분 총량 ÷ 당해주류의 최종알콜분 총량 ≤ 20%	- 곡물 주정의 첨가비율 한도폐지 • 곡물주정을 전량 사용한 희석식소주 제조 가능 - 증류식 소주 첨가비율을 50%까지로 확대 • 50% 이상 첨가시 증류식소주, 50% 미만 첨가시 희석식소주로 분류

〈改正理由〉

- 증류식소주 또는 곡물주정을 이용한 다양한 희석식소주 개발을 통한 소비자의 선택폭 확대

〈適用時期〉 2000년 1월 1일 이후 출고하는 분부터 적용

다. 無資料 거래 및 申告 不誠實에 대한 과세강화

(1) 酒類 製造 · 販賣業者의 無資料去來에 따른 처벌강화

현 행	개 정(안)
-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세금계산서 교부위반 금액이 총주류매출액 또는 매입액의 20% 이상인 때 주류의 제조·판매 면허 취소	- 주류 제조는 5%, 주류 판매는 10%로 상향조정

〈改正理由〉

- 주류에 대한 납세관리 강화

〈適用時期〉 2000년 1월 1일 이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금액 발생분부터 적용

(2) 加算稅率 조정

현 행	개 정(안)
- 주세의 기한 내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시 납부세액의 10%를 가산세로 징수 〈신 설〉	- 주세를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시 납부불성실 가산세 징수 • 1월 5/10,000 (연18.25%) - 신고불성실 가산세 • 주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10% 적용

〈改正理由〉

- 성실납부 유도 및 조기납부자와의 과세형평 도모

〈適用時期〉 2000년 1월 1일 이후 출고하여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5. 國稅徵收節次 개선

○ 押留財産 公賣節次의 개선

현 행	개 정(안)
- 세무서장(성업공사)은 매 공매시마다 공매기일, 최저입찰가격 등을 공고 및 통지 - 매각자산의 권리이전 및 금전배분 업무는 세무서장이 수행	- 수회의 공고사항을 일괄하여 공고 및 통지 - 공매대행시 매각자산의 권리이전 및 금전배분업무를 성업공사에 위임

〈改正理由〉

- 공매 및 매각자산 처리절차를 간소화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납세자 편의를 제고

〈適用時期〉 2000년 1월 1일 이후 공매분부터 적용

6. 稅務士 및 關稅士 제도 개선

가. 自動資格 부여제도 폐지

(1) 稅務士

① 5급 이상 國稅經歷者 등

현 행	개 정(안)
- 국세경력 10년(그 중 5급 이상으로 5년 이상) 이상인 자에 대하여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	- 2001년 1월 1일부터 자동자격 부여제도를 폐지하고, 일부 시험면제제도로 전환 * 현행 국세경력 20년 이상자와 동일 (1차과목 전부면제, 2차과목 중 세법학 1·2부 면제) → 면제과목은 시행령에서 규정

〈改正理由〉

- 일반수험생의 자격취득기회를 확대하고,
- 공무원 근무경력만으로 자동자격을 주는 것은 공무원에 대한 특혜이므로 자동자격부여제도 폐지(1999년 7월 16일 규제개혁위원회 의결)

※ 1999년 6월 현재 국세경력에 의한 세무사 자동자격자는 2,500명(전체 자격자 1만 749명의 약 23.3%)

〈適用時期〉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

② 辯護士 자격자

현 행	개 정(안)
- 변호사자격자에 대하여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	- 2001년 1월 1일부터 자동자격 부여제도를 폐지하고 일부 시험면제제도로 전환

현 행	개 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시험은 면제하고 2차시험(세법학1·2부, 회계학)은 치르도록 함. • 단, 사법연수원 연수과정에서 시험을 칠 수 있도록 시험일 부면제자격을 『사법시험합격자』로 함.

〈改正理由〉

- 세무사에 대한 자동자격 부여제도를 모두 폐지하고 완전한 자격시험제도로 전환한다는 차원에서 변호사 자격자에 대한 자동자격 부여제도를 폐지
- * 자격사시험은 각각의 목적이 있고 시험과목도 다르므로 하나의 자격사시험을 합격하였다 하여 타자격사의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하는 것은 특혜
- 변호사시험의 경우 세법지식 및 회계학에 대한 검정이 미흡하므로 2차시험을 거치도록 할 필요

〈適用時期〉 자동자격폐지는 2001년 1월 1일 이후 변호사자격취득자부터 적용, 시험면제요건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 응시분부터 적용

(2) 關稅士

현 행	개 정(안)
- 관세사 자격 자동부여 • 10년 이상 關稅行政에 종사한 자 중 5급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 한 자로서 研修(3주)를 마친 자 • 20년 이상 관세행정에서 종사한 자 중 연수(3주) 후 특별전형에 합격한 자	- 공무원 자동자격 부여제도를 2001년부터 폐지하고 대신 • 무역업체 등 민간분야를 포함한 일정보직에서 근무한 경력자에 대해 시험과목 일부를 면제 • 관련보직과 면제시험과목은 시행령으로 규정

〈改正理由〉

- 規制改革委員會 의결사항(1999년 7월 16일) 반영
- 일반응시자의 전자자격 취득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문분야종사자의 전문성이 계속 활용될 수 있도록
- 공무원경력자에 대한 자동자격 부여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관련분야 종사자에 대해서는 試驗科目的 일부를 면제하여 자격취득을 용이하게 할 필요

나. 稅務士試驗의 一部免除要件 조정

현 행	개 정(안)
- 1차시험과목 면제 • 국세경력 10년 이상인 자	• 지방세경력 10년(그중 5급 이상으로 5년 이상) 이상인 자를 추가
- 1차시험 전과목 및 2차시험 일부면제 • 국세경력 20년(그중 직접세 경력 5년 이상) 이상인 자	• 직접세 경력요건 폐지 ⇒ 국세경력 20년 이상인 자

〈改正理由〉

- 지방세관련업무도 세무사업무의 일부이고, 지방세관련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지방세경력 공무원 중 5급 이상의 관리자에게 소양과목인 1차시험과목 면제혜택 부여
 - ※ 2차시험과목인 세법학 1·2부와 회계학은 시험을 치르게 하여 세무사로서의 자질검증
 - 국세청 조직이 세목별 조직에서 기능별 조직으로 개편(1999년 9월 1일)됨에 따라 직·간접세의 구분이 어렵고 비인기분야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직접세경력요건을 폐지
- 〈適用時期〉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

7. 關稅制度的 개선

가. 關稅率 체계상 문제점 보완(關稅率表)

(1) 關稅率體系 정비 필요성

- WTO New Round 대비
- 1999년말 출범예정인 WTO New Round 협상에서 공산품을 포함한 전 산업의 관세인하가 논의될 전망
- 協商이 개시되면 산업별 일괄타결 방식 등으로 협상이 진행되어 동 협상기간(최소한 3년) 중에는
- 아국 필요에 의해 관세를 정비하는 데는 많은 제약이 따름.
- 그동안 세율체계상 문제가 있어 관계 부처·업계 등에서 보완을 요청한 품목에 대하여
- WTO New Round 개시 전(1999년중) 기본관세를 체계를 정비

- 세계화시대 우리나라를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드는 데 기여하는 관세환경 마련 필요
- 관세는 국내산업을 보호함으로써 財政收入 확보와 더불어 內·外國人 투자를 촉진하는 측면이 있는 반면
- 지나친 고율 관세 및 유사물품간 세율 불균형 등 관세율 체계상 문제가 있는 경우, 경쟁력 저하 등으로 해당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게 됨.
- 아국의 현행 관세율 수준은 先進國과 유사한 수준으로 세율 수준을 전반적으로 인하할 필요성은 적으나
- 稅率體系上 문제가 있는 경우 적기에 조정하여 관련산업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

(2) 주요 改編內容

- ① 加工食品과 原料農産物간의 逆關稅 해소

- 가공식품 완제품 관세율(8%)에 비해 원료농산물 관세율이 높은 역관세 해소를 위해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원료농산물의 기본관세율을 인하
- 토마토 페이스트, 해바라기씨유, 유채유 등 8개 농산물 관세율을 현행 8~50%에서 5~10% 수준으로 인하

품명	기본관세율(%)		비고
	현행	개정	
- 토마토펀치	8(할당5)	5	토마토펀치(8%)원료
- 조제토마토	50(할당10)	8	토마토스(8%)원료
- 유채유	30(할당10)	10	마아가린(8%)원료
- 해바라기씨유	25	10	"
- 카제인산염	20(할당8)	8	커피크리머(8%)원료
- 아몬드	30(할당8)	8	아이스크림, 비스킷(8%) 원료
- 캐슈넛	30	8	"
- 해즐넛	30	8	"

② ITA 협정에 의한 일부 半導體部品の 逆關稅 해소

- ITA 협정에 의해 반도체 및 장비의 관세율이 대부분 2000년부터 무세인 반면, 그에 사용되는 일부 부품·원료는 8%
- 반도체 원·부자재가 대부분 범용성으로 세율인하에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 전용부품 또는 국산가능성이 없는 원·부자재 중심으로 세율 인하
- 폴리실리콘, 블랭크마스크, 흑연도가니 등 8개 품목의 관세율을 현행 8%에서 3% 수준으로 인하

품명	기본관세율(%)		비고
	현행	개정	
- 폴리실리콘	8	3	실리콘웨이퍼 원재료
- 블랭크마스크	8	3	포토마스크 원료
- 포토마스크	8	3	반도체 제조장비
- 금속도금기	8	3	"
- 흑연도가니	8	3	반도체제조용 전기로의 원부자재
- 석영도가니	8	3	"
- 여과기	8	3	반도체 제조장비
- 납탈탈재기	8	3	"

③ 石油製品 關稅率 인상

- 재정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원유와 제품인 석유류간의 동일한 세율체계(5%)를 석유제품 판매업 개방(1999년 1월)을 계기로 외국처럼 차등관세화(석유제품 관세율 인상)
- 휘발유, 등유, 경유, 방카유 등의 관세율을 현행 5%에서 8% 수준으로 인상

품명	기본관세율(%)		비고
	현행	개정	
- 휘발유	5	8	자동차휘발유, 항공휘발유, 제트연료유
- 등유	5	8	제트연료유 포함
- 경유	5	8	
- 중유	5	8	방카A유, 방카B유, 방카C유

④ 기타 稅率體系上 問題가 있는 품목의 基本稅率 정비

- 신기술 개발, 산업구조의 변동 등으로 유사물품간 稅率이 현저히 불균형하게 되거나
- 가공단계별 세율체계가 역진 현상을 보일 경우 이를 시정

품명	기본관세율(%)		비고
	현행	개정	
- 컴퓨터설계도	8	무세	수제 설계도(무세)와 세율균형
- 발전기용 디젤엔진	8(할당4)	4	발전기세트(무세)와 역관세 완화
- 재생스테인리스강	8(할당4)	4	할당관세 장기적용
- 테입형리드프레임	8	무세	일반 리드프레임(무세)과 세율 균형

(3) 適用時期 : 2000년 1월 1일 수입신고분부터 적용

나. 納稅者의 權利保護 및 便益의 증진

(1) 課稅適否 審査制度의 도입

현 행	개 정(안)
〈신 설〉	- 세관장의 경정통지를 받은 자는 세관장 등에게 그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 동 청구를 받은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은 30일 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통지

〈改正理由〉

- 현재 관세청 훈령(1998년 6월 12일 고지전과세적부심사업무에관한시행세칙)으로 운용하는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를 법제화

※ 국세기본법에서도 법에서 규정(2000년 1월 1일 시행)

〈適用時期〉 2000년 1월 1일 이후 결정통지분부터 적용

(2) 行政審節次의 선택적 필수주의화

현 행	개 정(안)
-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거쳐야만 행정소송제기 가능 • 審査請求 → 審判請求 → 行政訴訟	- 행정심급을 단계 단축 • 審査請求 또는 審判請求 → 行政訴訟

〈改正理由〉

-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중 하나만 거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

※ 국세기본법의 심사청구·심판청구와 동일한 구조를 유지

〈適用時期〉 2000년 1월 1일 이후 청구분부터 적용

(3) 關稅減免 절차 간소화

현 행	개 정(안)
〈관세감면 대상〉 -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기증되는 소액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 -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	- 재정부령이 정하는 소액물품 • '기증' 요건 삭제 -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 • '국내제작 관련' 요건 삭제

〈改正理由〉

- 소액물품의 경우 기증여부를 확인(예 : 영사관의 확인서 등)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나 감면금액이 작으므로 이를 개선하여 징수비용을 절감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

• 선진외국의 경우 기증 여부와 관계없이 소액면세제도를 운용(미국 100달러 이하, 일본 1만엔 이하)

- 국내제작 곤란한 물품에 대해 관세를 감면하는 것은 국내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인바

• 연구목적에 공해지는 물품은 사용목적이 제한적이고 특정한 물품만이 구입되므로 국내생산 가능 여부에 관계없이 감면을 하더라도 국내산업에 영향이 없음.

〈適用時期〉 2000년 1월 1일 이후 관세 감면신청분부터 적용

(4) 세 관의 檢査手數料 免除範圍 확대

현 행	개 정(안)
- 지정장치장 또는 세관검사장 이외의 장소에서 물품검사를 하는 경우 수수료를 납부	- 지정장치장, 세관검사장 또는 보세장치장(자신의 수입물품을 장치하기 위한 장치장은 제외) 이외의 장소에서 물품검사를 하는 경우 수수료를 납부

〈改正理由〉

- 수입자의 비용절감 및 절차 간소화를 도모
 - 보세장치장(자가용은 제외)은 대부분 세관인근에 위치하고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므로 별도의 수수료 없이 세관의 역무를 제공
 - * 수수료 : 기본료 2,000원 + 실비상당액(시행규칙 제40조)
 - ※ 장치장의 종류 : 수입할 물품을 일시장치하기 위한 장소
 - * 세관검사장 : 세관장이 직접 검사할 장소로 지정한 구역
 - * 지정장치장 : 국가·지자체장 등이 소유한 시설 중 세관장이 지정
 - * 보세장치장 : 민간에서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 운영
 - ┌ 영업용 : 수입자의 화물을 보관료를 받고 장치
 - └ 자가용 : 자신의 화물만을 장치
 - ※ 추가되는 수수료 면제 예상금액 : 4억 8천만원 추정
(1998년 세관의 검사수수료 총징수실적 : 8억 9백만원)
- 〈適用時期〉 2000년 1월 1일 이후 검사분부터 적용

다. 行政의 效率性 向上

(1) 성실신고 유도를 위한 加算稅 규정 보완

현 행	개 정(안)
- 면세되지 아니하는 여행자 휴대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납부세액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 징수	- 면세되지 아니하는 여행자 휴대품 또는 이사화물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납부세액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 징수

〈改正理由〉

- 과세되는 여행자 휴대품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바
- 과세되는 이사화물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징수하지 않고 있어 형평과 관련한 논란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

〈適用時期〉 2000년 1월 1일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

(2) 賣却業務의 外部委託을 위한 근거 마련

현 행	개 정(안)
- 장치기간 경과물품은 세관장이 공고 후 경쟁입찰, 경매 또는 수의계약, 위탁판매의 방법에 의하여 매각	- 매각을 세관장이 하지 아니하고 외부기관이 이를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改正理由〉

- 매각업무를 Out-Sourcing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
- 1998년 기획예산위원회와 동 업무를 민간위탁하도록 합의(예산조치 완료)
- * 현재 국세기본법에서는 세무서장의 공매업무를 성업공사에서 대행

〈適用時期〉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

8. 關稅自由地域 설치 및 운영에 관한 法律 제정

※ 기발표(7. 30)

○ 우리나라의 주요 공항·항만 및 그 배후지를 동북아의 물류거점 기지(HUB)로 육성

○ 관세자유지역

- 국가의 關稅線 외측에 위치한 제한된 구역으로서 화물의 반출입 및 중계무역 등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법적·지리적 경제활동특구

- * 싱가포르, 독일, 영국 등 외국에 많은 사례
- * 주요기능 : 컨테이너화물의 유치, 포장 및 재포장, 상표부착, 분류, 검사, 혼합, 단순가공 등 物流産業에 한정

○ 지원내용

- 외국으로부터 관세자유지역에 반입하는 모든 물품에 대한 관세 등 수입제세의 부과 배제
- 국내에서 관세자유지역으로 반입하는 물품을 수출로 간주
- 관세 등 간접세의 환급 및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관세자유지역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법인세 및 소득세 등을 감면하고, 국유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 관세자유지역 내 자유로운 영업활동 보장
- 운송·하역·단순가공·환적·보수·포장·분배 등 작업 허용
- 반입된 외국물품에 대한 세관관리 배제(업체의 자율관리)

9. 租稅支出 豫算制度의 도입계획

- 재정운용의 效率性과 透明性을 제고하기 위하여 租稅支出 豫算制度를 段階的으로 도입
- 1단계로 1998년 직접세의 租稅支出 報告書를 올해 정기국회에 세입예산안의 참고자료로 제출

○ 조세지출예산제도(Tax Expenditure Budget) 개요

- 조세지출의 세부내역과 규모를 機能別·稅目別로 분류하여 공표하는 제도
- * 조세지출 : 조세의 基準課稅體系(Benchmark Tax System)에서 벗어난 특례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발생하는 國家稅入의 감소
- OECD에 가입한 29개국 중 14개국(미·영국 등)이 도입

○ 도입 목적

- 조세지출을 재정지출과 연계하여 운용함으로써 재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 조세지출 내역을 대외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투명성 제고 및 기득권화·만성화된 조세지출을 효과적으로 통제

○ 段階的 도입 계획 (안)

종 전	• 직접세·간접세의 과거 5년(1993~1997)간 감면실적율 의원요구시 총액만 제시
1 단계 (1999년)	• 1998년 직접세의 조세지출 실적율 기능별·세목별로 세부내역 제시 (약 110개 항목)
2 단계 (2000년)	• 직접세와 간접세의 조세지출을 전년도(1999) 실적 및 당해연도(2000) 추계치 제시
3 단계 (2001년 이후)	• 직접세와 간접세의 전년도(2000) 실적, 당해연도(2001) 추계치 및 2002년 예측치 제시

○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될 1998년 조세지출 현황

- 1998년 직접세의 조세지출 총액은 7조 7,305억원으로 GDP (450조원) 대비 1.7% 수준임
- 대상세목(소득·법인·상속·증여세)의 총세수 36조 4천억원(세수+조세지출) 중 약 21.2%가 조세지출에 의한 세입 감소임.



〈1998년 조세지출 현황〉

(단위 : 억원, %)

기 능 별	세 목			계	구성비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1. 산업경쟁력 강화 지원	1,191	8,995		10,186	13.2
1.1. 중소기업 지원	887	1,973		2,860	3.7
1.2. 투자촉진 지원	137	3,486		3,623	4.7
1.3. 기술 및 인력개발 지원	167	3,536		3,703	4.8
2. SOC 및 주택 투자 지원	2,417	2,992		5,409	7.0
3. 지역간 균형발전 지원	3,851	616	323	4,790	6.2
3.1. 공장·법인본사의 지방이전 지원	173	498		671	0.9
3.2. 농어촌 지원	3,678	118	323	4,119	5.3
4. 저축 및 금융기관 지원	26,207	2,312		28,519	36.9
4.1. 저축지원	26,207			26,207	33.9
4.1.1. 일반저축 지원	17,085			17,085	22.1
4.1.2. 주택마련저축 지원	212			212	0.3
4.1.3. 농어촌저축 지원	8,201			8,201	10.6
4.1.4. 근로자저축 지원	709			709	0.9
4.2. 금융기관 지원		2,312		2,312	3.0
5. 사회보장 지원	2,487	3,022		5,509	7.1
6. 근로자 지원	11,922	136		12,058	15.6
7. 교육 및 문화 지원	1,563	4,673	52	6,288	8.1
8. 기타	35	4,511		4,546	5.9
계	49,673	27,257	375	77,305	100

주: 조세지출 항목별 세부내역은 1998년 실적이 최종 집계되는 데로 발표할 예정이다.

〈참고〉 금년도 定期國會 제출예정 法律案

○ 制定 법률안(3개)

- ① 과세자료의수집및관리에관한특별법
- ② 국세공무원법
- ③ 관세자유지역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 조세체계간소화법은 기획예산처가 내년도 예산편성 완료 후 특별회계 정비작업을 추진할 계획이어서 금년도에 입법 추진이 어려울 전망

○ 改正 법률안(14개)

- ① 소득세법 ② 법인세법 ③ 상속세및증여세법
- ④ 부가가치세법 ⑤ 특별소비세법 ⑥ 교통세법
- ⑦ 주세법 ⑧ 조세특례제한법 ⑨ 조세범처벌법
- ⑩ 조세범처벌절차법 ⑪ 국제징수법 ⑫ 세무사법
- ⑬ 관세법 ⑭ 관세사법

○ 추진일정

- 8월 27일(금), 당정협의 및 세계발전심의위원회 개최예정
- * 관세관련 3개법안은 8월 23일(월) 관세심의위원회 개최



(표 1) 연도별 · 지방자치단체별 세입결산 순계분석(총괄)

(단위: 백만원)

		합계	서울	광역시·도	광역시계	부산	대구	인천
1990	합계	22,914,045	5,132,197	17,781,848	4,485,654	1,401,590	918,591	871,530
	지방세수입	6,378,583	2,091,676	4,286,907	1,503,226	547,630	327,268	315,094
	세외수입	9,323,964	2,286,521	7,037,444	1,942,081	568,948	401,749	389,775
	지방교부세	2,764,654	14,954	2,749,700	100,211	10,725	13,044	7,143
	지방양여금	-	-	-	-	-	-	-
	조정교부금	53,806	53,806	-	-	-	-	-
	보조금	2,136,803	178,146	1,958,657	289,955	99,609	62,144	43,683
	지방채	2,256,235	507,094	1,749,141	650,182	174,678	114,386	115,836
지정재원	-	-	-	-	-	-	-	
1991	합계	29,742,208	6,301,167	23,441,041	5,647,600	1,772,761	1,122,278	1,129,087
	지방세수입	8,035,075	2,540,753	5,494,322	1,928,395	688,096	408,667	408,686
	세외수입	15,291,635	3,202,450	12,089,185	3,149,519	915,516	573,895	671,240
	지방교부세	3,452,403	-	3,452,403	139,803	26,193	25,586	9,156
	지방양여금	557,031	-	557,031	111,406	39,508	23,432	16,956
	조정교부금	-	-	-	-	-	-	-
	보조금	2,406,063	557,964	1,848,100	318,477	103,447	90,697	23,049
	지방채	-	-	-	-	-	-	-
지정재원	-	-	-	-	-	-	-	
1992	합계	34,691,954	7,272,161	27,419,793	7,061,844	2,437,969	1,386,057	1,376,173
	지방세수입	9,462,206	2,907,143	6,555,063	2,291,397	819,874	484,873	475,758
	세외수입	15,528,603	3,545,061	11,983,542	3,529,569	1,389,767	506,718	754,504
	지방교부세	3,925,064	1,145	3,923,919	125,885	15,914	23,021	7,683
	지방양여금	1,230,602	-	1,230,602	140,729	53,414	35,341	26,307
	조정교부금	-	-	-	-	-	-	-
	보조금	1,750,414	210,435	1,539,979	336,748	89,822	98,985	17,965
	지방채	2,795,065	608,377	2,186,688	637,516	69,178	237,119	93,956
지정재원	-	-	-	-	-	-	-	
1993	합계	37,794,508	7,596,889	30,197,619	7,851,244	2,539,978	1,546,269	1,716,332
	지방세수입	11,025,781	3,259,783	7,765,998	2,690,006	953,140	578,199	547,762
	세외수입	15,564,527	3,069,675	12,494,852	3,754,726	1,289,896	601,259	985,592
	지방교부세	4,412,413	750	4,411,663	150,591	22,836	20,140	8,855
	지방양여금	1,421,075	-	1,421,075	189,614	60,250	39,083	28,731
	조정교부금	-	-	-	-	-	-	-
	보조금	2,169,097	216,856	1,952,241	306,253	88,763	95,841	30,428
	지방채	3,201,615	1,049,825	2,151,790	760,054	125,093	211,747	114,964
지정재원	-	-	-	-	-	-	-	

〈표 1〉 연도별 · 지방자치단체별 세입결산 순계분석(총괄) 계속

(단위: 백만원)

		광주	대전	울산	도계	경기	강원	충북
1990	합계	624,255	669,689	-	13,296,194	3,263,787	1,215,469	871,631
	지방세수입	146,884	166,351	-	2,783,681	997,724	181,500	150,544
	세외수입	260,330	321,279	-	5,095,363	1,402,095	358,793	295,187
	지방교부세	47,079	22,220	-	2,649,489	250,459	383,668	242,480
	지방양여금	-	-	-	-	-	-	-
	조정교부금	-	-	-	-	-	-	-
	보조금	39,291	45,228	-	1,668,702	245,123	213,168	150,246
	지방채	130,671	114,611	-	1,098,960	368,385	78,341	33,174
지정재원	-	-	-	-	-	-	-	
1991	합계	875,544	747,931	-	17,793,441	4,610,901	1,501,436	1,102,730
	지방세수입	191,700	231,246	-	3,565,926	1,283,473	215,272	197,812
	세외수입	558,040	430,827	-	8,939,666	2,736,781	691,786	504,649
	지방교부세	47,343	31,525	-	3,312,600	316,643	418,173	256,091
	지방양여금	18,064	13,445	-	445,625	45,655	48,077	36,166
	조정교부금	-	-	-	-	-	-	-
	보조금	60,396	40,887	-	1,529,623	228,349	128,129	108,013
	지방채	-	-	-	-	-	-	-
지정재원	-	-	-	-	-	-	-	
1992	합계	924,841	936,804	-	20,357,949	5,346,206	1,635,600	1,338,207
	지방세수입	237,356	273,536	-	4,263,666	1,572,193	257,006	231,560
	세외수입	435,441	443,139	-	8,453,973	2,616,541	653,657	607,577
	지방교부세	49,199	30,068	-	3,798,034	319,630	445,131	291,892
	지방양여금	-	25,667	-	1,089,873	189,239	103,072	82,755
	조정교부금	-	-	-	-	-	-	-
	보조금	93,040	36,936	-	1,203,231	144,094	102,989	69,076
	지방채	109,805	127,458	-	1,549,172	504,509	73,745	55,347
지정재원	-	-	-	-	-	-	-	
1993	합계	1,068,753	979,912	-	22,346,375	5,918,444	1,759,657	1,421,285
	지방세수입	259,406	351,499	-	5,075,992	2,060,568	276,471	275,170
	세외수입	411,423	466,556	-	8,740,126	2,775,034	605,408	555,459
	지방교부세	68,536	30,224	-	4,261,072	358,067	510,524	324,630
	지방양여금	34,557	26,993	-	1,231,461	191,504	133,360	99,749
	조정교부금	-	-	-	-	-	-	-
	보조금	63,856	27,365	-	1,645,988	199,159	139,479	88,648
	지방채	230,975	77,275	-	1,391,736	334,112	94,415	77,629
지정지원	-	-	-	-	-	-	-	

〈표 1〉 연도별 · 지방자치단체별 세입결산 순계분석(총괄) 계속

(단위: 백만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990	합계	1,090,527	1,123,162	1,515,391	1,525,013	2,422,398	268,816
	지방세수입	169,577	196,986	197,511	316,979	505,589	67,270
	세외수입	417,867	353,067	515,336	503,214	1,176,502	73,302
	지방교부세	275,723	293,859	408,306	426,177	288,925	79,892
	지방양여금	-	-	-	-	-	-
	조정교부금	-	-	-	-	-	-
	보조금	179,210	174,898	239,536	209,007	224,721	32,792
	지방채	48,150	104,351	154,702	69,636	226,661	15,559
지정재원	-	-	-	-	-	-	
1991	합계	1,452,873	1,649,458	2,010,325	2,123,563	2,965,871	376,284
	지방세수입	232,676	238,397	240,164	407,807	660,687	89,638
	세외수입	636,825	805,446	930,662	873,751	1,618,503	141,264
	지방교부세	363,243	378,919	532,719	551,337	393,285	102,189
	지방양여금	53,805	41,524	65,480	78,291	60,933	15,694
	조정교부금	-	-	-	-	-	-
	보조금	166,323	185,172	241,300	212,376	232,463	27,499
	지방채	-	-	-	-	-	-
지정재원	-	-	-	-	-	-	
1992	합계	1,715,252	1,849,515	2,115,154	2,557,030	3,293,375	507,610
	지방세수입	267,187	275,798	286,557	475,797	787,918	109,650
	세외수입	686,282	672,108	759,974	894,888	1,384,497	178,449
	지방교부세	422,389	433,473	619,479	660,300	485,783	119,957
	지방양여금	106,280	118,429	136,166	164,767	154,855	34,310
	조정교부금	-	-	-	-	-	-
	보조금	149,156	169,702	205,044	150,193	188,000	24,977
	지방채	83,958	180,005	107,934	211,085	292,322	40,267
지정지원	-	-	-	-	-	-	
1993	합계	2,015,076	2,058,808	2,255,321	2,701,432	3,658,382	557,970
	지방세수입	312,369	317,940	306,830	538,626	867,134	120,884
	세외수입	775,771	785,946	758,219	853,353	1,429,619	201,317
	지방교부세	472,171	492,783	702,408	724,966	539,814	135,709
	지방양여금	132,508	126,572	130,535	192,823	188,413	35,997
	조정교부금	-	-	-	-	-	-
	보조금	182,819	216,202	280,281	252,632	255,807	30,961
	지방채	139,438	119,365	77,048	139,032	377,595	33,102
지정지원	-	-	-	-	-	-	

세입결산 순계분석(총괄) 계속

〈표 1〉 연도별 · 지방자치단체별 세입결산 순계분석(총괄) 계속

(단위: 백만원)

			합계	서울	광역시·도	광역시계	부산	대구
1994	합계	44,417,354	8,749,353	35,668,001	9,020,005	2,730,229	2,254,224	1,846,272
	지방세수입	13,227,759	3,849,975	9,377,784	3,145,366	1,071,900	723,620	617,049
	세외수입	17,930,484	3,180,814	14,749,670	4,167,484	1,186,749	1,055,266	984,032
	지방교부세	4,821,432	30	4,821,402	153,890	26,778	19,956	8,072
	지방양여금	1,696,086	-	1,696,086	173,379	49,603	36,430	30,869
	조정교부금	-	-	-	-	-	-	-
	보조금	3,131,765	395,951	2,735,814	515,352	176,279	155,560	84,207
	지방채	3,609,828	1,322,583	2,287,245	864,534	218,920	263,392	122,043
	지정재원	-	-	-	-	-	-	-
1995	합계	52,378,910	9,332,198	43,046,712	10,935,202	3,332,665	2,641,369	2,338,869
	지방세수입	15,316,913	4,339,477	10,977,436	3,609,091	1,214,752	814,937	767,113
	세외수입	20,746,487	3,629,132	17,117,355	4,784,612	1,233,129	1,195,733	1,199,500
	지방교부세	5,674,580	1,800	5,672,780	240,705	31,860	42,753	58,103
	지방양여금	1,870,124	-	1,870,124	207,740	57,558	46,321	33,130
	조정교부금	-	-	-	-	-	-	-
	보조금	4,109,221	423,185	3,686,036	618,662	160,089	211,950	132,047
	지방채	-	-	-	-	-	-	-
	지정재원	4,661,585	938,604	3,722,981	1,474,392	635,277	329,675	148,976
1996	합계	63,085,526	11,254,545	51,830,981	12,855,986	4,142,677	2,935,172	2,717,920
	지방세수입	17,396,462	4,892,331	12,504,131	4,085,484	1,423,591	925,755	852,739
	세외수입	27,611,045	4,921,897	22,689,148	6,181,615	2,035,865	1,324,974	1,332,815
	법정교부세	6,372,664	1,097	6,371,567	261,111	47,479	36,801	67,644
	증액교부금	151,157	-	151,157	6,280	1,780	116	4,114
	지방양여금	2,574,420	-	2,574,420	284,919	74,691	68,106	47,331
	조정교부금	-	-	-	-	-	-	-
	보조금	4,930,017	493,628	4,436,389	835,133	234,183	248,527	198,335
	지방채	4,049,761	945,592	3,104,169	1,201,444	325,088	330,893	214,942
1997	합계	69,571,628	11,538,833	58,032,795	15,276,603	4,405,460	3,409,744	2,847,398
	지방세수입	18,497,728	5,332,575	13,165,153	4,657,933	1,407,263	895,671	953,300
	세외수입	31,163,235	5,072,565	26,090,670	7,207,799	2,091,765	1,455,655	1,329,855
	지방교부세	6,785,682	2,786	6,782,896	306,279	54,708	43,382	69,265
	증액교부금	228,909	-	228,909	8,300	2,391	253	5,052
	지방양여금	2,877,166	-	2,877,166	357,589	106,093	68,129	53,755
	조정교부금	15,300	-	15,300	15,300	-	-	-
	보조금	5,545,567	393,984	5,151,583	1,092,151	354,821	205,816	229,833
	지방채	4,458,041	736,923	3,721,118	1,631,252	388,419	740,838	206,338

(표 1) 연도별 · 지방자치단체별 세입결산 순계분석(총괄) 계속

(단위: 백만원)

		광주	대전	울산	도계	경기	강원	충북
1994	합계	999,324	1,189,956	-	26,647,996	7,358,174	1,971,658	1,608,533
	지방세수입	322,050	410,747	-	6,232,418	2,608,438	341,101	316,781
	세외수입	388,209	553,228	-	10,582,186	3,558,210	684,607	589,559
	지방교부세	67,232	31,852	-	4,667,512	378,655	550,695	395,485
	지방양여금	32,902	23,575	-	1,522,707	208,646	164,082	111,702
	조정교부금	-	-	-	-	-	-	-
	보조금	69,767	29,539	-	2,220,462	245,300	166,773	136,547
	지방채	119,164	141,015	-	1,422,711	358,925	64,400	58,459
지정재원	-	-	-	-	-	-	-	
1995	합계	1,361,804	1,260,495	-	32,111,510	9,092,824	2,448,222	2,089,754
	지방세수입	368,391	443,898	-	7,368,345	3,152,186	401,597	392,668
	세외수입	655,908	500,342	-	12,332,743	4,392,201	762,674	783,910
	지방교부제	82,891	25,098	-	5,432,075	382,113	657,843	448,143
	지방양여금	39,849	30,882	-	1,662,384	213,739	188,501	129,984
	조정교부금	-	-	-	-	-	-	-
	보조금	60,210	54,366	-	3,067,374	277,347	276,187	165,695
	지방채	-	-	-	-	-	-	-
지정재원	154,555	205,909	-	2,248,589	675,238	161,420	169,354	
1996	합계	1,759,951	1,300,276	-	38,974,995	11,189,228	3,269,127	2,517,141
	지방세수입	413,812	469,597	-	8,418,647	3,561,393	455,980	452,698
	세외수입	891,146	596,815	-	16,507,533	6,053,656	1,097,353	1,094,237
	법정교부세	81,611	27,576	-	6,110,456	401,065	767,555	476,619
	증액교부금	89	181	-	144,877	9,470	19,768	6,064
	지방양여금	50,056	44,735	-	2,289,501	292,773	259,072	182,480
	조정교부금	-	-	-	-	-	-	-
	보조금	83,904	70,184	-	3,601,256	428,904	491,411	200,139
지방채	239,333	91,188	-	1,902,725	441,967	177,988	104,904	
1997	합계	1,980,334	1,403,280	1,230,367	42,756,212	12,734,211	3,805,162	2,683,447
	지방세수입	476,171	488,283	437,245	8,507,220	3,801,646	500,236	451,421
	세외수입	1,045,626	597,961	686,917	18,882,891	7,103,617	1,582,118	1,138,158
	지방교부세	85,729	35,320	17,875	6,476,617	411,827	831,575	506,651
	증액교부금	94	372	138	220,609	12,328	37,188	18,352
	지방양여금	48,961	52,327	28,324	2,519,577	335,910	280,211	200,592
	조정교부금	-	-	15,300	-	-	-	-
	보조금	146,520	125,791	29,370	4,059,432	404,883	427,133	264,703
지방채	177,233	103,226	15,198	2,089,866	664,000	146,701	103,570	

〈표 1〉 연도별 · 지방자치단체별 세입결산 순계분석(총괄) 계속

(단위: 백만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994	합계	2,214,032	2,512,552	2,674,711	3,305,260	4,372,228	630,848
	지방세수입	384,713	360,933	345,683	657,724	1,074,677	142,368
	세외수입	776,608	1,028,146	891,949	1,079,407	1,732,955	240,745
	지방교부세	484,316	559,420	778,714	799,323	580,199	140,705
	지방양여금	159,398	173,756	219,126	245,176	200,310	40,511
	조정교부금	-	-	-	-	-	-
	보조금	229,255	281,338	353,785	375,527	389,107	42,830
	지방채	179,742	108,959	85,454	148,103	394,980	23,689
지정재원	-	-	-	-	-	-	
1995	합계	2,879,247	3,003,393	3,348,111	3,595,926	4,934,701	719,332
	지방세수입	466,587	455,512	411,100	723,592	1,195,509	169,594
	세외수입	927,386	1,107,637	1,071,181	1,107,110	1,964,690	215,954
	지방교부세	602,008	643,973	903,425	922,489	707,255	164,826
	지방양여금	160,340	183,265	236,785	267,662	236,938	45,170
	조정교부금	-	-	-	-	-	-
	보조금	542,351	412,451	517,340	376,769	424,489	74,745
	지방채	-	-	-	-	-	-
지정재원	180,575	200,555	208,280	198,304	405,820	49,043	
1996	합계	3,360,802	3,629,460	4,101,958	4,257,832	5,789,684	861,763
	지방세수입	553,161	480,275	502,836	845,786	1,387,076	179,442
	세외수입	1,355,926	1,447,507	1,418,647	1,375,751	2,405,601	258,855
	법정교부세	682,635	729,023	1,026,466	1,053,248	795,614	178,231
	증액교부금	27,192	14,130	20,494	12,464	31,688	3,607
	지방양여금	208,347	266,575	333,980	359,641	330,120	58,513
	조정교부금	-	-	-	-	-	-
	보조금	410,861	481,195	618,542	422,323	434,470	113,411
지방채	122,680	210,755	180,993	188,619	405,115	69,704	
1997	합계	3,554,542	3,906,884	4,784,267	4,660,274	5,423,434	1,203,991
	지방세수입	586,642	517,613	506,554	864,496	1,082,939	195,673
	세외수입	1,286,551	1,643,498	1,835,149	1,540,575	2,413,589	339,636
	지방교부세	724,545	770,540	1,102,086	1,103,858	830,733	194,802
	증액교부금	40,122	22,584	28,342	16,834	40,549	4,310
	지방양여금	234,054	260,531	376,697	401,850	352,212	77,520
	조정교부금	-	-	-	-	-	-
	보조금	507,279	545,555	764,672	528,523	466,421	150,263
지방채	175,349	146,563	170,767	204,138	236,991	241,787	

자료 :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연감, 각 연도.